#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 김혜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국가의 주요 정책은 대부분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하에서 매해 당해 연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아이사랑 플랜(2009-2012)이라는 중장기 계획 하에서 추진되었다. 아이사랑 플랜 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 하에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어린이집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 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6대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그 간의 보육정책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업이나 예산 확대 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 5세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전액지원, 양육수당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2013년 시행 예정으로 누리과정 3~4세로의 확대, 양육수당 소득계층 70%까지 지원 등의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외향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거나 아쉬운 부분도 많다.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동일시하는 현 체계를 개편하고자 과제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종료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배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사의 근로환경이나 처우도 수당은 일부 확보되었으나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2009~2012년 4년간 아이사랑 플랜으로 추진한 보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요 보육 지표를 제시하고 향후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사업 심층 검토 주제로는 영아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보육료 이원화 시범사업, 2010~2012년간의 평가인증 2주기 시행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가 차기 정부 중장기 보육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정부, 현장 관계자 및 학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 차 례

요 약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10         4. 선행연구       14
Ⅱ. 아이사랑 플랜 추진 성과와 과제       16         1. 아이사랑 플랜 개요       16         2. 양육비용 부담경감       18         3.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36         4.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       54         5.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80         6.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86         7. 보육정책의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89         8. 소요예산       97         9. 소결 및 시사점       100
<ul> <li>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106</li> <li>1.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개요 106</li> <li>2. 시·도 특수보육시책 108</li> <li>3.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111</li> <li>4. 소결 114</li> </ul>
IV. 주요 사업 심층 검토       115         1. 양육수당       115         2.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130         3.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의 적절성 검토       148

V.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1. 향후 정책과제	172
2. 맺는 말	
참고문헌	188
Abstract ·····	191
부 록	193

## 표 차례

〈班 I-3-1〉	양육수당 관련 부모조사 내용11
〈班 I-3-2〉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부모조사 내용12
〈班 I-3-3〉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12
〈丑 I-3-4〉	평가인증 관계자 설문조사 내용13
〈丑 I-3-5〉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14
⟨표 Ⅱ-1- 1⟩	아이사랑 플랜의 적절성: 4점 척도18
〈표 Ⅱ-2- 1〉	보육비용 지원 기준 20
〈班 Ⅱ-2- 2〉	만 3~4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기준: 2012년20
〈표 Ⅱ-2- 3〉	
〈표 Ⅱ-2- 4〉	영아 보육비용 구성24
〈표 Ⅱ-2- 5〉	유아 보육비용 구성24
〈표 Ⅱ-2- 6〉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수 및 비율: 2008~2011년 26
〈班 Ⅱ-2- 7〉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과 보육아동 수: 2008-2011년 26
〈班 Ⅱ-2- 8〉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1년27
〈班 Ⅱ-2- 9〉	국고 지원 예산: 2008~2012년27
〈표 Ⅱ-2-10〉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재정: 2012년 예산27
〈표 Ⅱ-2-1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8~2012년 28
〈班 Ⅱ-2-12〉	비용 부담완화 과제 효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 29
〈班 Ⅱ-2-13〉	비용부담 완화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 29
〈班 Ⅱ-2-14〉	양육수당 지원 개요: 2009~2012년33
〈표 Ⅱ-2-15〉	
〈표 Ⅱ-2-16〉	양육수당 지원 기준: 2012년33
〈班 Ⅱ-2-17〉	양육수당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34
〈표 Ⅱ-2-18〉	양육수당 효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평균 35
〈표 Ⅱ-3- 1〉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개정 내용37
〈班 Ⅱ-3- 2〉	다문화가족 보육 지원 세부과제별 성과 정도: 7점 척도 37
〈班 Ⅱ-3- 3〉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11년 38
〈표 Ⅱ-3- 4〉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수 39

〈丑	<b>Ⅱ-3-</b> 5>	초등학교 입학 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주관 기관(복수응답) … 40
〈丑	<b>Ⅱ-3-</b> 6〉	인건비 지원 장애아 어린이집 개보수비와 장비비 지원: 2009~2012년 … 41
〈丑	<b>□-3-</b> 7>	장애아동 보육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 43
〈丑	<b>∏-3-</b> 8⟩	어린이집 장애아동: 2008~2012년 44
〈丑	<b>□-3-</b> 9>	시간연장형 보육 아동 및 지정 어린이집 현황: 2008~2011년 … 46
〈丑	<b>□-3-10</b> >	방과후어린이집 현황: 2008~2011년 48
〈丑	<b>□-3-11</b> 〉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48
〈丑	<b>□-3-12</b> 〉	맞벌이 부모 지원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 점 척도 $\cdots 50$
〈丑	<b>□-3-13</b> 〉	가정 내 양육지원 강화 과제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 점 척도 $\cdots$ $52$
〈丑	<b>□-4-</b> 1⟩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55
〈丑	<b>□-4-</b> 2⟩	인가 요건 강화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56
〈丑	<b>□-4-</b> 3>	어린이집 영양ㆍ건강ㆍ안전관련 매뉴얼 발간 내역 57
〈丑	$\Pi$ -4- 4 $\rangle$	영양·건강·안전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57
〈丑	<b>□-4-</b> 5⟩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2009~2012년58
〈丑	<b>□-4-</b> 6⟩	어린이집 안전 개선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cdots$ $58$
〈丑	<b>□-4-</b> 7⟩	보육내용 질 제고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 62
〈丑	<b>□-4-</b> 8⟩	평가인증 지표64
〈丑	<b>□-4-</b> 9>	평가인증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65
〈丑	Ⅱ-4-10〉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 66
〈丑	<b>□-4-11</b> >	연도별 평가인증 통과 및 유지 어린이집 수66
〈丑	<b>□-4-12</b> >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통과 및 유지 어린이집: 2012. 6월 67
〈丑	Ⅱ-4-13〉	시·도별 평가인증 통과 및 유지 어린이집: 2012. 6월 ············· 67
〈丑	$\Pi$ -4-14 $\rangle$	지역 및 연령별 중기 추가 보육수요 추계69
〈丑	Ⅱ-4-15〉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1년69
〈丑	<b>□-4-16</b> 〉	시·도 단위 어린이집 정원 비율 평균: 2011년70
〈丑	<b>□-4-17</b> 〉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71
〈丑	<b>□-4-18</b> >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 현황: 2005~2012년 … 72
〈丑	Ⅱ-4-19〉	유형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아동 수: 2009~2011년72
〈丑	∏-4-20⟩	선정차수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관 특성73
〈丑	∏-4-21⟩	공공형 어린이집 규모별 월 지원액74
〈丑	<b>□-4-22</b>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현황: 2009~2011년

〈표 Ⅱ-4-23〉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11년 ·······75
〈표 Ⅱ-4-24〉	직장 어린이집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77
〈표 Ⅱ-4-25〉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 2008~2010년77
⟨표 Ⅱ-4-26⟩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의무이행률: 2010. 6월 기준77
〈표 Ⅱ-4-27〉	어린이집 균형배치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78
⟨표 Ⅱ-4-28⟩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유80
〈표 Ⅱ-5- 1〉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2011년81
〈표 Ⅱ-5- 2〉	보육교직원 자격증 취득자 및 현직 종사 비율: 2005.4.~ 2011.12월 · · 81
〈표 Ⅱ-5- 3〉	교직원 자격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82
〈표 Ⅱ-5- 4〉	교사관련 사업 규모와 예산84
〈표 Ⅱ-5- 5〉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 85
⟨표 Ⅱ-6-1⟩	전달체계 효율화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88
〈표 Ⅱ-7- 1〉	영유아보육법 보육 사업 업무 위탁 관련 개정 내용90
〈표 Ⅱ-7- 2〉	안전공제회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92
〈표 Ⅱ-7-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규모 92
〈표 Ⅱ-7- 4〉	연도별 공제료 수입 및 지급 현황 92
〈표 Ⅱ-7- 5〉	행정처분·벌칙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94
〈표 Ⅱ-7- 6〉	보육 지원체계 구축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 95
⟨표 Ⅱ-8-1⟩	유아교육·보육 예산: 2005~2012년 ······97
〈班 Ⅱ-8- 2〉	시도별 국고 지원 사업 예산: 2012년 98
〈班 Ⅱ-9- 1〉	아이사랑 플랜 성과지표100
〈班 Ⅱ-9- 2〉	아이사랑 플랜 6대 추진과제의 성과 정도: 7점 척도 101
〈표 Ⅱ-9- 3〉	아이사랑 플랜 세부과제 성과 우선순위: 7점 척도 101
〈표 Ⅱ-9- 4〉	아이사랑 플랜 6대 추진과제의 향후 추진 필요성: 7점 척도 … 102
〈표 Ⅱ-9- 5〉	아이사랑 플랜 세부과제 지속 추진 필요 우선순위: 4점 척도 102
〈표 Ⅱ-9- 6〉	주요 국가 단위 보육 관련 지표
〈표 Ⅲ-1- 1〉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5~2012년 ····· 106
〈班 Ⅲ-1- 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2년 ······· 107
〈班 Ⅲ-2- 1〉	사업유형별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2012년 ······ 109
〈班 Ⅲ-3-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수보육시책: 2012년112
〈莊 Ⅲ-3- 2〉	강원도 고성군 특수보육시책: 2012년 113

⟨표 Ⅲ-3- 3⟩	전라북도 남원시 특수보육시책: 2012년113
⟨₩ IV-1- 1⟩	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양육수당 지원 가구116
⟨፟፟፟፟፟፟፟፟፟፟፟፟፟ ⟨ IV-1- 2⟩	조건별 양육수당 지원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의향116
〈묲 IV-1- 3〉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117
⟨፟፟፟፟፟፟፟፟፟፟፟፟፟ ⟨ IV-1- 4⟩	양육수당 지원정책 우선 보완 사항 118
〈묲 IV-1- 5〉	양육수당 지원정책 우선 보완 사항: 양육수당 지원 가구 118
⟨፟፟፟፟፟፟፟፟፟፟፟፟፟ ⟨	양육수당 지원정책 우선 보완 사항: 보육료 지원 가구 119
〈丑 IV-1- 7〉	양육수당 지원정책 우선 보완: 미혜택 가구119
〈묲 IV-1- 8〉	금액과 대상 변회에 따른 양육수당 신청의향. 양육수당 미수급자 … 121
〈丑 IV-1- 9〉	금액과 대상 변회에 따른 양육수당 신청의향. 양육수당 미수급자 … 121
〈묲 IV-1-10〉	보육료 지원 및 미혜택 가구의 양육수당 지원 금액과 대상 변화
	에 따른 양육수당 신청 의향 비율122
〈丑 IV-1-11〉	양육수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미혜택 가구123
〈丑 IV-1-12〉	지원 유형별 양육수당의 적정 액수124
〈丑 IV-1-13〉	지원 유형별 양육수당 선택을 위한 양육수당 금액 평균 124
〈묲 IV-1-14〉	고소득층에게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비율…125
〈丑 IV-1-15〉	수혜 형태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 여부126
〈됖 IV-1-16〉	양육수당 대상 확대 및 금액 증가시 부부 중 1인이 일을 그만둘
	의향: 맞벌이 가구 대상127
〈丑 IV-1-17〉	현재 수준의 양육수당 지원 시 어린이집 이용 의향128
〈됖 IV-1-18〉	양육수당의 상향 조정 시 어린이집 이용 의향128
〈班 IV-2- 1〉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수132
〈班 IV-2- 2〉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사유: 이용자132
〈班 IV-2- 3〉	어린이집 하원 후 자녀 보육자: 이용자133
〈班 IV-2- 4〉	단축형 보육서비스 미이용 사유: 미이용자133
〈班 IV-2- 5〉	어린이집 등원시각: 어린이집 도착 기준134
〈班 IV-2- 6〉	어린이집 하원시각: 어린이집 출발 기준135
〈班 IV-2-7〉	어린이집 등·하원시각 최빈치 ······135
〈班 IV-2- 8〉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평균136
〈丑 IV-2- 9〉	어린이집 희망 운영시간136
〈丑 IV-2-10〉	단축형과 종일제 보육료 차이137

⟨௲ IV-2-11⟩	보육료 인하분 적정 여부: 이용자133
〈班 IV-2-12〉	삭감된 보육료의 사용처: 이용자13년
〈班 IV-2-13〉	특별활동 시간의 변화: 이용자14년
〈됖 IV-2-14〉	어린이집 내 참여 특기교육 개수146
〈班 IV-2-15〉	어린이집 내외 특기교육 월 비용14
〈班 IV-2-16〉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변화: 이용자 142
〈丑 IV-2-17〉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의 변화와 부모 만족도: 이용자 143
〈표 IV-2-18〉	타 아동의 이른 귀가가 보육에 미친 영향: 미이용자14
〈표 IV-2-19〉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사업 재개 시 이용할 의향146
⟨௲ IV-3- 1⟩	운영체계 순서의 적절성146
〈표 IV-3- 2〉	평가인증 소요기간의 적절성14
〈班 IV-3- 3〉	관찰일 통보에 대한 의견: 2012년150
〈표 IV-3- 4〉	현장관찰자 규모의 적절성15
〈班 IV-3- 5〉	현장관찰자 인원이 적절하지 않다면 필요한 조정 15.
〈丑 IV-3- 6〉	평가인증 심의자료 구성의 적절성 152
〈班 IV-3-7〉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153
〈표 IV-3- 8〉	평가인증 유효기간의 적절성154
〈班 IV-3- 9〉	결과통보서와 종합평가서에 제시하는 항목의 적절성154
〈표 IV-3-10〉	사후관리 점검 방법의 적절성150
〈표 IV-3-11〉	사후관리 점검방법 우선순위 의견: 1순위156
〈班 IV-3-12〉	평가인증 업무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적절성152
〈班 IV-3-13〉	평가인증 취소사항의 적절성150
〈班 IV-3-14〉	평가인증 점수 공개 방안에 대한 의견15
〈표 IV-3-15〉	평가인증 점수 공개 방법에 대한 의견15년
〈표 IV-3-16〉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 재정지원 연계방안의 적절성16
〈班 IV-3-17〉	평가인증 심의자료 반영비율의 적절성16
〈표 IV-3-18〉	심의위원회 의견서 점수 비율의 적절성163
〈표 IV-3-19〉	심의위원회 의견서 점수 부여 시 6점 척도의 적절성163
〈丑 IV-3-20〉	현행 평가인증 기준 점수의 적절성164
〈丑 IV-3-21〉	평가인증 기본사항 관련 적절성165
〈丑 IV-3-22〉	평가인증 기본사항에서 필수항목의 필요성16

평가인증 기본사항에서 기본항목의 필요성16	(班 IV-3-23)
평가인증지표의 유형분류의 적절성16	(班 IV-3-24)
평가인증지표의 항목 수의 적절성16	(班 IV-3-25)
평가인증지표 척도의 적절성16	(丑 IV-3-26)
어린이집 질 관리 수단으로서의 평가인증지표의 적절성 16	(班 IV-3-27)
평가인증제도의 어린이집 질 관리 효과16	(班 IV-3-28)
기준점수 미달 어린이집의 질 향상 방안16	哥 IV-3-29〉

## 그림 차례

[그림 Ⅱ-	-1-1	아이사랑 플랜 비전	16
[그림 Ⅱ-	<b>-4-1</b> ]	평가인증 심의자료 반영비율의 변화	64
[그림 Ⅱ-	<b>-6-1</b> ]	아이사랑 카드 도입 전후 보육료 지원체계 비교	87

## 요 약

#### 1. 서론

#### 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 본 연구에서는 2009~2012년 4년간 아이사랑 플랜으로 추진한 보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아울러 정부의 주요 사업 심층 검토 주제로는 영아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보육료 이원화 시범사업, 2010~2012년간의 평가인증 2주기 시행 운영 등 총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 □ 연구내용은 중장기 아이사랑 플랜(2009~2012년) 성과와 과제 도출,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검토, 주요 보육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로 구성하였음.

#### 나. 연구방법

- □ 각종 통계, 중장기 사업 평가 및 심층 검토 주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음.
- □ 보육관계자 107명을 대상으로 아이사랑 플랜의 성과와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 세 가지 심층분석 주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음.
  - 영아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민간어린이집 10개소 이용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심의위원과 현장관찰자 92명을 대상으로 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 심층 검토 대상과제인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평가를 위하여 실시 어린 이집 원장 7명과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
- □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보육체계 전반 검토와 평가를 위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심층 검토와 관련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2. 아이사랑 플랜 검토

- □ 아이사랑 플랜 추진으로 보육서비스는 양과 질 모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
  - 누리과정, 0~2세 무상보육 등으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는 계획 이상 의 성과를 거두었음.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함.
  -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 취업모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 등으로 맞춤 형 지원을 강화하였음.
  - 영양, 건강, 안전 관련 법 개정 및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 비율 초과 달성,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교사 교육 등으로 보육의 질을 제고함.
  - 소규모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조 치를 강화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였음.
  - 양성 및 보수교육 강화, 자격기준 강화 등으로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개선비 등 처우 개선을 도모함.
  - 아이사랑 카드제도 도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달체계를 개편하였음.
  -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체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 등을 합리화하였음.
- □ 부모 보육부담 완화 정책 강화로 중앙정부 보육사업 예산은 총 6조 1300억 원이고 지방정부 특수사업 예산은 중앙정부 보육사업 예산 대비 16.2%로 총 보육예산은 7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되었음.
- □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책과제가 될 것임.
  - 아이사랑 플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계획 자체를 축소 조정하여 연간 10개 미만 수준의 신규 확충 예산이 배정되었음.
  - 0~2세 무상보육은 부모 부담 완화 성과와는 별개로 성급한 결정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아동발달 측면에서 우려를 초래하였음.
  - 부모 참여와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정보의 공개 강화 등 어린이집 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함.
  - 이용시간과 보육서비스 유형의 다양화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부모-

자녀 이용시설 설치 확대는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음.

- 평가인증 유지율은 63% 정도에 머물고, 재정지원과의 연계는 미진함.
- 보육교사의 급여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 접근은 부족하고, 양성및 보수교육 체계의 정비를 통한 전문성 제고도 정책과제가 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간소화에 기여한 바에 비하여 부모의 정책 체감도, 선택권 보장, 부모 참여 확대, 정보공개 부분은 미진함.

#### 3. 주요 사업 심층 검토

#### 가. 양육수당

- □ 0~2세 차상위계층 아동에 지원하는 양육수당과 관련된 부모조사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양육수당 수혜자 증 지원액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15% 수준임.
  - 양육수당 미수혜자는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및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비용이 증가할 경우에 양육수당을 받을 생각에 대해서는 각각 40%, 45%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어린이집 이용자도 지원 수준을 확대할 경우 영아만 4.5% 수준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육료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에는23.9%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였음.
    - · 아이를 직접 돌보겠다는 비율은 소득수준별로 33.8%~13.5%로 나타나서 지원 수준을 크게 올릴 경우에 저소득층 아동의 기관 이용 기회 박탈 가능성이 우려됨.
  - 적정한 양육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3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소득 제한 없는 양육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59%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소 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 □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수요자 현금지원 정책에도 맹점이 있음과 더불어 서 지원 대상의 확대나 지원 금액 확대 조정 시에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함.

#### 나.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 □ 인천시 남동구 민간어린이집 10여개를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어린이집 이용 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실시함. 해당 어린이집 유아의 1/3이 참여함.
  - 정규 보육과정을 '종일형'과 '단축형'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여 획일
     화된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한 의미있는 시도임.
- □ 시범사업 결과를 아동, 부모, 교사 및 운영자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단축형 이용 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평균 약 40분 짧아졌고, 이른 귀가로 부모와 보내는 시간 증가나 정서 안정의 개선 비율은 약 30% 정도임.
  - 줄어든 부모 부담액의 상당부분은 어린이집 외 특별활동에 사용됨.
  - 단축형 이용 부모 중 62%가 만족하였으며, 재실시 시 이용 의사 비율은 단축형 이용자 93%, 미이용자 39%임.
  - 단축형 보육료는 더 인하하여야 한다는 부모도 47%에 달함.
  - 늦게 남아 있는 아동 감소로 교사는 수업 준비, 휴식 시간이 확보되고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운영자도 운영 부담이 다소 낮아짐.
  - 늦게 남는 종일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육환경에 따라 다를 것임.
- □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은 소규모로 실효성 확보에 태생적 한계가 있음.
  - 종일제 12시간을 그대로 둔 채 보육시간 8시간을 단축형으로 설정한 것이 교사의 인건비 반영 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음.
  - 단축형과 종일제의 보육료 수준의 합리성도 부족함.
    - 단축형 보육료 감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의 변동 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시범사업 이외의 사업으로는 성립이 불가능함.
  - 시범사업 단축형과 종일제 아동의 이용시간의 차이가 미미함.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 이용시간 행태에 부모 부담 비용만 낮추어 준 측면이 있음.
- □ 본 시범사업은 실적 중심의 단편적 사업으로 종료한 측면이 강함. 현재의 보육료는 8시간 보육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보육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투자되는 방식의 설계가 필요한 보육체계 개편이 난제임을 반증하고 있음.

#### 다.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의 적절성 검토

- □ 제2주기 평가인증 운영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장관찰일은 전체의 63.1%가 불시방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어린이집 규모와 무관한 현장관찰자 2인 일률적 파견은 적절성이 낮음.
  - 인증기간 3년에 대한 적절성이 낮아서 인증기간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됨.
  -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확인 점검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지방정부 역할로 강화되어야 할 사항은 사후관리를 지적한 비율이 높음.
  - 평가인증 점수 공개는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음.
  - 현재 인증과 교재교구비 연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현재의 수준보다 강력한 재정연계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심의 점수 중 어린이집 특장점 점수는 하향 조정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
  - 평가인증 기준 점수에 대해서는 70%가 상향조정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다수의 항목에 걸쳐 현장관찰자의 의견은 평가인증 제도의 전반적 강화를 선호하고 있음. 이는 이들이 동질적 전문가 집단으로의 성격을 강화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음.

#### 4. 정책제언

- □ 보건복지부가 9월에 발표한 보육료 지원체계 재설계 방안을 기본으로 보육 료 지원체계를 개선함.
  - 보육비용 지원을 이용시간과 연계하고 차등화 지원 조건을 적용함.
  - 단축형 비용을 포함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주기적으로 산정함.
  - 기본보육료를 부모보조금으로 개념을 정립함.
  - 양육수당은 지원 대상 소득계층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다소 올림.
-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
  - 단축형 보육, 단시간 정규 등 어린이집 서비스 시간 유형을 다양화함.
  - 부모·자녀 이용시설인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브 랜드화된 자녀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아이돌봄 인력 자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개별 돌봄서비스의 질이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함.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 등 특별한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등지원을 강화함.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 보장 방안을 강구함.
-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함.
  - 어린이집 물리적 설비는 물론 안전 교육이나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함.
  - 정부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지침을 지키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추가 부담 없이 특별활동 제공 방안을 모색함.
  -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제도로 전환하고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하며, 구체적 평가결과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와 재정지원를 연계함.
  - 민간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자가로 한정하고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적용하며, 일정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설비 기준을 강화함.
  -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로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 화를 위하여 부모의 역할을 강화함.
- □ 국공립어린이집을 전국에 균형 배치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장기적으로 보육아동 기준 50% 보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전국에 균형 배치함.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
  -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는 지원, 운영조건, 질적 수준 등 제반 상황에 국공 립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함.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엔 폐지함.
- □ 보육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를 적극 추진함.
  - 대졸 중심 학력과 경력을 반영하여 보육교사 자격과 급여체계를 개편함.
  - 단기적으로 교사들의 휴가 등이 법에서 정한 대로 시행되도록 대체교사를 확보함. 장기적으로는 반 담당 보육교사 이외에 추가 인력을 배치함.
  - 수납공간, 휴식공간, 개인을 위한 공간 등 교사가 근무하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있어야 함.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강화 및 교육 명령제를 도입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아이사랑 플랜(2009~2012)이라는 정책명으로 추진되어 왔다. 아이사랑 플랜은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던 새싹 플랜에 기초하여 일부를 변경, 보완, 수정한 것이다. 이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 하에서,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신뢰회복을 3대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6대 추진과제로 구성하였다. 6대과제는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어린이집 질 제고 및 균형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이다. 이는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서의 보육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제도적으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5세 누리과정 도입, 0~2세 보육료 전액지원, 양육수당제도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정착, 교사 수당 지급, 취업모 보육 지원 강화, 야간보육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고, 2013년 도입예정으로 누리과정 3~4세로의 확대, 양육수당 소득계층확대 지원 등의 정책을 결정하였다. 또한 교사 수당도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 및 5세 누리과정 교사 수당 등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서 예산도 2013년에는 GDP 대비 1%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 부담 완화 위주의 외향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거나 아쉬운 부분도 많다.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동일시하는 현 체계를 개편하고자 이용시간을 이원화하고 보육료 체계를 달리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종료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추가 배치 목표 자체가 취약지역 중심이었기 때문에 추가 배치 역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사의 근로환경이나 처우부분도 수당은 일부 확보되었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은 여전히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2012년 4년간 아이사랑 플랜으로 추진한 보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반적 보육정책에

대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하여 그 간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사업 심층 검토 주제로는 영아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보육료 이원화 시범사업, 2010~2012년간의 평가인증 2주기 시행운영 등 총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중장기 아이사랑 플랜(2009~2012년) 성과와 과제 도출,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검토, 주요 보육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로 구성하였다.

#### 가. 중장기 아이사랑 플랜(2009~2012년) 성과와 과제 도출

아이사랑 플랜(보건복지부, 2009)의 성과와 과제 도출을 위한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사랑 플랜 6대 추진과제별로 2009~2012년 계획, 추진 실적 및 예산 등을 파악하여 사업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아이사랑 플랜은 계획상 목표로 제시한 11개 항목 이외에는 사업별로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별 실적에 따른 결과를 서술하였다. 이는 ①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② 수요자 맞춤 지원, ③ 어린이집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④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⑤ 전달체계 효율화, ⑥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이다.

둘째, 각 주제별로 성과를 검토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향후 과제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정부의 중장기 보육발전 방안마련의 기초가 될 것이다.

#### 나.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등 검토

시·도 및 시·군·구 정부의 특수보육시책과 예산을 수집,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체 및 시·도별 보육사업 예산의 규모를 산출하였다. 또한 일부 시·도 및 시· 군·구 특수보육시책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다. 주요 사업 심층 검토

당해 연도의 주요 보육정책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심층 분석하는 과제로는 영아 양육수당, 이용시간 다양화, 평가인증제도 운영 체계의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 1) 영아 양육수당 검토

영아 영육수당은 2009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제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 영유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양육수당은 2012년부터 0~2세 무상보육 도입으로 영아보육 수요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대체 기능을 하는 부모 지원 정책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수요자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확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향후 확대 등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 2) 이용시간 이원화 시범사업 평가

보건복지부가 2011년 10월~2012년 2월까지 시행한 이용시간 이원화 시범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1)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제도적으로 이용시간 개념이 없고 보육서비스도 12시간 종일제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장시간 보육으로 교사와 아동 모두에게 부조리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단축형 보육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소규모 사업에 그쳤고, 그나마도 2012년을 2월을 기하여 시범사업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주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과제일 것이기때문에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이용시간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평가인증 운영체계 검토

평가인증 운영체계를 검토하였다. 평가인증제도는 2010~2012 3년간의 평가인 증 2주기 시행의 운영이 2012년으로 끝남에 따라서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3주기 시행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up>1) 2010</sup>년 심층분석 대상은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이었고, 2011년 심층분석 대상은 영아 가본 보육료로 공공형 어린이집이었음.

#### 3. 연구방법

#### 가.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선행 연구 등 관련 국내외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각종 통계자료, 국내 중장기 사업 평가 관련 자료, 이용시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검색 등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중장기 아이사랑 플랜에 대한 검토는 각 연도별 보건복지백서, 부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 나. 설문 및 의견 조사

아이사랑 플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 분석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는 모두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조사 방법, 대상및 내용 등을 다음과 같다.

#### 1) 아이사랑 플랜에 대한 의견 파악

학계, 보육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총 107명을 대상으로 아이사랑 플랜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먼저 비전과 전략 및 영역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어서 각 영역별로 세부정책에 대하여 성과와 향후 지속적 추진의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 2) 양육수당 관련 부모 조사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표본은 보건복지부 보육행정망을 활용하여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2012년 2월 29일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지역, 자녀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하고 서비스 비용과 양육수당 지원 유형별로 할당하였다.

즉, 조사 대상 규모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가구 200명,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 500명,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300명이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어린이집 미이용자이다.

구분	세부 조사 내용
공통 사항	- 양육수당 지원정책에서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 - 정부지급 양육수당의 적정 액수 - 고소득층에게 영아 양육지원 하는 것에 대한 인식 -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여부 -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확대 시 일을 그만 둘 의향
보육료 수혜 가구	- 보육료 지원받은 시기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 - 양육수당 신청 의향
양육수당 수혜 가구	-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이유 - 현재 지원받고 있는 양육수당 금액에 대한 만족도 - 양육수당을 포기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의향
미혜택 가구	-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이유 -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모두 받지 않고 있는 이유 - 희망하는 양육지원

〈표 I-3-1〉 양육수당 관련 부모조사 내용

조사 시기는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된 첫 달인 2012년 3월에 실시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표 I-3-1>과 같이 대상별로 차이가 나는데, 양육수당 정책 관련 사항은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업체가 담당하였다.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이다. 분석시 전체 통계는 조사 대상 집단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였다.

#### 3)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어린이집 부모 조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8시간(단축형)과 12시간(종일형)으로 나누고 이에 맞추어 보육료를 설정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보육과정) 다양화 시범사업을 2011년 10월 4일부터 2012년 2월 29일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간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한 부모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258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한달 정도가 지난 2012년 4월 9일~4월 13일이었다.

〈표 I-3-2〉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부모조사 내용

 주요 내용	세부 조사 내용
인구학적 특성	- 자녀 성별, 출생아 순서, - 가족유형, 가구소득, 보육료지원 수혜여부 - 부모의 취업상태, 출퇴근시간
단축형 이용 관련	<ul> <li>단축형 이용 이유, 귀가 후 보육자</li> <li>특기교육시간, 부모와 지내는 시간, 또래와 지내는 시간 아이의 정서적 안정 등 변화 정도</li> <li>보육료 인하분의 적정여부, 인하된 보육료 사용처</li> <li>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참여 만족도</li> </ul>
단축형 미이용 관련	- 단축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 단축형 이용아이로 인해 귀 자녀보육에 미치는 영향
기타	-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 및 희망 시각 - 어린이집 내외 특기교육 - 향후 서비스 이용의향

〈표 Ⅰ-3-3〉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271. /0(0)
구분	이용자	미이용자	구분	이용자	미이용자
연령			모취업		
만 3세	1.5	19.2	종일제 출근	16.8	43.4
만 4세	64.7	44.0	시간제 출근	7.2	10.7
만 5세	33.8	36.8	휴직 중	1.6	-
성별			자영업(가족 고용)	3.2	8.2
남	48.9	48.8	재택(가내작)업	-	2.5
여	51.1	51.2	미취업, 구직 중	0.8	2.5
출생순위			미취업	70.4	32.8
첫째	65.4	52.8	가구소득		
둘째	30.8	41.6	150만원 미만	4.7	10.2
셋째	3.8	5.6	150~200만원 미만	9.4	7.6
가구유형			200~300만원 미만	40.2	27.1
핵가족	88.0	76.8	300~500만원 미만	38.6	42.4
확대가족	8.3	16.0	500만원 이상	7.1	12.7
한부모가족	3.0	7.2			
기타	0.8	-			
계(수)	100.0(133)	100.0(125)	계(수)	100.0(133)	100.0(125)

조사 내용은 <표 I-3-2>와 같이 서비스 선택 이유, 단축형의 장단점 및 경감된 비용의 사용처, 만족도, 관련 의견 등이다.

조사 완료된 단축형 이용자는 대체로 4, 5세이고, 어머니는 미취업이 70.4%를 차지하며,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0.2%이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38.6%이다. 단축형을 선택하지 않은 아동은 대체로 4, 5세가 다수이지만 3세아도 19.2% 포함되어 있고, 어머니는 취업모가 다수이며, 가구소득은 단축형 이용자에 비하여 높다.

#### 4) 평가인증 관계자 의견조사

평가인증에 대한 의견조사 대상자 표본은 한국보육진홍원의 협조를 받아 전체 심의위원 233명 중 60명, 현장관찰자 177명 중 60명을 임의표집하였다. 즉, 총 120명의 보육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5월 3일~5월 9일이었다.

조사 결과, 심의위원 39부, 현장관찰자 54부 총 93부의 조사표가 수거되었고, 응답이 불충분한 관찰자용 설문지 1부를 제외한 총 92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내용은 일반사항, 운영체계의 적절성, 점수운용의 적절성, 지표의 적절성, 심의과정과 운영의 적절성으로 구성하였다(표 I-3-4 참조). 응답자의 특성은 <표 I-3-5>와 같다. 특히 심의위원 응답자는 교수, 어린이집 원장, 공무원 등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구분 내용 - 직업 및 평가인증 업무 내 역할 일반사항 - 순서, 소요기간, 관찰일 통보, 관찰자 수, 인증유효 운영체계의 적절성 기간, 결과통보방식, 사후관리 및 지도, 정부간 역 공통 할분담과 협력, 인증취소사항, 점수공개, 결과활용 - 점수산출방식, 인증 기준점수, 기본사항의 구성 점수운용의 적절성 지표의 적절성 - 유형분류, 항목 수, 척도, 질 관리 수단으로서의 효과 -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의견서 점수비율, 심 심의과정 및 심의위워 운영의 적절성 의위원회 의견서 구성내용, 심의위원 점수척도) 대상

〈표 I-3-4〉 평가인증 관계자 설문조사 내용

〈표 Ⅰ-3-5〉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	
		심의				
구분	관련학과 교수	보육정보 센터장	어린이집 원장	보육담당 공무원	현장관찰자	전체
 수	14	3	11	11	39	92

#### 다. 심층면담

심층 검토 대상과제인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평가를 위하여 사업 참여 어린이집 원장 7명과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파악하였다.

면담 내용은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운영 현황, 시범사업 종료 이후의 변화, 시범사업 효과 및 문제, 시범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등이었다

#### 라.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 개최

학계, 중앙 및 지방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 보육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보육체계 전반 검토와 평가를 위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였다. 아이사랑 플랜 중 일부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2009~2012년 보육 정책 성과와 정책 방향성 의견을 파악하였다.

또한 심층 검토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정책건의 등에 대하여 정부, 학계, 현장 등 관계자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4. 선행연구

보육정책들을 검토하여 기초 통계를 산출하고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정책 발전 가능성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2010(서문희·최혜선, 2010), 2011년(서문희·최윤경·김문정, 2011) 두 차례 추진되었고, 2012년이 3차 년도이다.

2010년에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예산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어린이집 공급

및 설치 관련 정책, 차등 지원 및 만 5세아 전액지원 등 보육료 지원 정책, 교사 인건비 등 교사 관련 지원정책, 프로그램 및 평가 등 질 관리 정책 등 각종 예산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특수시책사업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특수보육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효과성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심층분석 주제는 서울형과 부산형 공인 어린이집 제도이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였던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포함한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2011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시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었다.

2011년에도 중앙정부와 부모모니터링 등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였다. 2010년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동일한 지표를 산출하여 변화추이를 제시하였다. 2010년 연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점은 아이돌보미 등보건복지부 이외 보육관련 사업을 포함시켰으며 지방정부 정책으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2011년도 심층분석주제는 중앙정부 정책 중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로, 공공형 지정 어린이집 선정관련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이나 지원 수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가 되었다.

## Ⅱ. 아이사랑 플랜 추진 성과와 과제

제2장에서는 아이사랑 플랜 추진 성과와 과제를 전체 개요 및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통계 등 이용 가능한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계획과 실적을 살펴보고, 보육관계자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아이사랑 플랜 개요

#### 가. 내용과 특성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여성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관 받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용 방침에 따라 새싹플랜을 수정·보완하여 2009년에 아이사랑 플랜으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아이사랑 플랜에서 보육의 비전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II-1-1] 아이사랑 플랜 비전

아이사랑 플랜의 3대 추진전략은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확대, 신뢰회복2)이 며, 6대 추진과제는 부모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확립이다.

6대 추진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이사랑 플랜의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새싹플랜과의 차이를 통하여 아이사랑 플랜의 성격을 간략히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이사랑 플랜에서 보육의 비전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다. 아이는 나이와 특성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고, 부모에게는 아이 기르는 보람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된 세상이다. 보육비전에 서 일반 경제적 환경을 거론한 것은 다소 부담이 되지만 대체로 바람직하게 설 정하였다고 하겠다.

둘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은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확대, 신뢰구축이다. 비전에 따라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확대는 이해가 쉽게 되지 만 신뢰구축은 생소한 전략이다. 부모의 보육정책에의 참여와 정보제공 강화를 언급하고, 어린이집,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담고 있다.

셋째, 참여정부의 공보육에서 진일보한 '국가책임보육'으로 발전시킨다는 점 이 아이사랑 플랜과 이전 정부의 정책과의 차별성으로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새싹플랜 중 평가인증, 건강·영양·안전, 보육프로그램 강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항은 보완되었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양 육수당과 같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지원이 강화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바우처 를 통한 보육료 지원 방식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다. 새싹플랜은 이용아동 30%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였으나, 아이사랑 플랜은 민간어린 이집 서비스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하였고 국공립어 린이집은 취약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추가된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 보육대체교사 및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원, 보육료 선정기준 개편, 지도감독의 개선을 제시하였고,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 를 검토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축소 및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의 검토이다. 이는 아이사랑 플랜은 민간어린이집을

<sup>2) 3</sup>대 추진전략에 신뢰회복이 포함된 것은 정부와 국민, 정부와 어린이집 운영자간의 관계 중요성을 반영한 것임.

활용하여 서비스계약제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관리하면서 부모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공급과 지원 체계를 추구하여 왔음을 잘 나타낸다. '국가책임보육'을 표방하면서 부모들의 요구가 큰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배치라는 어려운 시도보다는 기존의 공급체제와 운영자 요구에 무게를 두었음은 신뢰구축이라는 추진 전략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 나. 적절성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아이사랑 플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추진과제는 적절히 설정되었다는 평가이다. 보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이사랑 플랜 비전과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추진과제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결과, 모두 4점 만점에 2.9점대의 점수를 주었다. 대체로 현장 전문가들의 평가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Ⅱ-1-1 참조).

〈표 Ⅱ-1-1〉 아이사랑 플랜의 적절성: 4점 척도

단위: 점(명)

7 11	비전		3대 측	수진전략	6대 측	(入)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97	(0.50)	2.93	(0.55)	2.94	(0.47)	(107)
공무원	2.96	(0.55)	2.85	(0.51)	2.89	(0.37)	(47)
학계	2.95	(0.58)	2.95	(0.72)	2.86	(0.64)	(22)
현장전문가	3.00	(0.40)	3.03	(0.49)	3.05	(0.46)	(38)
F	0.090		1.070		1.6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 2. 양육비용 부담경감

#### 가. 보육료 지원 확대

#### 1) 계획과 실적

아이사랑 플랜 보육료 지원 사업 계획으로는 만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만 5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다자녀가구 보육 지원 확대, 맞벌이가 구 보육지원 강화, 보육료 지원단가 합리적 재산정,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검토로 구성되었다.

#### 가) 만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 0~4세 차등보육료 지원은 2004년 이후 확대하여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3층은 지원단가의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지원하였다. 이이사랑 플랜 목표로는 2012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구의 80%까지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만 0~4세 보육료 지원 실적은 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우선 2009년 7월 부터는 새로운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적용하였다. 2009년 6월까지는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을 나누었다.4)

이러한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 변경과 더불어 2009년 7월에는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하였다. 즉, 2009년 하반기에 보육료 지원기준을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개념에서 일반적인 영유아가구 '소득분위' 개념으로 변경하여 보육료 지원 보편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지원계층도 기존의 5개 계층에서 3개 계층으로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의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획기적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표 Ⅱ-2-1 참조).

2010년에는 이러한 지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영유아가 구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전액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지원하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자동적으로 전액지원 대상으로 흡수되었다.

2012년에는 만 0~2세는 전 소득계층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3, 4세는 변함없이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524만원 이

<sup>3)</sup>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6계층으로 구분함. 1층은 법정 저소득층, 2층은 차상위계, 3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4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5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6층은 그 이상임.

<sup>4)</sup> 매년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을 추정하여 사용함.

하가 지원 대상이다(표 Ⅱ-2-2 참조).

〈표 II-2-1〉 보육비용 지원 기준

단위: %

2008			200	2009. 7		10	20	)11	20	12			
영아	유아	기준	기준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100	100	법정저소득층	- - - 										
100	100	차상위 계층		]   된 이 EO(() 시 된	   취이50% 이 취	하위50%이하 							
89.6	80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00   100	100	.00   100	100	100	100	100	100		
79.1	60	70% 이하	하위60%이하	79.1	60	79.1	60						
63.4	30	100% 이하	하위70%이하	63.5	30	63.5	30						
47.8	-	100% 초과	상위30%이상	47.7	-	47.7	1	47.8	-		-		

〈표 Ⅱ-2-2〉 만 3~4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기준: 2012년

단위: 만원

지원자격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영유아 (만 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454	524	586	642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만 0~4세 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 수는 2011년 말 기준으로 85만 1천여명에 이른다(표 II-2-3 참조).

2013년부터는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기준액을 전액 지원한 다는 방침이다.

〈표 Ⅱ-2-3〉 보육료 지원 아동 수: 2008~2011년

단위: 명

구분	합계	0~4세 보육료	만 5세아무상 보육료	장애아무상 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다문화 아동
2008	716,400	592,256	-	15,644	108,500	-
2009	794,755	671,721	107,951	15,083	( 60,704)	-
2010	878,880	760,110	103,832	14,938	(142,210)	-
2011	991,310	851,362	99,334	14,405	-	26,209

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아동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과 중복되므로 합계에서 제외하고, 2011년 방과후를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나) 만 5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및 누리과정 실시

만 5세 무상보육·교육은 취학 전 아동의 학업준비와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보육료·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1999년 하반기에 농어촌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5)

2009년 하반기~2011년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이다. 취학 유예된 아동은 1회에 한하여 재지원이 가능하다. 2011년에는 보육아동 70%에 해당하는 4인가구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지원하였다. 정부지원 단가는 월 172천원이었다.

2012년부터 전체 만 5세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추진되었다.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만 5세의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 9월 5일자로고시되었다.6

그 비용 지원도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만원으로 올렸으며, 지원 단가를 점차 늘려서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금 재원은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과 동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5세 누리과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에 3개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8)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 5세

<sup>5) 1999~2001</sup>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sup>6) 2011</sup>년 9월 5일자 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참조

<sup>7) 2012</sup>년 현재 월 7만원이 기준인데, 이중 일부를 누리과정 교사수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나 보조교사 이용으로 사용할 것은 권고함.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아동 1인당 45,000원 정도임.

<sup>8)</sup> 이는 2011년 9월 26일 제38회 차관회의를 거쳐 9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 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2011. 9. 30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참조

유아로 확대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 유아로 확대하고 동시에 소요 비용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 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 다) 다자녀가구 보육지원 확대

정부는 200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였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20%를 추가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교육비를 정부지원 기 준단가의 최대 50%까지를 추가로 지원하였다.9

2010년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높였다. 즉,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다녀도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상은 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수준도 지원단가 최대 50%에서 70%까지로 확대하여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은 차등보육료 지원액과 합쳐 정부지원 기준단가 100%를 지원하였다.

2011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전액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자녀 가구 지 원 정책은 소멸되었다.

#### 라) 맞벌이 보육료 지원

보육정책이 보편적 정책이 되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추가적 정책의 필요성

<sup>9)</sup> 지원단가는 최대 50% 지원 시 만 1세 미만 아동 월 191천원, 만 1세 아동 월 168천원, 만 2세 아동 월 139천원, 만 3세 아동 월 95천원, 만 4세 아동 월 86천원이었음.

즉, 맞벌이 가구라도 부부소득을 모두 100% 합산하던 것을 2009년 7월부터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15,000여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0년에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부부 중 낮은 소득이 아니고 맞벌이 가구 부부 소득 합산액의 25%를 감액하여 약 27,000명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보게 되었다. 2011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2012년에도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3, 4세 아동에 적용되었다.

#### 마) 농어업인 보육료 지원

농어업인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 유규모 5ha 미만으로 농어업 외 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4,000만원 미만<sup>10)</sup>인 자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농특회계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통합된 것이다.

지원 수준은 정부지원단가 70% 수준이다. 이 사업 역시 2012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 3, 4세 아동에 적용되었다. 수혜자는 약 11천명이 며 소요예산은 98억원이다.

#### 바)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 보육은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보육하는 것으로, 2012년에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에게 월 60시간 한도로 시간당 2,700원을 시간연장 보육료로 지원하다.

정부는 부모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운영상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 소한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sup>11)</sup>

#### 사) 보육료 지원단가 합리적 재산정

계획으로 제시한 보육료 지원단가 새로운 산정은 공식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표준보육단가는 1999년까지 산정하여 '보육사업지침'으로 제시하다가 그 이

<sup>10) 2</sup>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미만임.

<sup>11) 2012. 7. 5.</sup> 연합뉴스 보도 및 2012. 7. 6 보건복지부 해명 보도자료 참조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표준보육단가 고시를 각 시·도에 위임한 이후에는 기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보 육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sup>12</sup>), 2008년<sup>13</sup>에 표준보육비용 산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 산출 비용을 확보하였다. 2004년에 산출한 표준보육비용은 2005년 영아 기본보조금 산정에 기초가 되었고, 2008년에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보육비 지원 기준단가는 연도별로 다소 증가해왔는데, 2012년 현재 영아는 기본보육료를 포함하여 1세 미만 보육아동은 월 755천원, 만 1세 월 521천원, 만2세 보육아동은 월 401천원이고, 유아는 만 3세 아동은 197천원, 만 4세 이상 보육아동은 월 177천원이다(표 II-2-4, 표 II-2-5 참조).

〈표 II-2-4〉 영아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2007년 2008년 2009~2010년 2011~2012년 구분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금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361 174 115 보육료 317 262 | 372 327 383 394 286 361 270 337 278 347 지원단가 보육비용 653 451 348 712 491 379 733 506 390 755 521 401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표 II-2-5〉 유아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_ /
그.ㅂ.	2007년		2008년		2009~2	2010년	2011~2012년	
구분	만 3세	만 4세	만 3세	만 4세	만 3세	만 4세	만 3세	만 4세
보육료 지원단가	180	162	185	167	191	172	197	177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아)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검토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과제는 부모의 근로 특성 등 보육수요에 따라 필 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료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sup>12)</sup>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sup>13)</sup>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위한 과제이다.

이는 모든 아동에게 12시간 보육이 기본인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자는 정책이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종일제 보육을 필요로하지 않는 아동도 일부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물게 되고, 보육교사도 모든 아동을 12시간까지 보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의 준수, 재교육은 물론 보육활동 준비를 위한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추가되는 예산 부담으로 2011년 10월 4일부터 2012년 2월 29일 인천 광역시 남동구 민간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단기간, 소규모의 편법적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사업을 종료하였다.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8시간(단축형)과 12시간(종일형)으로 나누고 단축형 보육료를 지원단가로 설정하여 민간어린이집의 지원단가와 보육료 상한액 차액인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을 삭감하여 주고 이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용시간다양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즉, 일부 아동이 보육료를 적게 내고 합법적으로 이르게 귀가하였으며 어린 이집은 수익구조에 아무런 변화 없었기 때문에 운영자, 교사와 부모 모두 만족 하는 시범사업으로 마칠 수 있었다.

#### 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 및 예산 증액

아이사랑 플랜 기간 동안의 부모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어 2011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73%가 보육료 지원 대상이며 2012년에는 만 3, 4세 아동 중 소득상위 30%를 제외하고 만 0~2세와 만 5세는 모두 전액지원 대상이다(표 Ⅱ-2-6 참조).

대상 확대 이외에도 취업모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감면액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부부 중 낮은 소득 25%에서 합산 소득의 25%로 확대하여 취업모를 배려하는 정책적 접근을 강화하였고, 또한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전액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지원의 확대에 힘입어 어린이집도 2008년 이후 3년간 6,300여개 이상 증가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같은 기간 동안 21만명이 늘어났다 (표 II-2-7 참조).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대비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영아 54.1%, 유아 42.0%로 전체 평균 48.0%이다(표 II-2-8 참조).

보육예산도 국고 약 3조, 지방비 포함 6조 1300여억원에 이른다(표 **II-2-9**, 표

 $\Pi$ -2-11 참조).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 예산은 4560여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별도로 지원된다(표  $\Pi$ -2-10 참조).

〈표 Ⅱ-2-6〉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수 및 비율: 2008~2011년

단위: 명, %

							!TI. 5, /o
구 분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5세이상	계
2011년							
전체 보육 아동수(A)	146666	249787	342879	272034	182999	164364	1348729
보육료 지원 아동수(B)	112933	188198	244469	196531	133908	115271	991310
보육료 지원 비율(B/A)	77.0	75.3	71.3	72.2	73.2	70.1	73.5
2010년							
전체 보육 아동수(A)	125,133	229,486	331,637	243,264	180,542	169,848	1,279,910
보육료 지원 아동수(B)	87,934	160,377	222,257	162,554	124,337	121,421	878,880
보육료 지원 비율(B/A)	70.3	69.9	67.0	66.8	68.9	71.5	68.7
2009년							
전체 보육 아동수(A)	107,525	198,831	268,038	227,966	193,934	26,375	1,022,669
보육료 지원 아동수(B)	72,730	138,265	175,710	148,448	129,914	14,836	672,087
보육료 지원 비율(B/A)	67.6	69.5	65.6	65.1	67.0	56.3	65.7
2008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9,245	160,320	242,324	229,424	192,668	36,198	960,179
보육료 지원 아동수(B)	53,072	99,423	152,076	144,917	123,015	19,653	592,256
보육료 지원 비율(B/A)	53.5	62.0	62.8	63.2	63.8	54.3	61.7

주: 방과후 포함됨. 5세 이상은 2010년의 경우 무상보육 대상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II-2-7〉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과 보육아동 수: 2008-2011년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u></u> 부모협동
어린이집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9	401	74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비율)	(100.0)	(5.3)	(3.7)	(2.2)	(35.5)	(52.0)	(1.1)	(0.2)
보육아동								
2008	1,135,502	123,405	113,87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236,892	18,794	1,655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29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비율)	(100.0)	(10.6)	(8.4)	(3.8)	(52.4)	(22.9)	(1.9)	(0.2)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Ⅱ-2-8〉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1년

단위: 명 %

						그 기 · 이 , /0
구분	인구수1) (A)	어린이집 (B)	유치원 (C)	계 (B+C)	비율 (B/A)	비율 (B+C/A)
0세	451,579	146,666	-	-	32.5	-
1세	470,224	249,787	-	-	53.1	-
2세	445,437	342,879	-	-	77.0	-
0~2세 소계	1,367,240	739,332	-	-	54.1	-
3세	466,807	272,034	133,986	406,020	58.3	87.0
4세	494,388	182,999	196,602	379,601	37.0	76.8
5세	448,774	137,349	233,724	371,073	30.6	82.7
3~5세 소계	1,409,969	592,382	564,312	1,156,694	42.0	82.0
0~5세 전체	2,777,209	1,331,714	564,312	1,896,026	48.0	68.3

주: 인구수는 2011년 12월 주민등록인수임. 모취업률은 2010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자료는 2011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11년 4월 통계로 5세 이상이는 제외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치원현황.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Ⅱ-2-9〉 국고 지원 예산: 2008~2012년

단위: 백만원

						<u> </u>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율)
어린이집 운영지원	549,747	343,856	349,528	395,023	423,152	14.0
보육료지원	807,851	1,282,168	1,632,204	1,934,611	2,391,291	79.0
어린이집 기능보강	24,039	21,437	9,438	14,650	11,867	0.4
보육 인프라 구축	5,658	29,787	12,181	16,250	15,377	0.5
어린이집 평가인증	11,987	4,191	3,401	4,975	6,026	0.2
어린이집 지원(공공형 등)	14,364	15,301	55,093	23,077	78,207	2.6
양육수당	0	8,100	65,664	89,794	102,646	3.4
기타	10,000	0	0	0	0	0
전체	1,423,646	1,704,840	2,127,510	2,478,380	3,028,567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육예산 설명자료.

〈표 II-2-10〉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재정: 2012년 예산

단위: 백만원

		유아교육	<del>우</del> 비지원		교육	활동지원		
지역	5세 유아학비	종일반비	기타 유아학비	소계	유아교육진홍원 운영 및 관리	기타 유아교육 진흥사업비	소계	총합계
예산	388,122	67,297	80	455,499	384	84	468	455,96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예산 집행 현황 및 2012년 예산. 내부자료., 권미경·김문정(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재인용

〈표 Ⅱ-2-1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8~2012년

					Ç	근위: 백만원
	내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운영지원	인건비	658,368	753,082	766,876	813,638	867,084
	0-4세 보육료	1,254,762	2,109,618	1,856,036	3,499,6426	4,525,895
	5세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262,783	281,906	248,963	205,361	27,277 (599,600)
	장애아무상보육	66,577	105,602	94,721	88,778	87,680
보육료	두자녀보육료	98,594	172,116	173,235	-	-
모 <del>파</del> 묘 지원	기본보조금	530,472	-	934,915	-	-
기면	맞벌이 보육료	-	-	19,700	88,820	92,002
	다문화가족무상보육	-	-	-	23,447	19,364
	시간연장보육료	-	-	-	-	68,603
	농어업인 보육료	-	-	-	-	19,850
	소계	2,213,188	2,669,242	3,327,570	3,915,155*	4,840,670
어린이집	기능 보강	65,197	41,978	17,902	25,900	23,734
인프라 -	구축 등 기타	24,615	8,205	7,362	19,335	22,785
어린이집	평가인증	(11,987)	(4,191)	(3,401)	(4,975)	6,026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	30,325	32,502	32,473	31,320	127,015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 원	-	-	-	16,347	31,022
시설미이	용아동양육지원	-	68,802	136,764	186,905	213,846
계		2,991,693	3,573,811	4,288,947	5,018,600	6,132,183

주: 국고 지원 사업의 중앙과 자방정부예산 합계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함. 시·도 미통지액 포함함. 2009년 기본보육료는 운영비로 분류됨.

## 3) 보육관계자 의견

보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완화 세부과제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의 효과성과 모의 사회활동 진출에의 도움 정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육부담 경감 효과가 모의 사회활동 진출에의 도움정도보다 높은데, 양육부담 경감 효과는 만 3~5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가 비교적 높고, 모의 사회활동 진출에의 도움은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확대와 만 3~5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Ⅱ-2-12 참조).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내부자료. 서문희·최윤경 외(2011). 2011 보육정책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표 II-2-12〉 비용 부담완화 과제 효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양육비용 부담 경감 효과성		모의 사회활동 진출에의 도움정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만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5.03	(1.46)	4.29	(1.30)
만 3~5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5.41	(1.33)	4.82	(1.32)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5.31	(1.30)	4.64	(1.31)
농업인 보육료 지원 확대	5.07	(1.30)	4.56	(1.21)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확대	4.96	(1.35)	4.94	(1.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이외에 보육료 단가의 현실화와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검토 과제 성과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서 각각 3.87점, 3.61점으로 조사되었다. 학계나 현장전문가에 비하여 공무원이 보육단가 현실화 성과가 높다고 생각한다(표 Ⅱ -2-13 참조).

〈표 II-2-13〉 비용부담 완화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료 단가의 현실화	어란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검토	(수)
전체	3.87	3.61	(107)
(표준편차)	(1.39)	(1.42)	, ,
공무원	$4.30^{a}$	3.79	(47)
학계	$3.45^{bc}$	3.45	(22)
현장전문가	3.58 <sup>c</sup>	3.47	(38)
F	$4.308^{*}$	0.669	,

주: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 4) 성과와 과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누리과정과 더불어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를 정해진 단가 모두를 지원하는 소위 무상보육의 실현으로 기록될 것이다.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는 국가 책임 증대,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 이에 의한 기관과기관 이용 아동 수 증가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누리과정의 3, 4세 확대와양육수당 확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2012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의

<sup>\*</sup> p < .05.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인 2013 년도에도 이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양육수당의 제도 진입도 논란은 있으나 향후 전개에 따라서는 정책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 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지원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

최근에 무상보육, 어린이집 이용의 증가를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보아야 하는 지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보육비용 지원을 포함한 문제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아보육 관련 문제이다. 특히 2012년 만 0~2세 무상보육으로 영아 보 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언급되는 사회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는 영아보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이 보장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즉, 우선 입소가 보장되지 않는 취업모 자녀의 보육수요 미충족 이 문제가 된 것이다.14) 두 번째는 중앙 및 지방정부 소요 예산의 부족이다. 어 린이집 대기아동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에 정부가 기존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 고 지방정부의 인가제한을 완화하며 공급을 독려하였다. 이로 어린이집 공급 문 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지방정부가 무상에 따른 이용 아동 증가로 인하여 증가된 분담금 부담을 이슈화하였다. 지방정부들은 복지부가 추 정한 대기아수 86,000명은 과소 추정되었고 실제로는 191,000명이 증가한 것으 로 추정하고, 2012년부터 지원하는 만 0-2세 보육료 중 전액 지원 예산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소득상위 30%를 지원하는 비용만 산정하였기 때문에 지 방정부는 국회와 정부가 보육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된 3788억원과 수요 예측을 잘못해 생긴 추가소요분 2851억원 등 총 6639억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 였다.15) 결국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정 부가 4351억원,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지원하였다 .16)17) 세 번째는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추진된 정원 확대 및 신규 인가 정책으로 어린이집의 환경 등 질적 수준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 한 보육아동 증가도 보육의 질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

<sup>14)</sup> 취업한 엄마들은 양육관련 사용 시간의 제약으로 미취업모에 비하여 정보력과 행동력이 약함.

<sup>15) 2012. 8. 2.</sup> 한계레신문 보도

<sup>16) 2012. 9. 14.</sup> 연합뉴스 보도.

<sup>17)</sup> 국고보육료 증가분 2478억원은 예비비로 확보하여 별도로 지원함.

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부 모의 역할 수행과 아동의 발달 측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 책결정 시 아이 발달에 어떠한 환경이 더 바람직한지 등 아이 중심적 관점 고 려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확대와 가정어린이집의 증가는 이미 2006년 영아 기본 보육료18)의 지원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준비 없이 다시 만 0~2세 무상보육으로 부모의 책임성과 재정의 효율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제 의 해결책으로 아동에 대한 배려와 부모의 선택권 관점에서 양육수당 확대와 육아지원센터와 같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기회 제공이 논의되고 있다.

둘째, 누리과정 도입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는데,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 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만 5세 지원단가는 20만원이지만 종일반비로 7만원 을 추가 배정하여 교사 수당으로 30만원을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아동 당 4~5만원을 운영비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면서 보조교사 인건비나 교재교구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조치는 재원의 효율적 사용 관점에서 보면 적절성 이 낮다. 추가된 운영비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나 부모 부담 경감과 연계하 여 보다 분명한 지침을 필요로 한다.

셋째,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는 정책과제로 추진하였으나 단시간의 편법 적 시범사업으로 종료하는 수준에서 멈추었다. 사업 자체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 았고 시범사업조차도 형식적으로 추진되었다. 재정 부담이 줄어든 부모들과 오 후 보육아동이 줄어든 교사는 사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범 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상당수가 원래 비교적 일찍 귀가하는 아동이었고, 부모는 식감된 보육료를 특별활동 비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19) 보육지원단가가 보육비용이 이용시간 언급 없이 단일 종이 제시되고 있는 획일화된 보육비용 지원구조는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구분하는 정책적 개선으로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육료 지원 단가의 합리성 제고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우선, 보 육료 상한액, 보육료 지워 단가, 표준보육비용 간의 격차가 있다. 만 4세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12년 17만 7천원, 보육료 상한액 25만원 내외, 표준보육비 용 28만원선이다. 이는 실제 어린이집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과 정부의 지원단가

<sup>18)</sup> 기본보육료는 보육바우처 시스템 도입 시 바우처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설보조금으로서의 분류하였지만 전액지원 하에서는 부모보조금으로 보는 시각이 강함.

<sup>19)</sup>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은 심층 검토 주제로 제Ⅳ장 제2절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음.

간의 격차로 전액 지원 정책의 체감도를 낮춘다.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기준이나 개념도 불분명하다. 또한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상한선은 물론 포함하는 항목이나 기준도 지역마다 다르다.

## 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1) 계획과 실적

아이사랑 플랜에서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 대체 지원으로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점차 대상과 지원수준을 늘려간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24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 및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은 사실상 보호자에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이다.

도입 시 양육수당은 차상위 이하 만 0~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12월까지 지원실적은 69,000명이다.

2010년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지원아동은 차상위 이하 만 0~1세 아동 49,800여명이 지원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만 0~1세 아동 대비 5.74%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만 5세 미만 아동의 상대빈곤율을 10.4% 정도로 추정할경우(보건복지부·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006) 대상자의 약 반 이상이 지원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에는 점차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늘려간다는 계획에 따라 확대가 추진되어, 2011년부터는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그 결과, 89,700여명 정도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동의 6.86%인데, 만 0, 1세와 만 2세 간 비율 차이는 크다.

2012년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2013년에는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9.6만명에서 2013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 대상이 된다.20)21)

〈표 II-2-14〉 양육수당 지원 개요: 2009~2012년

단위: 천명, %, 억원 예정 구분 대상 지원 내용 예산 규모 2009 -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월 10만원 324 2010 -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상동 51 657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011 - 차상위 이하 0-2세 아동 98 897 2세아 10만원 2012 - 차상위 이하 0-2세 아동 상동 96 887 정부지원단단가의 45% - 농어촌 거주 아동 11 102 - 장애아동 36개월 미만 20만원, 5 37 36개월 이상~ 취학전 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II-2-15〉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2010 22,870 26,978 49,848 (전체아동 대비비율) (5.21)(6.13)(5.74)2011 36,621 38,408 14,610 89,639 (전체아동 대비비율) (8.47)(8.83)(3.33)(6.86)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각 연도). 내부자료.

〈표 II-2-16〉 양육수당 지원 기준: 2012년

가구원 수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47만원이하	180만원이하	213만원이하	246만원이하

한편, 2012년 양육수당에는 농어촌 거주 아동<sup>22</sup>)과 장애아동이 포함되었다. 농 어촌 거주 아동 양육수당은 농수산식품부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농어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sup>23</sup>)에 근거하여 농어 촌 거주 아동은 농지 5만㎡ 이하로 소득 1자녀 기준 4,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

<sup>20) 2012 1. 18.</sup>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공동 보도자료 참조

<sup>21)</sup> 향후 국회에서 소득계층 상한선을 없앨 가능성이 높음.

<sup>22)</sup> 농림식품수산부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른 것임.

<sup>23) &#</sup>x27;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 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 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상이며 지원수준은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45%이다. 수혜자는 2012년에 6천 명 정도이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 2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 법' 제34조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기준에 의한다. 소득수 준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 원한다.

양육수당 예산을 보면, 2009년 324억원에서 2010년 65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하였다. 이는 2009년에 이 제도가 하반기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지원 기준 등 에 차이는 없다. 소요예산은 2011년 897억원으로 2010년 대비 36.5%가 증가하였다. <표 Ⅱ-2-17>은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관련 조항 개정을 나타낸다.

 구분	내용	개정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ul> <li>양육수당 지원대상의 소득, 연령기준 구체화</li> <li>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을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항목으로 표준화</li> <li>·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 중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 장시간근로 및 국외근로" 포함, 금융재산 가액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등</li> </ul>	'09.06.30
	-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만2세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변경	<b>'11.01.20</b>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구체화 및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등 5종 공통서식 활용 근거 마련	′09.12.31

〈표 II-2-17〉 양육수당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

### 2) 보육관계자 의견

보육관계자 조사에서 양육수당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에는 7점 만점에 4.97점, 모의 사회활동 진출에의 도움 정도에는 4.13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앞에서의 각 보육관련 비용 지원사업의 양육부담 경감이나 모의 사회활동 진출 효과성 평가 점수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표 Ⅱ-2-18〉 양육수당 효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평균

단위: 점

	양육비용	부담 경감 효과성	모의 사회	활동 진출 도움
7 亚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4.97	(1.48)	4.13	(1.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 3) 성과와 과제

양육수당 제도 도입은 정책적으로 부모들 간의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서비스 중심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직접 양육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2010년에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2년 만 0~2세 무상보육으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양육수당은 시설 보육 지원의 정책적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영아의 부모 양육을 지원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부모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과 서비스 대체인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수당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기를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이므로 지원 수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sup>24</sup>)

양육수당의 정책적 논란의 주제는 세 가지다. 우선은 지원대상의 확대이다. 보육서비스 대체 지원이므로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과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 성 문제가 있으므로 대상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급여액 상향조정인데, 이는 또 다르게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과도하게 자녀 직접 양육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수준 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지원 대상 연령과 관련하여 영유아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과 이 정책은 보호 가 주된 서비스인 영아 지원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25)

<sup>4)</sup> 핀란드나 노르웨이의 공공서비스 대체수단으로 지원되는 영아 양육수당이 일하는 영아의 모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4년 프랑스의 6세 미만 아동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에 노동시간 감축수 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당(APE) 제도 확대는 출산 수준 증가에는 긍정 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여성 취업률은 다소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음(Piketty, 1998).

# 3.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은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장애아동 어린이집 이용 불편 제거, 맞벌이 부모 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구성하였다.

# 가.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1) 계획과 실적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아이사랑 플랜에서의 계획은 ①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 검토, ②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③ 다문화 프로그램 이수 보육교사 양성체계 마련, ④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소규모 보육사업 실시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추진된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료,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을 도입하였다. 제도적으로도 무상보육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보육 우선제공 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신설하였다(표 Ⅱ-3-1 참조). 단, 결혼이민자 중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 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사회정서발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또래 일반아동 대상 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도 및 부모교육 진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영유아 언어발달 사업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중심으로 어린이집에 다문화 언어 지도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 시범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여 개소 선정하였다.

셋째, 보육교사 연수 시 다문화 이해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도 방법을 교육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시범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보수교육과도 연계 추진하여 경북, 전북, 전남, 강원, 경기지역 1,200명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

<sup>25)</sup> 양육수당은 본 심층 검토 대상으로 제IV장 제1절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음.

## 시하였다.

이외에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소규모 보육사업 실시는 소규모 어린이집 설 치와 동일한 사업이다.

<표 Ⅱ-3-1>은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 지원 관련 조항 개정 실 적을 나타낸다.

구분	내용	개정일
영유아보육법	-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보육우선제공대상에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신설 - 무상보육 특례에 취학직전 1년 유아와 장애아 포함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추가	'11.06.0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무상보육대상자를 취학직전 만 5세아에서 5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변경	<b>'11.09.30</b>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 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및 다자 녀(세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 추가	'09.12.31

〈표 Ⅱ-3-1〉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개정 내용

### 2) 보육관계자 의견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지원 3개 세부사업에 대한 보육관계자의 성과 의견을 7 점 척도로 보면 다문화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이 5.08점, 다문화가족 보육서비스 의 질 향상이 4.27점, 다문화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3.70점으로 사업 간의 격차 가 크다. 즉, 비용지원은 잘 되었으나 이에 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성과 는 부족하고, 다문화 교사의 전문성 강화 사업 성과는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표 Ⅱ-3-2〉 다문화가족 보육 지원 세부과제별 성과 정도: 7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양육부담 경감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다문화 교사의 전문성 강화	(수)
전체(표준편차)	5.08(1.28)	4.27(1.12)	3.70(1.22)	(107)
공무원	5.11	4.26	3.70	(47)
학계	5.23	4.50	3.68	(22)
현장전문가	4.97	4.16	3.71	(38)
F	0.28	0.65	0.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교사 부분 이외에는 학계의 평가가 점수가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 3) 성과와 과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뒤이은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로 그 의미는 축소되었다.

〈표 Ⅱ-3-3〉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11년

단위: 명(%)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개인	부모 협동	가정	직장	보육아동 대비 비율
전체	47,012	5,041	5,367	2,521	23,940	4	9,943	196	3.5
(비율)	(100.0)	(10.7)	(11.4)	(5.4)	(50.9)	(0.01)	(21.1)	(0.4)	
지역규모									
대도시	13,946	1,779	621	398	7,998	2	3,063	85	2.7
중소도시	14,923	1,077	550	361	8,097	1	4,771	66	3.0
농어촌	18,143	2,185	4,196	1,762	7,845	1	2,109	45	5.7
시·도									
서울	5,825	1,208	66	206	3,132	1	1,172	40	2.7
부산	1,882	261	97	50	1,144	-	326	4	2.8
대구	1,616	53	200	54	999	-	308	2	2.6
인천	1,914	174	29	33	1,167	-	507	4	2.7
광주	1,173	67	221	31	594	-	239	21	2.3
대전	1,107	37	86	22	557	1	392	12	2.5
울산	1,138	69	22	6	835	-	204	2	3.8
경기	10,302	984	185	278	5,614	1	3,199	41	3.0
강원	1,542	216	404	142	552	1	224	3	3.6
충북	1,887	185	500	136	812	-	250	4	3.9
충남	3,242	226	692	228	1,455	-	606	35	5.1
전북	2,903	211	686	474	1,074	-	458	-	5.1
전남	3,378	328	1,211	365	1,103	-	368	3	6.3
경북	3,943	550	404	195	2,202	-	577	15	5.5
경남	4,401	442	329	217	2,386	-	1,019	8	4.4
제주	759	30	235	84	314	-	94	2	3.0
2010	30,319	3,412	3,952	1,903	15,069	6	5,885	47	2.4
2009	26,412	2,855	3,438	1,697	13,234	6	5,103	79	2.2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다만, 2012년의 경우에도 만 3, 4세 다문화가족 자녀는 소득상위 30%도 보육 료나 교육비는 전액 지원된다. 2011년 말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47,012명이다.

201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 수 93,537명이므로 이들의 50.2%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전체 영유아 대비 보육아동의 비율이 48%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 이용 다문화가족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대비 3.5%인데 지역규모별 로 농어촌은 5.7%이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2.7%, 3.0%로 도농 간의 차이가 크 다. 특히 전라남도가 6.3%이다(표 Ⅱ-3-3 참조).

어린이집 이용 다문화가족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분포를 살펴보면, 2011 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법인이 6%, 국공립이 8.4%이고, 민간개인 47.2%, 가 정 34.5%이다. 한편, 다문화가족 아동을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총 18,124개소로 전체 시설 수 대비 45.5%이다. 지역규모별로는 특히 농어촌 어린 이집은 57.6%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보육한다. 18,124개 어린이집에서 47,012명의 아동을 보육하므로 1개 어린이집 당 평균 3명 미만을 보육한다고 하겠다. 일부 다문화 밀집지역에서는 다문화 특성화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Ⅱ-3-4 참조).

〈표 Ⅱ-3-4〉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개인	부모 협동	가정	직장	시설수 대비 비율
2011									
전체	18,124	1,529	1,090	573	8,572	4	6,257	99	45.5
대도시	6,502	708	242	164	3,326	2	2,015	45	44.6
중소도시	7,001	396	194	119	3,176	1	3,079	36	40.7
농어촌	4,621	425	654	290	2,070	1	1,163	18	57.6
2010									
전체	12,063	1,166	928	488	5,810	5	3,619	-	31.7
대도시	4,220	514	184	130	2,212	3	1,159	-	30.1
중소도시	4,252	291	147	88	2,022	1	1,685	-	26.2
농어촌	3,591	361	597	270	1,576	1	775	-	46.3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미흡하다. 어린이집 교사 조사에 의하면어린이집 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아동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다는 비율은 58.4%이었다(장명림·장혜진·권미경·한영숙, 2011).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 낮아서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65.5%이고 있다는 경우도 한글교육이 19.6%로 가장 많고 방과 후 특별지도나 이중 언어교육은 5% 정도이다(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 2011).

둘째,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아동에게는 초등학교 준비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초등학교 자녀 중 입학 전에 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24.5% 정도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비해 10% 정도 참여 비율이 높았다. 학교 입학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프로그램을 주관한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6.6%로 가장 많았다(서문희·양미선·조혜주 외, 2011).

〈표 II-3-5〉 초등학교 입학 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주관 기관(복수응답)

단위: %(명)

								11. /0(0)
	(4) 3(1)			주:	관 기관			
구분	'있다'는 비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회 복지관	종교 기관	행정 기관	기타	모름/ 무응답	(수)
전체	24.5	56.6	5.5	9.7	6.9	20.0	9.7	(157)
대도시	19.8	50.0	8.3	8.3	8.3	12.5	16.7	(25)
중소도시	18.2	53.3	6.7	6.7	6.7	23.3	10.0	(32)
읍·면지역	29.6	59.3	4.4	11.0	6.6	20.9	7.7	(100)

자료: 서문희·양미선·조혜주 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셋째, 어린이집에서 결혼이민자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일반 부모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사조사에서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교사의 6.1%만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장명림 외, 2011).

# 나. 장애아 어린이집 이용 편의 제공

## 1) 계획과 실적

아이사랑 플랜에 의하면 장애아동 관련 계획은 장애인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설 환경 개선 및 장비 구비 등 지원,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 직원 자격 강화 및 처우 개선, 장애아 보육 지원체계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과제별 추진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장비비 지원

정부는 '장애아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편의제공을 강화로 한다는 취지로 장애아의 어린이집 시설 환경 개선 및 장비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9년 장애아전담시설, 2011년 100인 이상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2013년 일반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에 보수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단체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 2009년부터 개보수와 장비비를 지원하였다. 2009년부터 2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아시설 개보수 15개소, 장비비 지원 27개소를 지원하였다. 장비비는 이동용 보조기구, 학습보조기구 및 이동수단, 학습참여 보조기구, 의사소통 지원기구, 측정검사도구 및 치료 자료 등이다. 2012년에는 개보수 16개소, 장비비 지원 76개소로 총 3억 5,400만원을 지원한다.

〈표 II-3-6〉 인건비 지원 장애아 어린이집 개보수비와 장비비 지원: 2009~2012년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장비비 개보수 국고 예산 293 2009 15 27 276 2010 16 24 2011 16 76 354 2012 16 76 354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나)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 강화 및 처우 개선

현재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이외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보육교 사 및 특수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취사부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 다. 또한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특수교사 수당 10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에 대해서는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80%(민간은 월 120만원)를 지원하며, 이외의 일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장애아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1인당 36만 1천원)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8월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시행규칙 제5조로 정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기준은 특수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하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은 2급 이상이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이다. 배치기준은 장애영유아 3명당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1명 배치하되 교사 2명 중 1명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2016년 만 5세 이상, 2017년 만 4세 이상, 2018년 만 3세 이상으로 차츰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다) 장애아 보육의 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장애아 진단·평가·배치 및 보육 지원 체계 마련, 장애아 전담, 통합, 일반시설 분류체계의 전환 등 보육 지원시스템 마련은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이 법은 2011년 8월에 제정되어 조항에 따라 2012년, 2013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법 제22조로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미이용 아동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한다.

또한 제32조는 시설의 지역별 적절한 균형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명시하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 및 제9조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

애아동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였다.<sup>26)</sup> 이 조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 보육관계자 의견

장애아동 보육 지원사업에 대한 세 가지 세부과제의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의 성과 평가는 환경개선이 7점 척도로 4.22점, 보육교직원 자격강화 및 처우개선이 4.14점, 어린이집 이용 편이성 증가가 4.06점으로, 보통이라고 보는 경향이며, 구체적으로 사업별 차이가 근사하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장애아의 어린이집 이용 편이성 증가에서 공무원의 평가 한 현장전문가의 평가보다 높은 쪽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Ⅱ-3-7〉 장애아동 보육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del></del> 구분	장애아어린이집 환경 개선	교직원 자격강화 및 처우개선	장애아의 어린이집 이용 편이성 증가	(수)
전체	4.22	4.14	4.06	(107)
(표준편차)	(1.14)	(1.17)	(1.12)	
공무원	4.40	4.34	4.36 <sup>a</sup>	(47)
학계	4.05	3.95	4.05	(22)
현장전문가	4.11	4.00	$3.68^{b}$	(38)
F	1.07	1.25	$4.05^{*}$	. ,

주: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 3) 성과와 과제

장애아동 지원 관련법이 잇달아 제·개정됨에 따라 법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지원 노력을 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아 보육의 체계적 지

<sup>\*</sup> p < .05.

<sup>26)</sup>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 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등을 맡고 있음.

원시스템 마련하였다는 점은 계획에 의한 추진 성과라 하겠다.

앞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재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표 Ⅱ-3-8〉 어린이집 장애아동: 2008~2012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어린이집			보육아동	
7 正	전문	통합	일반	전문	통합	일반
2008	160	756	-	6,068	3,518	-
2009	168	806	4,107	6,206	3,469	5,404
2010	166	810	4,078	6,137	3,487	5,314
2011	169	815	3,656	6,152	3,513	4,740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사실 최근 수년간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011년 말 기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16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보육 장애아동은 6,152명이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전국에 815개소가 운영 중이고 장애아동 3,513명이 동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은 4,740명이다. 즉, 2011년말 기준으로 총 14,405명의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이 규모는 2009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지역적으로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여서 지역 별 균형 배치가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 1) 계획과 실적

맞벌이 부모를 위한 정책으로 보육지원 강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이 계획되었다.

# 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맞벌이 가구를 배려한 정책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소 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이외의 어린이집 입소순위 부여가 있다.

정부는 2010년에 보육사업 안내에서 입소순위 2순위로 규정된 취업모 자녀를

1순위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에 동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어서 취업모가 우선 배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7 이에 2011년에는 점수제도를 도입하여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하여 동일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입소 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취업모에게 더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28)

2012년 7월부터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그 동안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만 적용되어오던 것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이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도록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위반 시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7월에 지침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 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이외에 위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로도 근로를 확인하고 소득 입증도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서 중 1부로도 기능하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29)

이러한 조치는 2012년에 보육료 지원 확대로 가정양육이 가능한 영아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증가된 민원을 해소하고 맞벌이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종일제 기준

<sup>27)</sup> 입소 우선순위는 1순위는(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임. 2순위는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임.

<sup>28) 2</sup>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이 가능함.

<sup>29) 2012. 7. 3.</sup>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보육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시간연장 보육은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적용된다. 지원은 2010년부터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전부터 사용된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별도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건비지원 시설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아동 3명이상 보육 시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른하나는 2010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시간연장 근무수당은지원 형태이다. 이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약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였다. 30만원은 1일 2시간 근무(일 1만2천원 지원), 시간연장 1개반 기준을 나타낸다.

지원 보육교사 수는 2011년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은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어 만 0~4세는 소득하위 70%, 만 5세는 소득과무관하게 전액을 지원한다. 2012년 지원 규모는 53천명이며 예산은 339억원이다.

〈표 Ⅱ-3-9〉 시간연장형 보육 아동 및 지정 어린이집 현황: 2008~2011년

단위: 명, 개소, %

-		Ó	용 아동	수		지정 어린이집수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소계	보육이동 대비 비율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소계	어린이집 대비 비율
2011	39,313	461	900	49,110	3.64	7,844	238	268	8,350	21.0
2010	31,371	558	945	32,874	2.56	6,535	207	230	6,972	18.3
2009	22,848	503	520	23,871	2.03	4,666	166	138	4,970	14.0
2008	16,278	13	546	16,837	1.48	3,910	152	125	4,187	12.5

주: 이용아동은 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 이용아동도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1년 말 기준 시간연장 어린이집 수는 7,844개소이고 전체 어린이집의 21.0% 정도가 시간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총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 수는 39,313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3.64%에 지나지 않는다.

야간보육 이외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24시간 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24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방안 및 관리를 본격화하였는데, 2009년에는 138개소에서 520명, 2011년 말 기준 268개소에서 90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 다)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을 우선으로 하되, 방과후 보호·교육시설 이용이 곤란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대상 보육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제공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총정원의 20% 이내로 방과후 보육 정원을 제한하나 방과후 보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기존 방과후 보육 아동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방과후 전담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경우 영유아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희망시설은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현재 약 1,400여개 어린이집에서 약 15,000명의 아동이 보육 받고 있는데(표 II-3-10 참조), 2004년 이전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 보육교사 인건비 50%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을 방과후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였다.

부모 부담 보육료도 극빈층 등 저소득층은 계속 지원한다. 방과후에 어린이 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은 방과후 보육료 기준단가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유사 방과후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생애주기에 따른 영유아·청소년 보호 기능의 전문성 제고한다. 지역사회 내 방과후 시설 간 서비스 프로그램, 인력, 공간 공유 등 방과후 사업 연계·협력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2012년에는 10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선돌봄 이동 지원 등 방과후 돌봄 정책 논의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운영, 공동 수요조사, 중복·누락 방지를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프로그램 연계모델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용역 등의 추진을 하기로 하였다.30)

<sup>30)</sup> 복지부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한 국가, 지자체 비용 부담률 마련(안 제21조의6 및 별 표 제1의2 신설) 중임.

〈표 Ⅱ-3-10〉 방과후어린이집 현황: 2008~2011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어린여	이집 수	보육아동 수		
7 &	전담	일반	전담	일반	
2008	838	-	12,642	-	
2009	554	1,608	8,075	15,450	
2010	516	2,196	8.503	9,810	
2011	461	1,688	7,114	7,837	

주: 2008년 보육통계에는 일반어린이집 특수보육 현황이 미집계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라) 아이돌보미를 활용한 안전한 보호와 아동양육부담 경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자가 야근·출장·병원치료, 관혼상제 등 긴급한 상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0세(3개월 이상)~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으로 사업시행기관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신청을 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 22조, 25조 및 30조에 의해 2006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실시되었고 2012년 2월에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 여 별도의 법 체계를 갖추었다.

〈표 Ⅱ-3-11〉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구분	Ó	용요금(1시간명	<del>[</del> at)
유형	소득 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이용요금 80% 지원)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100%	5,000원	1,000원	4,000원
다형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상	전액 자부딤		· 제한 없음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을 차등지원하며, 당초 한 달 40시간(연 480시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야간·주말 생계활동이 증가함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6월부터는 연간 960시간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비용은 시간당 5천원, 주말·심야 시간대는 시간당 6천원으로

대상에 따른 세부 비용은 <표 Ⅱ-3-11>과 같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2007년 38개소, 2008년 65개소, 2009년 232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중앙건강가정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 운영매뉴얼·교육커리큘럼 개발보급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사업시행기관을 연결·이용자의 접근도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와 관련 DB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2011년 사업결과를 살펴보면(한국건강가정진홍원, 2011) 4,729명 아이돌보미를 신규양성하여 총 53,837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1,959,179건 제공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7.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가정의 54.4%가 가형이고, 전액 자부담 가정인 다형 가정(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 상)도 전체의 23.1%, 나형 가구도 22.5%를 차지하였다. 이용 사유는 직장근무가 71.4%, 자녀의 양육부담 17.7%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만 2세 이하 영 아가 44.5%로 가장 많았으며 만 3-5세가 33.7%, 만 6-12세가 15.8%로 나타나 영 아를 가진 가정이 아이돌보미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마) 영아보육 지원

일찍이 영아보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아전담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였다.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도 원장 및 교사인건비 80%, 취사부 인건비 100%가 지원되고 농어촌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차량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677개의 어린이집에서 24,748명의 영아가 보육되었고, 2011년 말 기준 638개의 어린이집에서 29,663명의 영아가 보육되고 있다. 이 중 민간개인어린이집이 283개소에 9,866명, 가정어린이집이 54개소에서 1,027명을 보육한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만 3세가 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등 보육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부모의 접근성 및 적재적소 배치 등에 한계가 있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2005년부터 추가 지정사업을 중단하고 대신에 2006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영아 기본보육료는 영아 1인에 대한 연령별 기준 단가<sup>31</sup>)를 적용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함으로써 영아 보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민 간어린이집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였다.

<sup>31) 0</sup>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 115천원임.

### 2) 보육관계자 의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세부과제의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의 성과 평가는 영아보육지원 확대를 통한 영아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이 7점 척도 기준 4.75점으로 높고, 다음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으로 4.38점이고 다음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4.24점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강화는 4.16점으로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다.

응답자 차이는 공무원, 학계, 현장전문가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활용 성과에 대해서만 공무원의 평가가 현장전문가 평가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Ⅱ-3-12〉 맞벌이 부모 지원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보미 활용	영아보육 지원 확대	(수)
전체 (표준편차)	4.16 (1.25)	4.38 (1.27)	4.24 (1.25)	4.75 (1.42)	(107)
공무원	4.28	4.62	$4.55^{a}$	4.91	(47)
학계	4.14	4.41	4.18	4.82	(22)
현장전문가	4.03	4.08	$3.89^{b}$	4.50	(38)
F	0.426	1.926	3.062#	0.937	

주: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3) 성과와 과제

맞벌이 부모를 위한 정책으로 보육지원 강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계획되었다.

맞벌이 부모 지원 정책인 입소우선순위 정책은 실효성이 미약하다. 정원이다 차지 않아서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작동할 여지가 있고 정원이 모두 차 있으면 도리가 없다. 우선순위도 여러 항목과 동 순위이다. 보육정책이 노동정책과 괴리되어 있음이다.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은 이제 의미가 퇴색되었음에도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개인·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영아 기본보육료를 포함한 영아보육비용도 과다한 측면이 있는데, 인건비 80% 지원은 기본보육료보다 훨씬 높은 지원 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결과임.

p < .15.

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수준 등 지원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보육비용 수준인  $0\sim2$ 세 보육료에는 보육교사 임금 월 152만원이 반영되어 있다.32)

시간연장형 보육은 소수인 시설에 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시간연장을 지원하는 단시간 연장보육 지원은 단기적으로 교사 처우 개선 면에서 탄력성이 높은 정책이지만 교사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선책이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첫째, 지역별로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중장기적으로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접근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나 늦게까지 남아 있는 극소수 아동의 정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밤에 교사 1인에 아동 1~2명이 남는 시간연장형 보육은 아동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보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시간연장형 보육은 매월 60시간의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는데, 원장의 보고 이외의 점검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시간연장보육 대상이 취업모 등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인가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는다.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하더라도 향후에는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시간연장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2012년 조사(서문희·양미선, 2012)에 의하면 2011년 8~10월 정부에서 지원받은 야간연장 보육시간은 평균 35.6시간으로 부모가 응답한 월 28.4시간보다 7.2 시간이 더 많다. 급액으로는 시간당 2,700원이므로 약 2만원에 해당된다. 보육료지원 여부별로는 보육료 지원 아동이 28.4시간으로 미지원 아동 24.7시간보다 3.7시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가정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이 각각 평균 27.3시간, 29.3시간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평균 22~23시간보다 4.3~7.3시간 길었다.

어린이집에서의 초등 방과후 보육은 그 규모가 소수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부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방과후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이므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필요하다.

<sup>32) 2012. 3. 22.</sup>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 라. 가정 내 자녀양육서비스 지원

## 1) 계획과 실적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역 내 보육정보와 육아지식 등을 제공하고, 상담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시·도 중심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주민 밀착형 이용시설인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시·군·구 간의 재정적 격차로 인한 서비스 제공에격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아이사랑 플랜에서는 개방형 이용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육아정보 제공,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놀이공간 제공,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모델 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에 확산한다는 계획이었다.

계획대로 충분하게 추진되지는 않았으나, 2011년에 처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였다. 2011년에 3개소, 2012년에 3개소 설치를 지원하였다<sup>33</sup>).

## 2) 보육관계자 의견

가정 내 양육지원 사업 세부과제의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의 성과 평가는 가정 내 양육지원 확대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이 7점 척도로 3.96점, 실수요자(다자녀, 장애아 등)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 제공은 4.04점으로 나타났다(표 Ⅱ-3-13 참조).

〈표 Ⅱ-3-13〉 가정 내 양육지원 강화 과제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가정 내 자녀양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	실수요자(다자녀, 장애아 등)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 제공	(수)
전체(표준편차)	3.96(1.35)	4.04(1.11)	(107)
공무원	3.85	4.28	(47)
학계	3.95	3.91	(22)
현장전문가	4.11	3.82	(38)
F	0.37	2.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결과임.

<sup>33) 2011</sup>년도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2012년도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기도 용인시, 전라북도 익산시 각 3개소씩을 국고로 지원하였음.

# 3) 성과와 과제

2011년 말 기준 보육정보센터는 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를 비롯하여 16개시·도에 지방보육정보센터 17개소, 시·군·구에 45개소가 설치되어 총 62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강원, 충남, 경북 각 1개소, 경남에 2개소 뿐이다.

가정 내 자녀양육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정보센터 사업에 있어 시·군·구 간 지역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시·도 보육정보센터를 제외한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지역 간 격차가 불가피한 구조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육아지원센터는 정부가 2010년부터 설치비로 개소당 10억을 지원하는데 이 비용은 설치비로 충분하지 않고 지원 대상도 소수에 불과히다. 또한 설치비 이외에 운영비도 부담이 된다. 현재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있거나 아동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지역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경향인데, 재정적 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배려해야 한다.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접근하여 가능하면 여러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차별성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목적은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 설치이며, 보육정보센터의 사업목적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역할과 기능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간 차별화가 필요하다. 4의 보육정보센터가 명칭에 걸맞는 충분한 정보를 재공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지방정부가 매년 주로 프로그램별로 지원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어서 차기연도 사업 사행이 불투명하다. 운영에서도 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sup>34)</sup>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육아지원센터)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일부 시·도에서는 보육정보 센터가 육아지원센터 역할도 부분적으로 수행함.

# 4.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

# 가. 어린이집 안전 개선

### 1) 계획과 실적

어린이집 안전 개선 과제로는 어린이집 환경기준 개선, 어린이집 영양·건강· 안전관련 프로그램 연계 및 교육 강화,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 가) 어린이집 환경 기준 개선

어린이집 환경기준 개선 세부과제는 화재 피난설비 세부 설치기준 마련, 위험시설 입지 제한 및 안전거리 규정 개선, 놀이터 면적, 입지조건, 놀이시설물 배치기준 합리화, 보육여건 변화를 고려한 설비 기준 개선 검토, 어린이집을 자가시설로 한정한다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9년 7월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설치기준을 변경하였다. 놀이터 면적, 입지조건, 놀이시설물 배치 기준 합리화에 의거하여 놀이터 면적을 동 시간대 실외놀이에 참여하는 최대 아동수로 기준을 변경하였고, 옥내놀이터의 옥상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설비의 종류, 구조, 단 높이, 경사조 등을 규정하는 설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소방설비 안전 확인제도도 예정대로 도입하였다.

둘째,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또한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예기간이 2010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방안마련이 필요하여 2009년 7월에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놀이터 설치 의무및 지하층 및 4층 이상 공간을 보육실로 사용 금지,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35)에 따라 기존 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

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Ⅱ-4-1〉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구분	내용	개정일
영유아보육법	- 놀이터 설치기준 규정 신설. 보육정원 50인 미만 시설 제외, 2005년 1월 29일 이전 인가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놀이터 기준 적용배제하거나 완화하여 변경인가 가능	'11.06.07
영유아보육법	- '09.7.3 이전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대비에 이상이 없는 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종 전 기준 적용 가능함을 신설	'11.12.3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ul> <li>어린이집의 설치기준(별표1) 변경</li> <li>・놀이터 면적을 총정원×2.5㎡에서 동일 시간대 놀이터 이용 아동수×3.5㎡로 변경</li> <li>・옥내놀이터를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 불가에서 옥상에 설치 가능으로 변경</li> <li>・비상 재해 대피 시설 종류를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에서 비상계단, 대피용 미끄럼대, 스프링클러,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1층 양방향출구 설치 의무화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강화)로 변경</li> </ul>	'09.07.03

또한 어린이집을 자가 시설로 한정하고 보육시설=건물+대지로 개념을 전환한다는 계획도 완전하게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시설에 사용되는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전세권 등 부채비율 50% 이상 시 부채상환 이행계획서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2년에는 기자본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법안을 추진하였다.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하여 2013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하였다.36)

<sup>35)</sup> 법률 제10989호, 2011년 8월 4일자 개정임.

<sup>36)</sup> 부채비율은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금액/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 \* 100임. 2012. 8. 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표 II-4-2〉 인가 요건 강화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구분	내용	개정일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강화	- 어린이집 시설에 사용되는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 권·전세권 등 부채비율 50% 이상 시 부채상환 이 행계획서 제출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	-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 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아 니됨.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식당 교사실, 수유실, 세탁실, 상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을 필수 지원시설로의 규정은 추진하지 못하였다.

# 나)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 관련 프로그램 연계 및 교육 강화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관련 프로그램 연계 및 교육 강화 사업 실적은 다음 과 같다.

2008년 9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원장이 전세버스 운 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9년에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 관리방안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매뉴얼' 및 '응급처치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였다. 어린이집의 급식실태 전수조사 및 하절기 급식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한 식중독 사고, 전염병 예방활동에 주력하였다.

2010년에 어린이집 급식 관리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운영 관리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였다. 건강 부분에서는 2011년 12월에 2010년 신종감염병인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고위험군)를 위한 감염병 예방과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어린이집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지침',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을 개발·배포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의 발생보고체계 유지·관리, 지자체와 복지부 현장점검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2011년에 영유아보육법에도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여부, 급식관련 운영기준 반영을 신설하였다.

〈표 II-4-3〉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관련 매뉴얼 발간 내역

연도	매뉴얼 명	비고
2008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보육시설 응급처치 매뉴얼	
2009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 매뉴얼	
2010	보육시설 급식운영 관리 매뉴얼	
2011	어린이집 건강 관리 매뉴얼	

〈표 II-4-4〉 영양·건강·안전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구분	내용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여 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모로부터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함을 신설	′11.08.0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퇴원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를 "등퇴원 차량운영 시 운전 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로 변경 - 급식관련 운영기준 반영을 신설. 유통기한 준수, 위생관리, 영양사 작성 식단 등	'12.02.03	

2010년 2주기 평가인증 지표에 어린이집 환경(실내공기 질 등) 관리 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을 통한 공제사업 실시 및 안전사고 유형·원 인별 현황 분석, 공제 사업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 다)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노후되고 협소한 어린이집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를 지원하였다. 예산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7,880백만원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증개축, 개보수 등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재정여건 이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의 비상계단·대피용 미끄럼대·스프링클러와 같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비, 놀이터 및 놀이기구 설치비,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와 같은 공기 질 개선 공사비 등 노후시설 수리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의 공공자금관

리기금 매년 300억을 확보하여 저리 융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 수준은 개소 당 1~2천만원으로 융자대상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약 2,000개소이다.

2012년에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액수는 150억원으로 감축하였으나 신축비,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시설 이전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표 Ⅱ-4-5〉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2009~2012년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국고 예산 2008 44 368 257 8,505 49 2009 334 217 7,657 2010 20 302 245 5,767 2011 45 351 404 7,901 2012 45 351 404 7,880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2) 보육관계자 의견

어린이집 안전 개선 과제에 대한 보육관계자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특히 어린이집 영양·안전·건강관리 강화와 관련된 교직원 교육 강화는 5점 이 상이다. 이에 비하여 환경 개선에 대한 성과 평가는 4.5점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다.

〈표 II-4-6〉 어린이집 안전 개선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환경기준 재정비	영양·안전·건강 관리 강화	영양·안전·건강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강화	열악한 환경개선	(수)
전체(표준편차)	4.52(1.09)	5.05(1.11)	5.01(1.21)	4.46(1.17)	(107)
공무원	4.49	5.09	4.77 <sup>a</sup>	4.32	(47)
학계	4.64	4.91	4.82	4.55	(22)
현장전문가	4.50	5.08	5.42 <sup>b</sup>	4.58	(38)
F	0.147	0.210	$3.598^{*}$	0.593	

주: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결과임.

<sup>\*</sup> p < .05.

어린이집 영양·안전·건강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강화에서만 공무원과 학계의 의견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앞서 대부분의 항목에서와 달리 현장전문가의 평가가 공무원 평가보다 긍정적이다.

### 3) 성과와 과제

그간 어린이집 안전의 개선 과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영양·건강·안전 관련 프로그램 연계 및 교육부분은 2009년 이후 각종 매뉴얼을 개발하여 어린 이집의 안전 수준을 높이려고 한 성과는 돋보인다.

어린이집의 환경 기준의 개선 측면에는 부분적으로 놀이터의 기준이나 적용 완화 등 합리화를 추진한 부분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안전을 강화한다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에 중 요하고 근본적 과제인 어린이집을 자가 시설로 한정하고 보육시설=건물+대지로 개념을 전환한다는 계획은 점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 시설 은 식당 교사실, 수유실, 세탁실, 상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을 필수 지원시설 로의 규정은 추진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어린이집 안전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어린이집을 자가 시설로 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식당 교사실, 수유실, 세탁실, 상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을 필수 지원시설 하는 방안도 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에 필수적 요 인이 될 것이다.

### 나.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1) 계획 및 실적

가)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가과정 제도화

정부는 2006년 11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여 2007년에 고시하였고<sup>37</sup> 2010년에 평가인증 지표 중 보육과정 관련 세부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표준보육과정 활용에 대한 상담, 교사 및 원장 교육 등을 실시하여 표준보육과정의 활용도 제고하고자 하였다.

<sup>37)</sup>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6세 미만의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와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또한 2010년에 사회적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 개정방안 연구(2010. 6~2011. 1)를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5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표준보육과정과 5세 누리과정의 연계를 위하여 2차 표준보육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수정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12년 2월에 0~4세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개정안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령집단 및 연령집단별 수준 구분 체제는 유지하나 만 2세 미만 연령집단의 수준별 내용을 4수준으로 세분화하여 발달상의 차이를 반영하였으며, 보육관련 주요 용어를 통일하여 법률적 명확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초등교육과정과의 용어를 통일하여 연계성을 강화하고,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구성 체계와 서술방법을 일부 개정하고 내용을 보강하며, 해설서를 상세히 기술하여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서문희·김진경·유해미·조혜주·김명순·서영숙 외, 2011).

2012년에는 5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표준보육과정과 5세 누리과정의 연계를 위하여 다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수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7년에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한 연령별(0~5세) 보육프로그램 및 영상교재도 개정하여,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영아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계획이다.38)

#### 나) 특기활동에 대한 기준 마련

2011년 3월 14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일선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에 광범위하게 운영되어 오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발 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활동'을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보육교사가 교재교구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현장방문학습에 드는 비용을 특별활동 비용 명목으로 수납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영유아의 특별활동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은 부모가 서면으로 명시적인 동의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 특별활동을 실시

<sup>38)</sup> 보육프로그램은 영유아들의 발달 연령에 기초하되, 보육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에 따라 하루일과를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교재는 보육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하루일과 운영방식과 보육교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자료를 시청 각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누리과정 및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지원함.

셋째, 오전 일과 시간동안에는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활동 프 로그램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다.

넷째,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운영을 금지하되,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2011년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부터 금지하고, 12~24개월 미만의 영아는 2012년 3월부터 금지한다.

다섯째, 개별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이 아닌 매월 특별활동에 드는 총 비용을 정하여 부모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특별활동 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 거하여 기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시·도 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에서 정하여 부모로부터 수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어린이집의 성실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별활동 관련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시 가·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표준 보육과정 운영 원칙,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및 위반 시 제재(과태료 등) 등을 영유아보육법에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 보육관계자 의견

어린이집 보육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 보육관계자들의 평가는 특별활동을 제외하고는 7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이다.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개발이 4.77점이고 프로그램 평가방안 마련과 비용부담 적은 프로그램 보급방안 마련을 통한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가 각각 4.46점, 4.21점이다. 이에 비하여 특별활동에 관한 표준기준 마련을 통한 적절한 특별활동에 대한 평가는 3.8점으로 낮은 수준이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특별활동 표준기준 마련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공무원과 현장전문가의 평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항목 역시 공무원의 평가가 7점 만점에서 4.17점으로 현장전문가 3.45점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표  $\Pi$ -4-7 참조).

〈표 Ⅱ-4-7〉 보육내용 질 제고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연령별 <u>보육프로그</u> 램 개발	비용부담 적은 프로그램 보급방안 마련	체계적인 평가방안 마련	특별활동 표준기준 마련	(수)
전체 (표준편차)	4.77 (1.15)	4.21 (1.14)	4.46 (1.16)	3.80 (1.19)	(107)
공무원 ′	4.70	4.13	4.47	4.17 <sup>a</sup>	(47)
학계	4.68	4.18	4.82	3.64	(22)
현장전문가	4.89	4.34	4.24	$3.45^{b}$	(38)
F	0.368	0.378	1.780	4.458*	

주: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3) 성과와 과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평가과정 제도화, 특별활동 기준 마련 등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은 임의 사항으로 어린이집의 선택에 의했는데 어린이집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교사 교육 등 보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직원 교육을 강화한 성과로 표준보육과정이 활성화되어 모든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육의 내용이 질적인 면에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2년부터 추진되는 누리과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개선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2013년 3~5세 유아 전체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누리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 평가하여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도 새로운 정부의 과제가 된다.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에 대해서도 2011년에 정부가 기준을 제시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지키고 있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정부의 지침이 잘 지켜져서 정책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sup>\*</sup> p < .05.

### 다. 평가인증 활성화

### 1) 계획과 실적

우리나라는 민간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국공립 및 법인 등 정 부지원기관은 회계 관리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었 다. 이에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함과 아울러 어린 이집의 자발적인 보육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부모에게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4 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005년에 평가인증을 시범 실시 하여 650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2006년부터 정식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였다.

아이사랑 플랜 목표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부담 완화, 인증 참여 유 지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평가인증 지표 개편 및 운영체계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9년에 자체점검 기간은 1개월 단축하고 20인 이하에 적용하던 소규모어린이집 평가지표를 39인 이하 어린이 집으로 적용하였다.

둘째,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차등화 정책으로 2011년부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한하여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고 보육 실습기관을 인증 어린이집으 로 제한하였으며 2011년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평가인증 공개를 제도화하 여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인증과정에 참여한 교사 에게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한다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았다.

셋째, 2010년부터는 평가인증 제2차 시행주기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2009년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를 통하여 제2차 시행주기 평가인증을 위한 지표와 운영체 계를 마련하였다(서문희·김온기·김명순·서영숙·이완정·서소정 외, 2009). 참여대상 을 확대하여 신규인가 1년 미만 시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미인증시설 의 평가인증 참여를 위하여 2005~2006년 평가인증시설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 고, 지표는 수를 축소하고 달성도 높은 항목을 통합하고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 한 항목을 신설하였다.

운영체계도 신청과 동시에 자체점검에 들어가도록 하여 평가인증 기간을 단

축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여 설치기준,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기본 사항을 확인토록 하고 현장관찰과 심의위원의 점수 배분을 조정하였으며, 기준 점수도 73.3점에서 75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표 II-4-8〉 평가인증 지표

	*1 A1 +1 A1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11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3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5항목) 다. 보육지원 환경(3항목)			
영역 2. 운영관리(12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3항목) 나. 보육인력(3항목) 다. 가족과의 협력(4항목) 라. 지역사회와 협조(2항목)			
영역 3. 보육과정(14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7항목) 나. 보육활동(7항목)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11항목)	가. 일상적 양육(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6항목) 다. 교수법(2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12항목)	가. 청결과 위생(8항목) 나. 질병관리(2항목) 다. 급식과 간식(2항목)			
영역 6.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5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5항목)			

주: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6개 영역 70항목)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육시설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보육시설). 보건복지부.

구 분	반영 비율
자체점검보고서	25%
현장관찰보고서	50%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총 계	100%

	구 분	반영 비율
$\Rightarrow$	자체점검보고서	10%(15%p↓)
	기본사항확인서(신설)	10%(신설)
	현장관찰보고서	55%(5%p↑)
	심의위원회 의견서	25%(유지)
	총 계	100%

[그림 II-4-1] 평가인증 심의자료 반영비율의 변화

주: 한국보육진흥원(2010). 2010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참고하여 구성함.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였다. 각 지역 조력 인프라를 통해 인증시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소 재지 변경, 정원 증·감에 따른 시설환경 변화 시에는 이를 확인, 인증을 유지하 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012년에는 제3주기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가 추진되었다(이미화·서문희·최윤 경·엄지원, 2012). 향후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등 사후관리 강

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인증 관련 변화는 영유아보육법에도 반영되어서 2011년에는 평가인증 공

개 및 취소사유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2년에는 평가인증 취소사유, 평가인증 유효기간 등을 신설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표 Ⅱ-4-9 참조).

	2.6	. 2 - 2 - 2
구분	내용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ul><li>평가인증 수수료 수납근거 및 동 수수료를 위탁기관에서 평가인증관련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게 근거 마련</li></ul>	'11.06.07
영유아보육법	- 평가인증 결과 공개·취소 근거 마련	<b>'</b> 11.08.0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ul> <li>평가인증 취소사유 신설</li> <li>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을 폐 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평가지표 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li>평가인증 유효기간 신설.</li> <li>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 경되기 전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 장할 수 있도록 함.</li> </ul>	<b>'12.02.03</b>

〈표 Ⅱ-4-9〉 평가인증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 2) 보육관계자 의견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3개 세부사업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들의 평가는 4.3~4.5점이다. 3개 세부사업별 점수는 평가인증 활성화, 지표개편 및 운영체계 개선, 인센티브 제공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데, 모두 보통 이상이다.

응답자별 특성에 따라서는 인증참여·유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한 평가인증 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학계가 4.73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한 반면, 현장전문가의 평가는 4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었다. 평가인증 활성화와 지표개편 및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Ⅱ-4-10〉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평가인증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지표개편 및 운영체계 개선	(수)
전체(표준편차)	4.50(1.29)	4.38(1.34)	4.44(1.22)	(107)
공무원	4.28	4.62	4.43	(47)
학계	4.73	4.73 <sup>a</sup>	4.64	(22)
현장전문가	4.66	$3.89^{b}$	4.34	(38)
F	1.336	4.183 <sup>*</sup>	0.404	

주: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 3) 성과와 과제

2011년 말 기준으로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은 3만여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수의 80%가 넘기에 이르렀다. 1차 시행으로 보육환경을 비롯하여 보육과정,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있어 그 수준이 향상되고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보육현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차 시행도 성공적으로 마쳐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평가인증 유지율은 64% 수준이어서(표 Ⅱ-4-11, 표 Ⅱ-4-12 참조), 이제 또 다른 제도적 도약모색이 요구된다.

〈표 Ⅱ-4-11〉 연도별 평가인증 통과 및 유지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연도	통과	통과 누계	유지 누계
2005	622		
2006	438	1,060	1,060
2007	3,482	4,542	4,500
2008	5,382	9,924	9,683
2009	7,555	17,479	16,686
2010	5,887	23,366	21,154
2011	6,516	29,882	24,856
2012	2,555	32,437	26,513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

<sup>\*</sup> p < .05.

〈표 Ⅱ-4-12〉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통과 및 유지 어린이집: 2012. 6월

단위: 개소, %

							,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41,349	2,166	1,449	489	21,949	104	15,192
통과	32,437	2,017	1,503	289	16,348	38	12,242
유지	26,513	2,046	1,326	288	12,955	39	9,859
통과 비율	78.4	93.1	103.7	59.1	74.5	36.5	80.6
유지 비율	64.1	94.5	91.5	58.9	59.0	37.5	64.9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

아울러 시설유형별 격차가 크다. 특히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통과비율에 비하여 유지비율이 거의 15%p나 낮다. 지역별로도 경기, 충남, 경남, 울산 등은 유지율이 60% 미만인 시·도이다(표 Ⅱ-4-13 참조).

〈표 II-4-13〉 시·도별 평가인증 통과 및 유지 어린이집: 2012. 6월

단위: 개소, %

<del></del> 구분	어린이집 수	평가인증 통과	평가인증 유지	통과 비율	유지 비율
전체	41,349	32,437	26,513	78.4	64.1
서울	6,364	5,179	4,678	81.4	73.5
부산	1,774	1,589	1,209	89.6	68.2
대구	1,576	1,395	1,053	88.5	66.8
인천	2,049	1,848	1,361	90.2	66.4
광주	1,227	1,237	840	100.8	68.5
대전	1,627	1,337	1,082	82.2	66.5
울산	864	648	513	75.0	59.4
경기	12,433	8,611	7,109	69.3	57.2
강원	1,200	1,002	842	83.5	70.2
충북	1,143	939	<i>7</i> 76	82.2	67.9
충남	1,980	1,328	1,078	67.1	54.4
전북	1,591	1,517	1,124	95.3	70.6
전남	1,183	1,002	796	84.7	67.3
경북	2,245	1,791	1,540	79.8	68.6
경남	3,521	2,519	2,066	71.5	58.7
제주	572	495	446	86.5	78.0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

평가인증 결과는 부분적으로 지원과 연계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아직 활용 부분이 미약하고 부모의 인지도나 활용도도

낮다.

구체적 정책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의무평가제, 관련 정보 공개와 결과 활용 및 재정 지원과의 연계이다.

현재 인증 결과는 인증통과 어린이집 명단만 공개하는데, 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일반적 인지 정도는 비교적 높으나, 어린이집 선택 시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비율도 낮으며,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평가인증 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여 공개하거나또는 항목별 원점수를 그대로 공개함으로서 부모들이 평가인증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찰평가자의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다.

또한 보육료 지원 등 재정지원과의 연계이다. 2011년부터 교재교구비 지원과 평가인증을 연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점차 소규모 어린 이집 운영비 지원과의 연계로부터 기본보육료나 차등보육료와 연계하는 등 재 정지원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 가제로의 전화도 적극 검토함 필요가 있다.

#### 라. 어린이집 균형 배치

#### 1) 계획과 실적

#### 가) 보육수요 추계 및 이용

전국 단위의 보육수요는 2004년에 이어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아동 연 령과 지역규모별로 추계되었다.

2009년에 추계된 보육수요는 영아 44.1%, 유아 44.3%로 영유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유아는 읍면에서 도시에 비하여 10%p 이상 높았다(표 Ⅱ-4-14 참조). 2011년 말 현재 보육통계로 산출한 서비스 이용률이 영아 54%, 유아 42%이다. 2009년 추계에비하여 영아보육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세아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늘어났다.

추정한 보육수요율은 각 지방정부에서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는 자료로 일 부 오용되기도 하였다.<sup>39</sup>)

<표 Ⅱ-4-15>, <표 Ⅱ-4-16>은 2011년 보육통계로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과 현 원 및 정원 대비 현원 비율과 시·도 단위로 어린이집 전체와 공급률 및 이용률 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Ⅱ-4-14〉 지역 및 연령별 중기 추가 보육수요 추계

단위: %

구분	2004년	2009년	구분	2004년	2009년
영아			유아		
대도시	30.2	41.0	대도시	42.2	40.3
중소도시	31.5	46.0	중소도시	43.9	44.6
읍·면	42.5	45.6	읍·면	63.8	54.0
전체	32.6	44.1	전체	46.8	44.3
0세아			3세아		
대도시	12.8	22.5	대도시	63.9	53.0
중소도시	8.1	25.5	중소도시	63.1	57.8
읍·면	3.6	17.6	읍·면	78.6	65.5
1세아			4세아		
대도시	23.6	41.5	대도시	42.5	39.9
중소도시	24.5	44.8	중소도시	49.3	43.9
읍·면	36.7	45.3	읍·면	67.8	55.5
2세아			5세아		
대도시	52.8	58.9	대도시	27.6	29.5
중소도시	58.9	67.8	중소도시	27.3	33.5
읍·면	78.0	73.7	읍·면	51.2	42.5

주: 영아 전체 지역별 추가 이용희망률 이용시 추계치와 오차가 있음.

2004년 추계 아동수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9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 계의 각세별 지역별 인구분포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 센터.

〈표 Ⅱ-4-15〉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1년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정원	1,621,948	157,478	141,966	61,708	862,104	2,726	363,430	32,536
현원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2,286	308,410	24,987
(비율)	(83.2)	(90.8)	(79.4)	(82.1)	(82.0)	(83.9)	(84.9)	(76.8)
2010년	(82.2)	(89.5)	(79.3)	(81.5)	(81.1)	(85.3)	(83.3)	(77.3)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sup>39)</sup> 서문희·도남희·송신영(2011).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 페이퍼 2011-05.

< 표 Ⅱ-4-15>과 <표 Ⅱ-4-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설유형 및 지역 간의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전체 공급률은 58.4%이고 이용률은 48.6%로 정원충족률은 83% 수준인데, 시설유형별로 보면 직장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80% 미만으로 가장 낮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의 공급률과 이용률이 각각 87.8%, 73.3%로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인다. 서울은 공급률과 이용률이 모두 50% 미만으로 가장 낮다. 그러나 공급 대비 이용 비율은 서울이 88.3%로 가장 높고, 전북, 경북과 경남이 정원충족률이 80% 미만으로 가장 낮다.

〈표 Ⅱ-4-16〉 시·도 단위 어린이집 정원 비율 평균: 2011년

단위: 명. %

						단위. 명, %
 구분	영유아인구수	보육정원	보육현원	공급률	이용률	정원충족률(
1 12	(A)	(B)	(C)	(B/A)	(C/A)	C/B)
전체	2,777,209	1,621,948	1,348,729	58.4	48.6	83.2
서울	502,766	243,440	214,863	48.4	42.7	88.3
부산	156,472	80,583	68,050	51.5	43.5	84.4
대구	124,198	<i>77,</i> 218	63,118	62.2	50.8	81.7
인천	158,758	82,245	71,381	51.8	45.0	86.8
광주	87,003	60,943	49,983	70.0	57.4	82.0
대전	89,215	52,812	44,573	59.2	50.0	84.4
울산	67,754	35,621	29,976	52.6	44.2	84.2
경기	748,040	409,956	344,326	54.8	46.0	84.0
강원	75,635	53,498	42,996	70.7	56.8	80.4
충북	87,291	59,175	48,251	67.8	55.3	81.5
충남	123,274	78,245	63,236	63.5	51.3	80.8
전북	97,233	72,700	57,114	74.8	58.7	78.6
전남	96,196	66,655	53,988	69.3	56.1	81.0
경북	136,529	93,839	72,261	68.7	52.9	77.0
경남	192,054	124,478	99,100	64.8	51.6	79.6
제주	34,791	30,540	25,513	87.8	73.3	83.5
2010	2,734,976	1,556,808	1,279,910	56.9	46.8	82.2
2009	2,736,539	1,482,416	1,175,049	54.2	42.9	79.3

주: 보육정워 및 보육현원 중에는 초등학생이 일부 포함됨.

자료: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Ⅱ-4-17>은 2011년 보육통계의 일부로 시·군·구 단위로 어린이집 전체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평균 및 최대, 최소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 간의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간 차이는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공급률은 33.1%~100%, 이용률은 28.9%~78%에 분포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급률은 0.2%~40.9%, 이용률은 0.2%~37.1% 사이에 분포한다.

〈표 II-4-17〉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단위: %

										271. /6		
구분	보	육 공급	률	보	육 이용	률	국	공립 공	급률	국공	급립 이	용률
1 &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63.6	33.1	100.0	52.0	28.9	78.0	6.9	0.2	40.9	6.1	0.2	37.1
서울	50.6	33.1	77.3	44.5	29.0	65.7	12.4	5.1	30.9	11.5	4.8	27.3
부산	54.4	38.3	68.2	45.7	34.6	58.4	9.3	2.8	22.5	8.4	2.4	21.8
대구	65.0	54.1	95.5	53.0	44.9	75.3	2.4	0.8	5.2	2.1	0.7	4.5
인천	50.2	34.1	59.2	43.3	28.9	52.0	8.2	2.2	21.0	7.1	2.1	18.6
광주	68.6	58.0	78.0	55.3	48.0	63.5	3.3	1.7	5.5	2.6	1.3	4.1
대전	59.7	54.0	65.7	50.6	46.0	55.4	2.1	0.2	4.9	2.0	0.2	4.5
울산	52.6	47.9	57.8	44.3	42.0	47.6	3.1	1.4	4.1	3.0	1.3	4.0
경기	59.7	39.7	87.9	49.7	37.0	66.8	6.3	1.4	16.7	5.8	1.3	15.4
강원	65.9	45.6	89.1	53.6	37.0	66.4	11.8	2.6	40.9	10.3	2.0	37.1
충북	68.4	53.2	95.0	54.8	42.3	65.4	8.3	0.8	24.1	7.3	0.8	21.6
충남	67.9	50.7	98.8	54.6	43.7	71.5	5.2	0.9	11.1	4.4	0.8	9.5
전북	68.8	38.1	98.4	54.3	31.6	77.1	6.2	1.3	15.7	5.4	1.0	14.4
전남	67.3	45.7	97.0	51.9	35.6	74.7	6.3	0.9	16.4	5.1	0.9	12.9
경북	62.8	36.3	81.4	49.1	30.2	62.6	11.9	1.5	31.5	9.9	1.3	24.6
경남	63.7	39.0	87.2	51.6	34.3	66.4	8.1	1.6	26.4	7.1	1.3	23.8
제주	92.0	84.0	100.0	<i>7</i> 5.0	71.9	78.0	5.7	2.8	8.6	5.4	2.7	8.0
2010	62.7	31.6	98.5	50.5	11.6	78.1	7.0	0.0	59.1	5.8	0.0	36.6
2009	58.5	24.6	96.8	45.6	22.0	75.8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이사랑 플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지역의 보육수요 충족으로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사업 예산 규모는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는 신축 10개소, 리모델링 19개소이고, 2012년에는 신축 10개소, 리모델링 19개소 등의계획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결과로 2009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38개소,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42개소 등 91개소의 어린이집이 새롭게 설치되었고, 2010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0개소,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

집 전환 19개소 등 117개소의 어린이집을 설치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23개소,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22개소 등 45개소의 시설이 추가되었다40). 신축 외에도 민간어린이집 매입, 학교 내 유휴교실 및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하였다.

〈표 Ⅱ-4-18〉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 현황: 2005~2012년

단위: 백만원, 개소
-------------

구년	į.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공립	예산	38,280	19,800	20,216	9,910	7,532	1,982	1,982	1,982
신축	개소수	400	110	112	50	38	10	10	10
리모델링	예산	-	-	4,925	950	1,050	475	475	475
1. 2.0	개소수	-	-	237	38	42	19	19	19
장애아	예산	3,445	2,599	2,166	713	476	238	238	476
전담 신축	개소수	30	12	10	3	2	1	1	2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Ⅱ-4-19〉 유형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아동 수: 2009~2011년

단위: 개소, 명(%)

									_ /1. /11	_, 0(/0/	
	그님	-all	7.72	нJVJ		민간보육	-	부모	 가정	 직장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소계	법인외	개인	협동	보육	~~~~ ————	
	어린이집수	39,842	2,116	1,462	15,004	870	14,134	89	20,722	449	
	(%)	(100.0)	(5.3)	(3.7)	(37.7)	(2.2)	(35.5)	(0.2)	(52.0)	(1.1)	
2011	아동수 (%)	1,348,729 (100.0)	143,035 (10.6)	112,688 (8.4)	757,323 (56.2)	50,676 (3.8)	706,647 (52.4)	2,286 (0.2)	308,410 (22.9)	24,987 (1.9)	
2010	어린이집수	38,021	2,034	1,468	14,677	888	13,789	74	19,367	401	
	(%)	(100.0)	(5.3)	(3.9)	(38.6)	(2.3)	(36.3)	(0.2)	(50.9)	(1.1)	
2010	아동수	1,279,910	137,604	114,054	723,017	51,126	671,891	1,898	281,436	21,901	
	(%)	(100.0)	(10.8)	(8.9)	(56.5)	(4.0)	(52.5)	(0.1)	(22.0)	(1.7)	
2009	어린이집수	35,550	1,917	1,470	14,368	935	13,433	66	17,359	370	
	(%)	(100.0)	(5.4)	(4.1)	(40.4)	(2.6)	(37.8)	(0.2)	(43.8)	(1.0)	
2009	아동수	1,175,049	129,656	112,338	675,714	52,718	622,996	1,655	236,892	18,794	
	(%)	(100.0)	(11.0)	(9.6)	(57.5)	(4.5)	(53.0)	(0.1)	(20.2)	(1.6)	
2000	어린이집수	33,499	1,826	1,458	14,275	969	13,306	65	15,525	350	
	(%)	(100.0)	(5.5)	(4.4)	(42.6)	(2.9)	(39.7)	(0.2)	(46.3)	(1.0)	
2008	아동수	1,429,105	141,353	144,158	849,078	66,730	782,348	1,908	269,482	23,126	
	(%)	(100.0)	(9.9)	(10.1)	(59.4)	(4.7)	(54.7)	(0.1)	(18.9)	(1.6)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sup>40) &</sup>lt;표 Ⅱ-4-18>의 수치는 예산 현황이며, 본문의 수치는 당해연도 실제 실행된 건수를 의미함.

결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수의 5%, 아동의 10%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보육수요는 있으나 민간이 기피하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나갈 것이며, 신축 외에도 기존 기관 활용 및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 다양한 확충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표명하고 있다.

#### 다) 서비스 계약제

아이사랑 플랜으로는 2010년에 보육서비스 계약제와 유사한 목적의 서울형 및 부산형 어린이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보육서비스 계약제 도입 가능성 검토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 제도로 추진되었고, 2011년 하반기에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의 공공인프라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표 Ⅱ-4-20〉 선정차수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관 특성

단위: %(개) 구분 1차 2차 3차 전체 전체 100.0(65) 100.0(678) 100.0(361) 100.0(252) 지역 대도시 22.2(80) 36.1(91) 23.1(15) 27.4(186) 중소도시 42.1(152) 42.9(108) 63.1(41) 44.4(301) 농어촌 35.7(129) 21.0(53) 13.8(9) 28.2(191) 시설규모 20인 이하 28.0(101) 34.5(87) 33.0(224) 55.4(36) 21~49인 30.2(109) 13.8(9) 25.8(175) 22.6(57) 50~76인 18.0(65) 13.1(33) 7.7(5) 15.2(103) 77~97인 11.1(40) 13.9(35) 10.8(7) 12.1(82) 98인 이상 12.7(46) 15.9(40) 12.3(8) 13.9(94)

자료: 서문희·양미선·도미향·송신영(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10월 기준 총 678개41)가 선정되었다. 선정은 3차

<sup>41) 1</sup>차는 2011년 6월~7월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을 받았고, 7월 선정기관 발표. 2차는 8월에 신청을 받아 8월에 발표하고 일부지자체는 10월에 발표함. 3차는 경기도와 인천지역만을

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차수별로 1차 361개, 2차 252개, 3차 65개 어린이집이 선정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1, 2, 3차 모두 중소도시의 선정비율이 가장 높고 1차는 농어촌, 2차와 3차는 대도시가 그 다음으로 높다. 공공형으로 선정된 기관의시설규모는 20인 이하가 33.0%, 21~49인 이하가 25.8%로 소규모 어린이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1, 2, 3차모두 20인 이하와 21~49인 이하 규모의 어린이집이 많이 선정되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며, 운영비는 정원 규모에 따라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정원이 20인 이하인 어린이집은 월 96만원이 지급되며, 21~40인은 248만원, 50~76인 440만원, 77~97인은 560만원, 98인 이상은 824만원이다. 기존에 지원받던 영아 기본 보육료는 계속 지급된다.

한편 자율형 어린이집 시행을 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 집을 모집하였으나 전국에서 8개 어린이집만이 신청하여 정부는 시범사업 실시를 취소하였다.

〈표 II-4-21〉 공공형 어린이집 규모별 월 지원액

정원	20인 이하	21~40인	50~76인	77~97인	98인 이상
월 지원액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1).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라)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및 탄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사업 추진 시점인 2009년 5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500개소이고 이 중 읍·면이 453개소이었다. 당초 계획은 매년 어린이집 5개, 이동식 놀이버스 5개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2009년 시범 추진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사업은 어린이집 설치 이외의 아동식 놀이버스, 부모협동 놀이방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사업 실적을 보면 2009년에는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9개소, 이동식 놀이버스 1개소, 부모협동놀이방 1개소, 2010년에는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14개소,

포함됨.

이동식 놀이버스 6개소, 부모협동놀이방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24개소, 이동식 놀이버스 10개소, 부모협동 놀이방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표  $\Pi$ -4-22 참조>.

〈표 Ⅱ-4-22〉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현황: 2009~2011년

단위 : 개

			<u> </u>
구분	어린이집 운영	이동식 놀이버스	부모협동놀이방
2009년	9	1	1
2010년	14	6	1
2011년	24	10	1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표 II-4-23〉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11년

단위 : 개

																ירים	· 기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동	34	2	7	-	1	3	1	1	8	-	-	3	2	2	2	1	1
읍면	440	-	-	-	9	-	-	3	10	25	32	50	62	77	91	81	-
계	474	2	7	0	10	3	1	4	18	25	32	53	64	79	93	82	1
2010	471	2	5	1	10	3	2	5	18	25	32	41	67	81	96	82	1
2009	500	4	9	3	23	4	2	8	26	42	70	90	132	162	205	172	1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이외에 농어촌 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소수의 보육아동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차량으로 보육아동을 이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2006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로 매월 20만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지원대상 차량이 11인승 이상이어서 작은 규모의 차량에 대한 지원이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2007년도부터는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 관되었다.

#### 마)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사랑 플랜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신축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수요조사 방법 표준화,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의무 이행여부 집중 관리를 계획으로 작성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신축·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계획 이상으로 추진되었다. 당초에는 조세제한특례법 제94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신축·구입 비용 세제감면 적용기간이 2009년 12월로 끝나는 것을 연장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2010년 1월 법 개정으로 기간도 2012년 12월까지로 3년 연장하고 또한 세율도 7%에서 10%로 확대하였다. 설치비 융자도 개소 당 최대 5억원에서 2010년에 7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시설전환비 지원도 개소 당 최대 1억(공동설치 2억)에서 2억(공동설치 5억)으로 확대하였다.

이외 2011년 12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5조의4를 두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설치 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설 설치 외 수당, 시설위탁을 모두 보육수요로 인정하는 등 직장보육 수요 조사 방법을 표준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2011년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개정으로 어린이집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항을 보강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의무 이행여부 집중 관리도 강화하였다.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14조의 2 신설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를 법제화하였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12년 7월부터 효력을 갖는다(표 II-4-24 참조).

또한 2012년 7월 지침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고 또한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하였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지원요건은 현행 조건을

유지하여 전체 정원 1/3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이거나,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1/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 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표 Ⅱ-4-24〉 직장 어린이집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구분	내용	개정일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 매년 실시 및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근거 마련	'11.12.3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신설 ·보육실 층수 5층까지 완화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산단 내 근로자의 자 녀 우선 이용 가능	′11 1 <b>2</b> 08

〈표 Ⅱ-4-25〉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 2008~2010년

단위: 개소, %

7.14	의무사업장		미이체시어자			
干亚	(개소)	계	설치	수당	위탁	- 미이에사태성
2010	833	578	312	208	58	255
	(100.0)	(69.4)	(37.5)	(25.0)	(7.0)	(30.6)
2009	790	523	284	195	44	267
	(100.0)	(66.2)	(35.9)	(24.7)	(5.6)	(33.8)
2008	<b>7</b> 91	476	269	160	47	315
2006	(100.0)	(60.2)	(34.0)	(20.2)	(5.9)	(39.8)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Ⅱ-4-26〉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의무이행률: 2010. 6월 기준

단위: 개소, %

						上 / 1 / 1 / 1 / 7 / 7
 구 분	의무사업장		0	행		 _ 미이행
丁 正	러구사답경	소계	설치	수당	위탁	_ 101%
전체	824	561	308	206	47	263
(비율)	(100.0)	(68.1)	(37.4)	(25.0)	(5.7)	(31.9)
국가기관	55	50	41	-	9	5
지자체	129	129	72	56	1	-
학교	73	56	22	30	4	17
(공사)기업	567	326	173	120	33	241

주: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2010년 6월 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사업장은 824개소이며, 직장어린이

집 설치 사업장, 인근 어린이집 위탁 및 보육수당 지급 등 의무 이행 사업장은 561개소로 의무이행률 68.1%이다.

#### 바) 부모협동 어린이집 확산

부모협동 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계획으로 부모의 출자금 부담완화를 위해 장비비·개보수비를 지원하고 필요시 시설 임차료 무상대여와 운영지원을 계획하였다. 운영지원에는 설립지원 컨설팅, 운영진·부모·교사 대상 교육, 설치·운영매뉴얼 개발, 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모협동 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정책은 거의 추진되지 못하였다. 장비비·임차료 지원은 물론 매뉴얼 개발이나 지원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보호자 15인으로 되어 있는 인가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2) 보육관계자 의견

어린이집 균형배치 관련 6개 세부사업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들의 평가를 보면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 도입이라는 공공형 어린이집 성과부분이 4.3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고 직장어린이집이 4.14점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부모 협동 어린이집 확산은 각각 3.66점, 3.65점 수준이며 부모협동 어린이집 확산이 3.40점으로 가장 낮다.

〈표 II-4-27〉 어린이집 균형배치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1. 0(0)
구분	어린이집 균형배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부모협동 어린이집 확산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 도입	(分
전체	3.93	3.66	3.65	4.14	3.40	4.36	(107)
(표준편차)	(1.16)	(1.47)	(1.15)	(1.30)	(1.10)	(1.36)	
공무원	4.11	$4.15^{a}$	3.72	4.00	3.36	4.43	(47)
학계	3.95	3.41	3.86	4.32	3.55	4.09	(22)
현장전문가	3.68	3.21 <sup>b</sup>	3.45	4.21	3.37	4.42	(38)
_ F	1.424	5.084**	1.066	0.531	0.234	0.522	

주: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sup>\*\*</sup> *p* < .01.

응답자 차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만 나타났는데, 공무원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 3) 성과와 과제

관계자 평가에서도 반영된 바와 같이 지난 참여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 대비 국고 지원금의 낮은 수준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도한 비용부담, 민간어린이집들의 민원에 따른 지자체의 정치적 부담 등으로 파악된다.42) 이러한 노력 대비 미미한 성과는 아이사랑 플랜에서의 국공립어린이집 목표 수정으로 이어진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는 약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미 설치된 민간시설을 활용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국공립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사업이 이러한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아이사랑 플랜 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과제의 위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인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원 수준이 낮아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수준은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에 밀접하게 연동된다. 지원수준이 낮은데 높은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 우수한 어린이집이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유감스러우나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낮은 수준의 지원으로 낮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그러다 보니 경쟁구도 속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골라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기보다는 3차에 걸친 모집 끝에 목표량에 가까운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하였고, 부모 보육료 감소 효과도 없고 보육비용이 표준보육비용을 넘는 영아 중심의 가정어린이집이 당초 계획과 달리 33%가 포함되어 있다. 이미 지방 공공형으로 지원 수준이 높은 서울형이나 부산형 모형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당초 의도한 바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국공립 대체 어린이집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지원 수준을 국공립에 버금가게 높이고, 선정 조건이나 운영 조건도 훨씬 강화하여 질 높은 민간개인어린이집들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sup>42)</sup> 시민단체들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나 국립시설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나 제 운영규정도 국공립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에게 공공적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관리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조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그 영향으로 설치 의무 이행 비율은 다소 높아졌다. 전체 보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으나, 사업체 관계자는 보육수요와 예산 부족을 의무 미이행의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표 II 4-28 참조).

〈표 II-4-28〉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유

단위: %(개소) 예산부족 이행추진중 장소 보육수요 기타/ 구 분 계(수) 미확보 부족 (비용부담) 무응답 (설치중 등) 전체 100.0(263) 0.4 21.7 17.1 42.6 18.3 국가기관 0.0 20.0 0.0 0.0 80.0 100.0(5) 학교 5.9 52.9 100.0(17) 11.8 17.6 11.8 기업 22.4 17.4 42.8 100.0(241) 17.4

주: 기타/무응답은 검토 중, 노사협의 중, 필요성 부재, 무응답 등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부모들이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제도권의 대안 형태로 운영되므로 일반인의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다.

# 5.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가. 계획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과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강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으로 구성하였다.

2005년 1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과 2006년 12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제도 시행으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1년 말 보육교직원은 모두 24만 8,600여명이다. 이 중 보육교사가 18만명 이 넘는다(표 II-5-1 참조).

자격을 받은 원장은 16만명이 넘고 교사는 59만명에 달한다. 이중에서 현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원장 24.5%, 교사 30.5%이다(표 Ⅱ-5-2 참조).

〈표 Ⅱ-5-1〉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2011년

단위 : 명

										- 0
	계	원장	보육 교사	특수 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총계	248,635	39,546	180,247	1,341	550	706	891	934	17,457	6,963
국·공립	22,229	2,099	15,376	502	132	85	147	132	2,669	1,087
법인	17,491	1,459	12,037	577	336	91	117	162	1,871	841
법인외	7,724	867	5,102	54	20	35	50	101	899	596
민간개인	112,779	14,030	85,079	198	62	415	508	408	8,379	3,700
가정	82,911	20,557	58,674	5	-	1	8	53	2,997	616
부모협동	485	88	328	1	-	3	-	3	51	11
직장	5,016	446	3,651	4	-	76	61	75	591	112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표 II-5-2〉 보육교직원 자격증 취득자 및 현직 종사 비율: 2005.4.~ 2011.12월

단위: 건, 명, %

<del></del> 구 분	자격증 발급건	자격증 취득자 <sup>1)</sup> (A)	현직 보육교직원(B)	현직 종사비율 (B/A)
계	828,787	751,630	219,743	29.2
어린이집 원장	172,584	161,596	39,546	24.5
보육교사 <sup>2)</sup>	678,439	590,034	180,197	30.5
1급	315,823	306,857	82,633	26.9
2급	296,607	253,658	81,614	32.2
3급	66,009	29,519	15,951	54.0

주: 1) 중복 취득 건(승급, 재교부)을 제외한 실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2012). 내부자료.

아이사랑 플랜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평가 관리체계 마련, 예비 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기준 마련,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강 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장지적 자격체계 정비 방안 연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은 임금 현실화를 통한 보수 수준 개선, 대체교사 인력지원 확대,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 지원, 초과근무수당 지원비 지 급 등의 추진을 계획하였다.

<sup>2)</sup>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보육교사 급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급수가 등 록되어 있지 않은 1명은 보육교사 1급에 포함됨.

### 나. 추진 실적

### 1)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강화

첫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인력 보수교육에 표준보육 과정, 평가인증을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 터넷 보수교육을 통하여 보수교육 참가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보육교 사 자격기준, 보수교육 등을 강화하여 양질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하였다.

둘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평가체계를 전면 개정하였다.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21조 관련 시행령 21조 및 별표1, 시행규칙 17조 및 별표4·별표7, 20조, 21조를 개정 완료하였다. 이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반영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 신규 어린이집장 40시간 직무교육을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필수 직무교육 80시간으로 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현 보육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을 위한 보육업무 경력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대학 보육교사 자격 이수 현 12과목 35학점을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을 보육교사, 특수교사, 보육전문요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제한하였다.

〈표 Ⅱ-5-3〉 교직원 자격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구분	내용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원장은 사전 직무교육·직무교육, 보육교사는 직무교육·승급 교육을 받도록 체계 정비	′11.12.3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ul> <li>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중 유치원 정교사2급을 1급으로 조정,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력제외, 사전 직무교육</li> <li>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데 필요한 보육업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경력에서 보육과직접 관계없는 경력은 제외</li> </ul>	′11.12.0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보육교사 자격기준(별표4 제1호)에서 보육교사 자격 취 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12과목 35학 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변경	'11.12.08

셋째, 2010년에 보육실습 지도지침을 보급하고 보육정보센터장 및 전문교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사 1급 및 원장 등 실습지도교사 교육을 실시하였 다. 또한 영상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2012년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 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 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외에, 중장기적 자격체계 정비 방안 연구는 추진 중이나 보육인력의 자격 변동 정보 연계는 추진되지 않았다.

### 2)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예산 사업은 두 가지이다.

우선, 2009년에 대체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 및 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원 시 보육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보육 교사가 주중 5일을 연가로 사용할 때, 보육정보센터에서 월급제로 채용된 대체교 시를 시설에 파견한다.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하다. 대 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 5일 근무에 월 130만에 교통비와 퇴직금 적립은 각각 10만 원, 6만5천원으로 별도로 지급한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5인 이하인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대체교사는 2012년까지 1,681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2012 년에도 526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Ⅱ-5-4 참조). 이는 2011년 말 교사수 대비 2.9%에 불과하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09년부터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농어촌교사에 국한된 지급 대상을 2012년 중소도시까지 확대하여 11만1천명에 게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교사 수당을 확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대신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5만원을 확보하였고, 2013년에 1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2012년 7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후, 어 린이집에서 교사에게 지급하던 것을 지자체에서 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도 록 개선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일 반비 7만원과 5세반 교사 수당 30만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임금 현실화를 통한 보수 수준 개선은 성취하지 못하였다.

계획으로는 평균 148만원인 국공립보육교사의 급여 수준이 사회복지종사자 176만 원의 84%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2012년까지 95%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를는 추진하지 못하였고, 또한 초과근무수당 제도도 도입하지 못하였다.

〈표 Ⅱ-5-4〉 교사관련 사업 규모와 예산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	)8	200	)9	20	10	20:	11	201	12
ੀ ਦ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수	예산
보수교육	27,700	1,314	27,700	1,314		1,248	26,118	1,248	26,118	1,248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1,389			14,117		18,047	35,742		4,200	26,600
대체교사	450	2,891	450	2,891	450	2,891	450	2,890	526	3,481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농림수산식품부(2012). 내부자료

#### 다. 보육관계자 의견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관련 9개 세부사업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들의 평가는 과제별로 격차가 컸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자격체계 정비 방안 등 5가지 세부과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3.95~4.56점의 보통 수준이다. 특히 보육인력 자격관리 강화, 보수교육 및 실습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7점 기준으로 4점 이상이다. 그러나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4가지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3.17~3.91점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보육교사 임금현실화 과제에 대한 성과는 7점 만점에 3.17점으로 전체 모든 과제 중 가장 낮았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자격관리 체계화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과제의 평가에 대한 인식은 집단 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체교사 인력지원 과제를 제외한 보육교사 임금 현실화, 열악한 근무환경의 교사에게 특별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 모두 공무원의 평가가 학계에 비해 긍정적이었다(표 II-5-5 참조).

즉, 보육관계자들 또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개선, 자격관리 체계화는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II-5-5〉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보수 교육의 내실화	양성· 보수 교육과정 평가체계 미련	예비교사 실무경험, 현장전문 성 제고	보육 교직원 지격 관리 강화	중장기적 자격체계 정비방안 연구 수행의 적절성	보육 교사 임금 현실화	대체 교사 인력 지원	열약한 근무 환경 과사 특별수 당지급	초과 근무수당 지원비 지급	(分
전체	4.12	3.98	4.18	4.56	3.95	3.17	3.71	3.91	3.64	(107)
(표준편차)	(1.13)	(1.18)	(1.21)	(1.29)	(1.26)	(1.34)	(1.39)	(1.35)	(1.31)	
공무원	4.26	4.13	4.02	4.77	4.11	$3.40^{a}$	3.74	$4.30^{a}$	$3.87^{a}$	(47)
학계	3.77	3.68	4.18	4.18	3.55	$2.64^{b}$	$3.14^{a}$	3.32 <sup>b</sup>	$3.14^{b}$	(22)
현장전문가	4.16	3.97	4.37	4.53	4.00	3.18	$4.00^{b}$	3.76	3.63	(38)
F	1.407	1.070	0.860	1.575	1.537	2.555#	2.790#	$4.569^{*}$	2.445#	

주: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라. 성과와 과제

지난 수년간 보육교사, 원장 등 보육인력의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평가 관리체계 마련, 예비 보육교사의 보육실습기준 마련,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보육교사와 원장 자격제도 강화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인력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를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육관계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한편, 2009년 이후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농어촌 보육교사수당, 보편적 근무환경 개선비, 누리과정 교사 수당 등 부분적으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교사 급여 등 근무여건 개선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대체교시는 제도는 도입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크게 확대하지 못하여 규모는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다. 현재의 526명 규모로 17만명의 교사에 대처하기에는 턱 없이 적은 규모이다. 연가 이외에도 교육, 훈련, 휴가 등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보육인력 관리를 통합보육정보시스템과 연계시킨다는 목표도 향후 인력관리의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p < .1, p < .05.

# 6.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가. 계획 및 실적

# 1) 비용지원 선정기준 간소

2009년에 비용지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간소화 및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우선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적게는 3~4종에서 많게는 7~8종에 이르는 소득·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를 사용하게 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였다.43)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는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 이전 등 편법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진입하고 조부모의 재산·소득으로 인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살려 조부모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조부모 가구원수 산입 제외로 인해 탈락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소명하도록하여 조부모를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실 확인 곤란으로 적용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사적 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산입하지 않게 된다.

제도적으로도 2009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확인조사 신설,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신설 등을 마련하였다.

### 2) 아이사랑 카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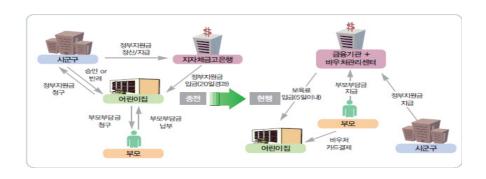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영유아의 보호자를 거치지 않고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급함으로써 정부에서 보육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수요자인 부모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sup>43)</sup> 근로소득은 기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등에서 ①건강보험 보수월액→②국민연금 보수월액→③국세청 종합소득 → ④ 기타자료로 추진하고, 일용직 등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현재와 같이 고용・임금확인서 등으로 증빙하며 사업소득은 매출액 자료 등 사용에서 국세청 종합소득을 주택・건물가액은 시가 적용에서 공시가격 적용으로 변경하였음. 자동차는 보험계약서상 가액 적용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가격 적용하였음. 금융자산 및 부채는 본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존하였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자로부터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

한편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보육료 신청 등을 위한 행정업무가 과다하여 보육서 비스 질 제고에 한계로 작용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지원과 연계된 각종 규 제 생산 및 관리업무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2008년에 정부는 부모와 어린이집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료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보육바우처를 전자쿠폰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국정과제로서 수요자 중심 보육 중 전자바우처 도입을 선정하였다. 이후 아이사랑 카드 도입을 위해 수차례의 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통해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2차례의 시범 사업<sup>44</sup>)을 통해 2009년 9월부터 아이사랑 카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림 II-6-1] 아이사랑 카드 도입 전후 보육료 지원체계 비교자료: 보건복지부(2010).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1년 말 기준 아이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은 39,842개소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35만 명 중 정부지원 대상을 포함한 128만명이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중이다.

당초 아이사랑 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은 신한카드이었으나, 2012년 1월 1일 부터 아이사랑 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신한카드에서 KB국민카드, 하나Sk카 드,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KB컨소시엄으로 교체되어 부모들은 KB컨소시엄 3개

<sup>44) 1</sup>차는 강원도 횡성군, 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에서, 2차 시범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였음.

사 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광주은행 등의 지점을 통해서도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사의 카드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1년간 기존 신한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기존 0.36%에서 KB컨소시엄이 제안한 0.01%로 낮아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보육관계자 의견

<표 Ⅱ-6-1>은 전달체계 효율화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결과이다. 보육관계자들은 아이사랑 카드 도입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 편의성 제고는 7점 척도에서 5.09점, 보육료 비용지원 선정기준의 간소화는 4.36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실제로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 공무원이 학계에 비해 성과를 높게 평가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표 Ⅱ-6-1〉 전달체계 효율화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아이사랑 카드 도입을 통한 보육료 비용지원 구분 (分) 어린이집 이용 편의성 제고 선정기준의 간소화 전체(표준편차) 5.09(1.29) 4.36(1.11) (107)공무원 4.53 5.19 (47)학계 4.05 4.77 (22)현장전문가 4.32 5.16 (38)1.491 0.8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 다. 성과와 과제

2009년 9월 아이사랑 카드 도입 이후 아이사랑 카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 체감도 증대,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소통과 참여 확대에 따른 서비스품질 개선과 만족도 증진, 보육행정 업무 부담의 경감 여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박세경·강혜규·김은지·박소현·정세정, 2010).

아이사랑 카드 도입으로 기존에 어린이집에 지급되던 보육료가 보육서비스

져서 보육료 지원 및 보육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가 핵심주체로 등장하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이다. 또한 부모와 어린이집과의 소통 증진으로 보육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등 보육서비스 정책이 수요자 선택과자기책임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효과는 보육료 수납의 효율성 제고이며, 편리성에 대해서는 기타 운영경비의 결제 항목을 제외하면 편리성이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행정처리로 행정업무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세경 외, 2010).

보육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육료 지원방식의 변화로 인한 실질적 업무가 훨씬 수월해져서 행정업무 경감의 효과는 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지원시 스템 행정업무 편리성에 대한 보육행정 담당공무원의 평가는 높은 편이었다(박 세경 외, 2010).

그러나 부모의 참여와 시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정책 의도는 상당부분 약화되었고,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나 시설과의 소통 및 부모 참여의 확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세경 외(2010)는 보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부모와 시설의 소통 및 보육과정에 대한 부모참여가 보육서비스 개선까지 연계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7. 보육정책의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 가. 계획과 실적

# 1)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당초 계획으로 정책현장 중심의 자료수집 체계 및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활성화, 연구채널 다각화와 학제 간 통합연구로 신규 정책과제 발굴 및 개발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 2) 보육사업 지원기구 효율적 개편

보육교사 자격관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무국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등 보육

지원 기능 통합을 목표로 세웠다.

〈표 II-7-1〉 영유아보육법 보육 사업 업무 위탁 관련 개정 내용

 구분	내용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 보육자격증 업무위탁, 비용보조, 수수료 직접 사용 근 거마런	· · · · · · · · ·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ul> <li>업무위탁규정 신설. 보육정보센터, 보육자격검정 및 지 격증교부, 보수교육, 평가인증, 이용권관련 업무를 공 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ul> <li>보육정보센터, 보육자격검정 및 자격증교부, 보수교육 평가인증, 이용권관련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li> </ul>	′ '11.02.03

이는 2010년에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이곳에서 보육인력 자격관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무국 및 중앙보육정보센터<sup>45</sup>)를 위탁·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보육자격증 업무위탁, 비용보조, 수수료 직접 사용 근거마련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

###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2009년 11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이후 2단계(2009. 12~2010. 6월), 3단계(2010. 7~12월) 및 4단계(2011. 7월~)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분산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통합, 구글어스서비스를 활용한 어린이집 검색서비스 제공, 통합화된 창구 제공을 통한 어린이집 홍보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대부분 달성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에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한 보육료 결제,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수요자 중심 전산시스템 마련을 위해 기존 표준보육행정시스템(e-보육)을 확대 개편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부모와 보호자의 의견·정보교환 등이 쉬워짐으로써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보육료 지원절차를 전산화하여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sup>45)</sup>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법적 기구로 두 사무국과는 운영 상태가 다름.

2단계 구축사업에서는 232개 시·군·구별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던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및 인사기록 카드 정보를 대상으로 DB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정합성 및 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되던 어린이집 설치 인가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고 자료정비를 통해 정보의 정 확성을 확보하여 보육행정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중앙 및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18개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던 컨텐츠, IT자원을 아이사랑보육포 털 산하로 통합하여 보육정보 채널을 일원화하여 보육 관련 각종 상담, 구인구 직, 교육관련 정보 등을 아이사랑보육포털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공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안정공제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단계 구축사업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보육자격검정 및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집과 행정기관 간 실시간·쌍방향 알림 및 의사소통 채널인 '아이사랑 알리미'를 구축하여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 속한 보육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4단계 구축사업에서는 보육정책 입안자 및 일선 보육담당 공무원 등이 직접 보육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보육통계를 생성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보육정책DW를 구축하였다. 정부는 신규 보육정책 입안 및 제도 개선, 보육재정 집행 추이 모니터링 등에 DW시스템40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

2008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체계화를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11월에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사후보상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제사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2011년 8월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통해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 해보상에 대한 당연가입 의무를 신설하고 보상범위를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 하였다.

<sup>46)</sup> DW(Data Warehouse)는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 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분석형 데이터베이스임.

〈표 Ⅱ-7-2〉 안전공제회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구분	내용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 범위를 생명·신체상의 피해에서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 어린이집 공제회 에 당연가입함을 신설	<b>'11.08.04</b>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절차,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 구체화	'09.06.30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을 신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료 납부	′12.02.03

〈표 II-7-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규모

단위: 개소, 건(%)

			=, =,
	2010	2011	2012년도
구분	(35,550개소	(38,021개소	(39,842개소
	` 기준)	` 기준)	` 기준)
회원	9,388(26.4)	18,515(48.7)	29,555(74.2)
공제상품(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14,384(40.5)	22,965(60.4)	31,959(80.2)

주. 2012년도는 6월 15일 기준임. 회원은 1회 가입 누적치, 공제상품은 1년 가입 기준 갱신치임. 자료: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2). 내부자료.

〈표 Ⅱ-7-4〉 연도별 공제료 수입 및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제료 수입액	공제급여 지급액	비고
2010	2,356	2,044	
2011	4,517	4,508	
2012	8,071	-	'12.6.15 기준

주. 공제급여 지급액은 각 연도말 결산 기준이며, 추산공제급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향후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산공제급여는 향후 치료 또는 장해 등에 따른 추가보상요구 대비 산정(적립)한 공제급여임. 공제사업 개시(10년도) 이후, 총 지급건수는 약 15,500(건)으로, 이 중 '12년도(3.1 ~ 6.15)의 경우 약 2,400(건)임.

자료: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2). 내부자료.

2012년 현재 가입 현황을 보면 회원은 거의 3만개소에 임박하고 공제상품 가입은 3만개소를 넘고 있다(표 Ⅱ-7-3 참조). 공제 수입은 2012년 6월 기준으로 80억 규모이다(표 Ⅱ-7-4 참조).

정부는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인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의 제정(2006년 6월)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회계 관리를 투명화하였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방안으로 2010년에 주요 점검 항목을 사전에 공표 하여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효율적 점검을 지원하며, 지도점검 대상기관 사전예 고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지자체 담 당자 교육, 정기적 워크숍으로 공무원의 지도점검 역량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0년에 어린이집의 운영일반, 건강·영양·안전관리, 회계, 교직원 관리 등에 관한 운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배부하였다. 2010년 하반기에는 아이사랑 카드 및 어린이집 이용 상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처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보건복지부가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보육통합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 허위등록 또는 보육교직원의 빈번한 이 직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이나 보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연 2회에 걸쳐 시·도와 합동으로 허위등록 여부, 급간식 적정 제공 및 위생·안전관리, 회계 적정성 여부 등 운영 전반에 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어린이집의 명단을 2012년 상반기에 공표하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 이후 법 위반 이력사실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고, 아동학대, 급식사고 및 보조 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큰 보육교직원에 대해 종사를 제한할 계획이다.

2012년 8월에는 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보조금을 1천만원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6개월 내 운영정지 하나이었던 처분을 시설폐쇄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착오나 경미한 과실47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기준이 합리화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48) 또한 보육료 및 보조금지원의 합리화로 지침을 개정하여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sup>47)</sup> 경미한 과실은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가 잘못 보고된 영유아가 1명(가족인 경우는 1명으로 봄)이고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를 잘못 보고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임.

<sup>48)</sup> 연간 수입이 1~2억원인 어린이집의 경우 210만원 과징금 부과함.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한다.49)

〈표 II-7-5〉 행정처분·벌칙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구분	내용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ul> <li>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신설</li> <li>운영정지 처분에 의해 보호자나 영유아에게 심한 불편을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신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li> <li>제5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시 행위자처벌 및 법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 부과를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변경</li> </ul>	<b>'</b> 11.06.07
영유아보육법	<ul> <li>시정 또는 변경명령 대상 확대</li> <li>보육교직원 거짓으로 임면하거나 임면 사항 미보고</li> <li>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li> <li>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li> <li>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li> <li>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li> </ul>	<b>'</b> 11.08.04
영유아보육법	<ul> <li>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로 운영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li> </ul>	'11.12.3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ul> <li>운영정지 처분에 가름할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 연간 총수입을 고려하여 산정된 1일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li> </ul>	′11.12.0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ul> <li>기타 제도 개선 사항 변경</li> <li>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변경 인가 및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 시 구비 서류 추가</li> <li>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시기 명확화, 행정명령 위반 또는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li> </ul>	'09.07.03

제5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시 행위자처벌 및 법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 부과를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변경하였다.

<sup>49) 2012. 7. 4.</sup>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 6)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

2010년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부모단체 및 부모 모니터링 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공표하였다. 이는 부모 참여권을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을 위해 급식·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분야에 보육전문가와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미흡한 어린이집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모 모니터링단의 구성이나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2011년 조사(서문 회·최윤경 외, 2011)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한 시·도는 7개이고50),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는 곳은 서울 이외에는 없다. 시·군·구활동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은 안심모니터링이라고 하여 순수한 부모 중심의 모니터링 활동은 아니다.

한편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는 부모서포터즈라는 부모참여 제도를 도입하여 100인 이상 어린이집 관찰평가 시에 부모가 동행하여 해당 어린이집 의 특장점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나. 보육관계자 의견

보육정책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세부과제의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평가는 7점 척도에서  $4.15\sim4.93$ 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다(표  $\Pi$ -7-6 참조).

〈표 Ⅱ-7-6〉 보육 지원체계 구축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보육시업 지원기구 효율적개편	보육통합 정보 사스템 구축	안정공제회 설립· 어린이집 사고예방 보상기능	어린이집 지도개선 방안의 효율화	어란이집 지도개선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 감소	부모단체, 모니터링단 활성화	(分
전체	4.65	4.64	4.91	4.93	4.15	4.37	4.13	(107)
(표준편차)	(1.17)	(1.27)	(1.23)	(1.30)	(1.16)	(1.26)	(1.32)	
공무원	4.66	4.60	5.13	5.02	4.26	4.66	4.17	(47)
학계	5.00	4.68	4.91	5.18	4.09	4.23	4.00	(22)
현장전문가	4.45	4.68	4.63	4.66	4.05	4.11	4.16	(38)
F	1.58	0.06	1.75	1.37	0.35	2.26	0.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관한 보육관계 의견조사」결과임.

<sup>50)</sup>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임.

특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을 통한 어린이집 사고예방과 보상기능 수행과제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육정보의 적절한 제공 과제에 대해각각 4.93, 4.91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어린이집 지도개선 관련과제 관련 과제와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에 대한 성과 평가는 낮았다.

응답자 특성간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히, 보육담당 공무원이 업무 수행상 직접 관련이 있는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과 안전공제회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 다. 성과와 과제

보육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와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무국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등 보육지원 기능 통합이 목표였다. 후자는 2010년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홍원을 설립하고 보육인력자격관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무국 및 중앙보육정보센터<sup>51</sup>)를 위탁·운영함으로써 달성하였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도 2009년 11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이후 2단계(2009. 12~2010. 6월), 3단계(2010. 7~12월) 및 4단계(2011. 7월~)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제사업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안전사고예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어린이집의 당연가입을 제도화하였다.

어린이집 지도 감독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배부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운영, 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을 합리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부모 모니터링단 등 부모 참여 활동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2011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한 시·도는 7개이고, 서울 이외에는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운영위원회나 부모 모니터링단 등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통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sup>51)</sup> 중앙보육정보센터는 법적 기구로 한국보육진흥원 내에서 두 사무국과 위상이 다름.

# 8. 소요예산

2012년 0-2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도입 등 부모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로 보육과 유아교육 재정은 2012년 기준으로 지방 특색 사업을 제외하고 총 9조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는 GDP 대비 0.72로 추정된다(표 Ⅱ-8-1 참조). OECD 국 가들의 평균은 0.7%이다(OECD, 2006)

〈표 II-8-1〉 유아교육·보육 예산: 2005~2012년

단위: 백만원, % 2012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추정) 유아교육 637,795 824,220 947,754 1,012,089 1,235,852 1,529,272 1,923,903 2,804,103 1,327,300 1,723,600 2,286,100 2,997,800 3,588,600 4,289,000 5,018,600 6,132,183 계 1,965,095 2,547,820 3,233,854 4,009,889 4,824,452 5,818,272 6,942,503 8,934,555 GDP 0.28 0.33 0.39 0.45 0.50 0.56 대비 비율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예산 내부자료.

이미 2013년에 누리과정 확대나 양육수당 확대가 예정되어 있고, 출산수준이 낮아지면서 보육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다음 <표 Ⅱ-8-2>는 국고 지원 보육 사업 내역의 시·도별 예산을 나타낸다.52) 예산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부모에게 지급하는 비용 지원금이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관리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비용은 보수교육 비용 등으로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

주: 보육예산은 국고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지방정부의 별도 사업 예산은 포함되지 않음. 2012년 유아교육예산은 2011년 예산에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 추가소요액을 합한 최소액임. 2012년 수치는 2011년치 사용하여 추정함.

자료: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sup>52)</sup> 분담금 없는 중앙정부 사업은 제외되어 총액이 <표 Ⅱ-8-1>과 다소 차이가 있음. 육아종 합지원센터 설치는 추후 경쟁을 통하여 선정함.

〈표 Ⅱ-8-2〉 시도별 국고 지원 사업 예산: 2012년

내다	포	130,960	65,078	65,882	ı	1	ı	346	173	173	31,638	15,819	15,819	717	326	326	2,691	1,328	1,363
 하 하	경타		237,913	239,593	ı	ı	,	346	173	173	62,913	32,085	30,827	1,473	736	736	10,237	5,083	5,153
	学	360,374	183,986	176,389		,		346	173	173	48,246	25,088	23,158	1,241	621	621	7,782	3,950	3,833
	전다	233,610 280,678 306,789 282,074 360,374 477,507	118,451 139,419 157,064 141,190 183,986 237,913	115,159 141,260 149,724 140,884 176,389 239,593	,	•	,	346	173	173	60,163	30,081	30,081	2,423	1,211	1,211	4,915	2,453	2,461
	전투	306,789	157,064	149,724	,	,	,	346	173	173	58,745	30,547	28,198	1,484	742	742	5,344	2,724	2,620
	충감	280,678	139,419	141,260	,	,	,	346	173	173	48,054	24,027	24,027	1,321	199	661	6,017	2,986	3,032
	%	233,610	118,451	115,159	,	,	,	346	173	173	39,478	20,528	18,949	1,349	675	675	4,137	2,106	2,031
	강원		100,921	102,239	,	,	,	346	173	173	41,920	20,960	20,960	1,237	619	619	3,723	1,834	1,889
	경기	,445,073	731,679 100,921	713,394 102,239	,	,	,	692	346	346	134,790	68,743	66,047	3,645	1,822	1,822	34,132	17,037	17,094
	울산	125,310 1,445,073 203,161	71,966	53,343				346	173	173	14,516	8,274	6,242	482	241	241	2,659	1,488	1,170
	묘정	208,291	124,118	84,173	,	,	,	346	173	173	19,987	11,992	266′2	458	229	229	4,489	2,657	1,832
	华	240,098	143,078	97,020	,		,	346	173	173	32,534	19,520	13,014	994	497	497	4,171	2,467	1,703
	인천	333,971 240,098	188,483	145,488	,	,		346	173	173	29,751	16,661	13,091	1,032	516	516	6,260	3,473	2,787
	내구		177,593	127,564		,		346	173	173	44,389	26,190	18,200	659	315	315	5,466	3,176	2,291
	부산	24 849,521 328,838 305,157	193,624	135,213	,	,	,	346	173	173	53,702	31,684	22,018	1,358	629	629	5,850	3,384	2,466
	서울	849,521	236,059	613,461	,	,	,	360	72	288	146,260	40,953	105,307	3,435	1,717	1,717	19,143	5,118	14,025
	전체	5,787,924	2,844,131 236,059 193,624 177,593 188,483 143,078 124,118	2,943,793 613,461 135,213 127,564 145,488	000′9	3,000	3,000	5,896	2,840	3,056	867,084 146,260	423,153	443,931	3,891	1,946	1,946	19,143	5,118	14,025
		T T	국고	지방비	F.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기	지방비
	라는		孝계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치	육종류	지원센터	송		도보 21비 2		 	기선의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 스 -	

圣	90,126	44,777	45,349	65	32	33	4,014	1,909	2,105	1,363	682	682
名は	387,195	192,367	194,828	141	Z	8	12,252	5,892	6,360	2,951	1,505	1,446
경투	287,278		140,816	117	99	22	12,865	6,333	6,531	2,500	1,300	1,200
소감	201,983	101,360 146,461	110,935 100,623 140,816 194,828	91	46	45	10,564	5,071	5,494	1,590	795	795
삼	226,779	115,844	110,935	109	26	23	12,053	5,974	6/0/9	1,929	1,003	976
多な	214,445	106,541	107,904	121	09	61	8,869	4,219	4,651	1,505	752	752
%	178,916	90,321	88,595	91	47	4	2,986	3,921	4,064	1,308	089	628
강원		73,282	74,219	20	22	25	069′9	3,182	3,508	1,692	846	846
7	102,297 1,224,693 147,502	620,704	066'809	208	329	350	40,126	19,462	20,665	6,287	3,206	3,081
황산	02,297 1,	59,015	43,282	45	79	70	2,951	1,601	1,350	2,014	1,148	998
묘	172,202	102,795	69,406	73	43	53	670/6	5,204	3,825	1,707	1,024	683
华	191,064	114,055	600'11	84	20	34	0/9′6	5,574	4,096	1,235	741	494
인찬	278,012	157,600	120,412	129	73	27	16,571	8,940	7,630	1,869	1,047	823
바구	235,513	137,048	98,465	133	28	22	16,330	9,228	7,102	2,351	1,387	964
부산	250,983		102,669	149	82	62	15,730	8,879	6,852	719	424	295
수황	651,683	180,806	470,877	494	136	358	28,146	7,257	20,889	١,		-
전체	4,840,670 651,683	2,391,291 180,806 148,314	지바바 2,449,379 470,877 102,669	642	223	419	43,877	16,136	27,741	31,020	16,540	14,481
	THE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배비	媈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라	7	5年0 日 0 日 7 回	H H H H H		且个亚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국고	양육지원 지방비		7時	

자료: 보건복지부(2012). 내부자료.

# 9. 소결 및 시사점

### 가. 아이사랑 플랜의 성과

<표 Ⅱ-9-1>은 아이사랑 플랜에서 목표로 설정한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수년간 아이사랑 플랜의 추진으로 보육서비스는 양과 질 모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누리과정, 0~2세 무상보육 등으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자 노력하였다. 양육수당이 다소 계획에 못 미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육비용 부담 완화는 계획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시간연장 및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 비율, 어린이집 질 제고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은 초과 달성이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다소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 보육인력 전문성 강화 부분도 기대에는 미달되지만 그 간의소외를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9-1〉 아이사랑 플랜 성과지표

분야	지표명	2009	2012 목표	평가
보육비용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비율	소득하위50% (61만명)	소득하위 80% (111만명)	매우우수
부담 완화	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	차상위 (11만명)	소득하위80% (59만명)	우수
수요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개소 수	4,110개소	4,500개소	매우 우수
맞춤보육	다문화가족 아동 어린이집 이용비율	62%	70%	매우 우수
어린이집	평가인증어린이집 비율	40%	90%	우수
질 제고 및 균형배치	소규모 어린이집	10개소	135개소	보통
보육인력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어촌21천명	중소도시 111천명	보통
전문성 강화	대체교사 지원인력	450명	1,500명	미흡
보육전달체계	보육지원대상자 선정 소요기간	1개월 이내	2주 내외	우수
효율화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전면실시	안정적 정착	달성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 추진	공공인프라 마련	민관학 연계망 활성화	보통

주: 평가는 연구자 추가

자료: 보건복지부(2009). 아이사랑 플랜. 보건복지부.

공무원, 학계, 현장전문가 등 보육관계자 조사에서도 부모 비용 부담 완화 사 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7점 만점에 5점 이상으로 가장 긍정적이다. 응답자 간의 차이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에서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Ⅱ-9-2 참조).

〈표 Ⅱ-9-2〉 아이사랑 플랜 6대 추진과제의 성과 정도: 7점 척도

단위: 점

-	구분	비용	 맞춤형	질 제고 및	보육인력	전달체계	효과적
	十七	부담 완화	보육서비스 제공	균형배치	전문성 제고	효율화	지원체계 구축
_	전체	5.12	3.93	4.46	3.84	4.21	4.07
	(표준편차) 공무원	(1.23) 5.09	(1.13) 4.11	(1.08) 4.21 <sup>a</sup>	(1.25) 3.89	(1.07)	(1.17) 4.13
	공무원 ´	`5.09´	4.11	4.21 <sup>a</sup>	`3.89	4.34	4.13
	학계	5.23	3.68	4.45	3.50	4.09	4.14
	현장전문가	5.11	3.87	4.76 <sup>b</sup>	3.97	4.11	3.95
	F	0.104	1.169	2.849#	1.071	0.662	0.298

주: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표 Ⅱ-9-3〉 아이사랑 플랜 세부과제 성과 우선순위: 7점 척도

단위: 점

순위	구분	평균	순위	구분	평균
1	다문화기족의 양육부담 경감	5.08	7	영아보육지원 확대를 통한 영아가 정의 양육부담 경감	4.75
2	어린이집 영양 안전 건강관리 강화	5.05	8	보육정책 연구기능의 강화	4.65
3	어린이집 영양·안전·건강 관련 보 육교직원 교육 강화	5.01	9	보육시업 지원지구의 효율적 개편	4.64
4	안정공제회 설립을 통한 어린이집 사고예방과 보상기능 수행	4.93	10	어린이집 환경기준 재정비를 통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	4.52
5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육정보의 적절한 제공	4.91	11	어린이집 평기인증 부담 완회를 통한 평기인증 활성화	4.50
6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개발로 보육 서비스 질 향상	4.77			
	서비스 질 향상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보육관계자들이 높은 성과로 평가한 세부과제로는 <표 Ⅱ-9-3>과 같이 부모 부담 비용 지원, 안전공제회, 보육통합시스템, 연구기능, 지원기구 등과 같은 하 드웨어의 강화, 영양·건강·안전 관리 및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환경기준,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과제이다.

반면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는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가 가장 점수가 높다(표 Ⅱ-9-4 참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p < .1.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세부과제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보육교사 임금 현실화, 대체교사 인력지원 등 15개 세부과제 중 7개가 보육교사 처우 및 전문성과 관련된 과제이다. 이외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영양·안전·건강관리 및 보육교직원 교육강화, 어린이집 지도·지도감독,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부모에 정보 제공 등의 세부과제가 우선순위 높다(표  $\Pi$ -9-5 참조).

〈표 Ⅱ-9-4〉 아이사랑 플랜 6대 추진과제의 향후 추진 필요성: 7점 척도

단위: 점

구분	비용	부담	맞춤형	보육	질	제고	및	보육인력	전	전달체계	ট্র	효과적	지원
コモ	완화		서비스	제공	균형	뺆치		문성 제고	<u>_</u>	율화		체계구	축
전체	3.23	3	3.3	6		3.64		3.70		3.42		3.4	9
(표준편차))	(0.54)	1)	(0.5-	4)		(0.50)		(0.54)		(0.53)		(0.5)	51
공무원	3.23	3	3.2	$1^{a}$		$3.43^{a}$		$3.51^{a}$		$3.26^{a}$		3.3	6 <sup>a</sup>
학계	3.18	3	3.4	5		3.86 <sup>bc</sup>		3.77		3.45		3.6	$4^{\mathrm{b}}$
현장전문가	3.26	6	3.5	$0^{b}$		3.79 <sup>c</sup>		3.89 <sup>b</sup>	1	$3.61^{b}$		3.5	5
F	0.17	7	3.53	$2^{*}$	1	0.475**	n*	7.272**	ŀ	4.305*		2.46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 p < .001, \*\* p < .05, \* p < .01, # p < .1.

〈표 Ⅱ-9-5〉 아이사랑 플랜 세부과제 지속 추진 필요 우선순위: 4점 척도

단위: 점

순위	구분	평균	순위	구분	- 평균
1	보육교사 임금현실화	3.74	9	보육교직원 양성·보수교육과정 평기체계 마련	3.54
2	대체교사 인력지원	3.68	10	초과근무수당 지원비 지급	3.53
3	어린이집 영양 안전 건강관리 강화	3.62	10	중장기적 자격체계 정비방안 연구 수행의 적절성	3.53
4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3.60	10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개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3.53
5	영양·안전·건강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강화	3.57	13	국공립어란이집 확충	3.52
6	열악한 근무환경의 교사 특별수당 지급	3.56	1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육정보의 적절한 제공	3.51
7	어린이집 지도개선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 감소	3.55	15	체계적인 프로그램 평가방안 마련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3.50
7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내실화	3.5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특히 영양·건강·안전 관리 부분은 성과가 높다고 평가되었음에도 또 필요한

과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영양·건강·안전 관리 부분이 중요 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주요 지표 변화

<표 Ⅱ-9-6>은 영역별 주요 성과지표로 2011년 보육정책 성과 지표를 2009년, 2010년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및 재정, 평가인증 등은 연차별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9-6〉 수요	국가 난	키 모육 관련	선 시표	
영역	세부지표명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기초자료 출처
-1 0 -1 0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	45.0%	49.2%	73.5	보육통계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아동비율	65.7%	68.7%	73.5	보육통계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7.4%	-	-	실태조사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	(8.7%)	5.8%	6.9%	복지부
중폭구·경 	양육수당 지원액	10만원	20-10만원	20-10만원	복지부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0.195	0.211	0.245	복지부
	GDP대비 총보육재정 비율 <sup>1)</sup>	0.465	0.509	0.576	복지부
보육재정	GDP대비 총 보육·유아교육 재정 비율 <sup>2)</sup>	0.617	0.687	0.803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
	아동1인당 총 보육예산	4,207천원	4,489천원	4,885천원	복지부
77 p)	어린이집 공급률	54.2%	56.9%	58.4%	보육통계
공급 및 이용	어린이집 이용률	42.9%	46.8%	48.6%	보육통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11.0%	10.8%	10.6%	보육통계
시간연장 보육	시간연장 보육아동 비율	2.0%	3.0%	3.3%	보육통계
평가인증	평가인증어린이집 비율	60.5%	70.0%	77.5%	평가인증사무국
	월 수당액(농어촌)	11만원	11만원	11만원	복지부
-11	근무환경개선비(0-4세)	-	-	5만원	복지부
교사 근무환경	누리과정 수당(5세)	-	-	30만원	
-1-0	수당 지급 교사 비율	18.2%	22.4%	100.0%	복지부
	교사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	2.9%	2.6%	2.9%	복지부

/ㅍ II\_0\_6\ ㅈㅇ 구가 다의 ㅂ유 과려 ㄲㅍ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과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모두 2011년에 73.5%로 2010년 각각 49.2%, 68.7%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통과 비율은 77.5%이

주: 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예산 포함

<sup>2)</sup>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예산 제외 시 2012년 0.722 증가

다. 이는 2010년 통과비율 70.0%에 비하여 7.5%가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5세 누리 교사 수당 30만원 증가 외에도 모든 교사에게 5만원의 수당이 새로이 도 입되었다.

2011년 예산 기준으로 GDP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은 0.58%이다. 유아교육 및 농어촌 영유아 지원을 포함하면 0.8%이다. 아동 1인당 보육예산은 2011년 488만 원 정도로, 2011년 대비 약 40만원 정도 늘어났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교사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 등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영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다. 정책 시사점

앞에서 논의한 자료들을 반영하여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보육교사에 대한 배려는 그 동안은 보육정책의 의제에서 소외되어 왔고, 2009년에 들어서 비로소 수당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보육서비스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급여나 근로기준법 준수와 같은 전반적인 근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1년에 교사 양성교육 기준 등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의 정비, 인적, 물적 근무환경또한 중요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가 된다.

정부가 보육환경이나 서비스의 질적 제고 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보육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도 상당수로 시 설설치나 안전 면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다. 평가 인증제도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비교 적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증유지율은 63% 정도에 머문다. 실효성 있는 정 책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의 연계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지만 인증유지 율 60%대 상태로는 재정 지원과의 연계가 자칫 부모와 아동에게 부정적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

어린이집의 확충으로 2012년 현재 4만여개가 넘는 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도 2011년 말 기준으로 영아 54%, 유아 42%로 총 48%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는 미미하다.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플랜에서는 계획 자체를 축소 조정하여, 현재 연간 10개 미만 수준의 신

규 확충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보육예산이 확대되면 될수록 어린이집의 공공성 제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공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다음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2008년 기준으로 보육아동 중 약 68%의 아동 인 73만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았으나 2012년에는 3, 4세아 소득 상위 30%를 제 외하고는 모두가 전액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증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 부분은 개선을 요한다. 특히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최근 수년간 급격하 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아동발달 측면에서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부모 가 직접 자녀를 돌볼 시에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대체 양육수당과의 정책적 조 화가 과제가 될 것이다.

민간어린이집의 부모 참여와 운영 투명성 제고, 정보의 공개 강화 등 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주요 정책과제이다.

또한 보육비용 지원이 취업모 자녀 등 부모들의 보육 요구의 차이에 대한 차 등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되어 모의 취업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측면은 실패한 측면이 있고, 12시간 보육으로 획일화된 정책이 필요 이상 의 보육서비스 이용으로 아동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는 지적이 있어서, 이용시간과 유형의 다양화나 부모-자녀 이용시설 확대를 포 함하여 수요자 맞춤 서비스의 제공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2009년에는 보육서비스 및 재정 전달 및 지원체계도 크게 변화되었다. 보육서 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과 더불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였다. 그러나 정 부의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나 선택권 보장은 부모 참여 확대와 더 불어 주요한 보육정책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제3장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 예산을 수집, 정리하고 일부 지방정부의 사업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 1.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개요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총 7조 1327억 규모이다. 2005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1년과 비교하여도 1조 400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2012년부터 5세 보육료 지원금이 누리과정 시행으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0~2세 무상보육 등으로 크게증가한 것이다.

〈표 Ⅲ-1-1〉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5~2012년

단위: 백만원, %

						<u> 위· 독립편, /o</u>
구분	국고사업비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사업비 (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사업비 (C/A)
2005년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2007년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12.8	4.4
2008년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8.7	3.7
2009년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10.6	3.7
2010년	4,288,978	483,527	171,298	4,943,803	11.3	4.0
2011년	5,018,610	455,187	271,159,	5,744,956	9.1	5.4
2012년	6,132,183	438,914	552,566	7,132,663	7.2	9.0

주: 2011년까지는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도 수 모유의 특별사업비임. 2012년은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비가 포함됨.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여성기족부·보건복지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국고 지원 사업 예산은 총 6조 1300억원이고 시·도와 시·군·구 특수사업 예산이 각각 4389억원, 5526억원으로 국고 지원사업의 각각 7.2%, 9.0%를 차지한다. 즉, 국고지원 사업 대비 총 16.2%의 예산이 추가되고 있다.

< Ⅲ-1-2>는 2012년 전체 정부의 시·도별 예산인데, 특수보육시책 비용 역시 시·도 및 시·군·구별로 차이가 크다. 지방정부의 추가적 예산은 국고 지원사업비의 16% 수준인데 서울시는 약 45%에 달하고 경기도가 19%, 인천이 17.2% 정도로 수도권의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충남, 충북 순으로 높다.

〈표 Ⅲ-1-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시·도 특수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 대비 시·도 특별사업비 (B/A)	국고사업 대비 시·군·구 특별사업비 (C/A)
전체	6,132,183	438,914	552,566	7,132,663	7.2	9.0
서울	849,521	253,538	128,248	1,231,307	29.8	15.1
부산	328,838	16,531	1,548	346,917	5.0	0.5
대구	305,157	5,241	6,659	317,057	1.7	2.2
인천	333,971	31,349	26,002	391,322	9.4	7.8
광주	240,098	4,789	4,083	248,970	2.0	1.7
대전	208,291	15,441	7,170	230,902	7.4	3.4
울산	125,310	4,848	9,555	139,713	3.9	7.6
경기	1,445,073	70,097	207,758	1,722,928	4.9	14.4
강원	203,161	2,620	11,320	217,101	1.3	5.6
충북	233,610	2,806	26,023	262,439	1.2	11.1
충남	280,678	7,863	31,818	320,359	2.8	11.3
전북	306,789	3,747	10,914	321,450	1.2	3.6
전남	282,074	1,381	6,584	290,039	0.5	2.3
경북	360,374	7,797	34,242	402,413	2.2	9.5
경남	477,507	10,752	30,006	518,265	2.3	6.3
제주	130,960	114	10,638	141,712	0.1	8.1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도 사업 분담금과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2).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12).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 2. 시·도 특수보육시책

시·도 특수보육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육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제주를 제외하고 3만원부터 서울 100만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지역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보육이동 1인당 비용은 서울 다음으로는 인천, 대전, 부산, 경기도, 울산이 비교적 높은 순위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한 지역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대도시로, 지역적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수보육시책 내용을 분류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데 크게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지원53),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비용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취약보육 운영지원,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보육교직원 지원은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역량개발비이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시설설치비, 환경개선비, 육아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이다.

아동 1인당 예산 규모가 큰 서울과 인천시를 중심으로 시·도별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2012년 특수시책의 특성으로 새로이 추가된 공립어린이집설치 비용 89억원을 들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서울시장의 야심찬 보육정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금, 영유아플라자를 포함하는 구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서울시 보육정책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인건비나 급간식비와 같은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취약보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중앙정부 정책에 앞서서 2012년에 만 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하였고 장난감 도서관을 확대 운영하는 정책적 특성이 있다. 이외에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료 지원은 많은 시·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특수사업 규모가 큰 시·도 모두 종사자 처우 개선과 보육료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sup>53)</sup>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직원 지원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음.

〈표 III-2-1〉 사업유형별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2012년

	구두	정씨	서울	부산	내구	인천	광주	묘전	拿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정북	公子	계주
	전체	438,915	438,915 253,538 16,531	16,531	5,241	31,349	4,789	15,441	4,848	70,097	2,620	2,806	7,863	3,747	1,381	7,797	10,752	114
	보육아동1인당	0.33	1.18	0.24	0.08	0.44	0.10	0.35	0.16	0.20	90:0	90.0	0.12	0.07	0.03	0.11	0.11	0.004
	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	2,039	738	445	325	ı	26	ı	ı	206	47	,	65	ı	62	99	ı	'
분하집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149,214	149,214 135,144	2,780	1	1,336	618	655	53	1,786	962	40	1,433	476	1	3,514	416	1
P영자원	운영자원   인건비지원	1,744	502	'	١	45	300	95	563	150	18	1	22	1	1	1	ı	1
	소계	152,997	52,997 136,384	3,225	325	1,381	1,010	750	616	2,142	1,026	9	1,570	476	62	3,574	416	1
야머	<del>종사자처우개선</del>	82,029	183	6,538	3,190	5,722		1,500 11,502	2,964	35,920	913	2,559	2,264	3,002	622	2,098	3,054	'
교직원	역량개발지원	40	1	'	١	1	40	1	1	1	1	1	1	1	1	1	1	1
장	소계	82,069	183	6,538	3,190	5,722	1,540	11,502	2,964	35,920	913	2,559	2,264	3,002	622	2,098	3,054	1
	시설확충	104,625	89,125	'			200	1	1	15,000	'	'	'	1	١	١	ı	1
ָרָ בַּ	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	231	1	1	9	1	1	1	1	1	1	1	1	1	1	100	125	1
A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민간어린이집환경개선	1,280	1,000	1	1	1	1	1	1	ı	1	1	1	ı	1	150	130	1
0 H 0	어린이집환경개선	'	3,100	30	1	1	1	1	1	ı	1	1	86	20	1	١	ı	1
	소계	109,384	93,225	30	9	1	200	1	1	15,000	1	1	86	20	1	250	255	1
	보육료지원	49,919	808	4,800	1,577	20,645	1,446	1,392	1,120	11,538	599	'	2,360	38	'	1,286	3,417	1
년화 명 기의	기타경비지원	2,966	1	629	ı	1,661	12	265	١	ı	349	1	1	1	1	19	ı	1
	소계	53,694	808	5,459	1,577	22,306	1,458	1,657	1,120	11,538	849	١	2,360	38	1	1,305	3,417	1

圣

3,500 3,540 がなる 5,695 8 6,258 100 20 285 8 8 2 2 3 378 35 144 4,291 24 参好 6,184 2 2 3.077 74 10 103 8 3 1,452 44,136 4,555 황산 29 49 10 15,512 3 604 1126 600 117 표정 42 3,927 华 15,677 5,088 라 82 14,991 뉴 18,566 3,567 322,749 190,422 384 소광 12 21,153 2,034 3,308 1,631 2,572 9 9,604 5,216 27,602 100 451 인증어린이집운영비지원 인증어린이집종사자처우, 역량개발연구수당 인증어린이집환경개선 조력단운영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다문화보육 방과후보육 장애아전담,통합시설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회운영** 지방정보센터운영 부모·종사자교육 모니터링단운영 소계 행사지원 단체운영지원 2011 (표 皿-2-1 계속) なりなられる手できる。 7時

# 3.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보육특수시책은 시·도별 시책의 차이 이외에도 동일 시·도에서도 시·군·구별 특수시책도 차이가 많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군·구 전체 평균은 아동 1인당 51만원 수준이지만 최대와 최소가 각각 378만원, 62만원 수준으로 구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사업 내용 역시 매우 다양하다.

시·군·구 특수보육 사례로 서울시 강남구, 강원도 고성군, 전남 남원시 사례를 수록하였다. 시·군·구 특수보육 사례로 이들을 선정한 이유로 서울시 강남구는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은 보육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고, 고성군과 남원시는 시·군 사례 중 임의로 선정하였다.

강남구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보육특수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일 것이다. 서울시도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업 수와 소요예산이 많은데, 강남구는 여기에 더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어려운 사업은 유기농 식재료 지원, 취약보육 사업인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이다. 종사자 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영아반,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이외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지원한다. 이외에 출산 지원에 배정한 예산 규모가 크다(표 Ⅲ-3-1 참조).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는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주된 군 사업이고 2012년에 급간식비 추가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다(표 Ⅲ-3-2 참조).

전라북도 남원시의 사례를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주된 군 특수시책사업이고 급간식비 추가 지원, 냉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2012년에 야간보육파트 타임 도우미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다(표 III-3-3 참조).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운영비 추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인식 정도는 매우 낮다. 2010년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에서 특수시책사업 우선순위가 취약보육, 처우 개선 등에서 높았고 운영비 추가 지원에 대한 선호 비율은 낮았다(서문희·최혜선, 2010).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 특색사업 중에서 운영비 추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표 Ⅲ-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수보육시책: 2012년

단위: 천원, % 사업명 2011년 예산액 2012년 예산액 증감율 어린이집 운영지원 구립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133,033 332,581 150.0 구립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인건비 465,613 665,161 42.9 구립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지원 83,146 83,146 0.0 구립어린이집 취사보조부 인건비 251,160 251,160 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236,915 196,705 (97.3)민간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 37,701 56,630 50.2 민간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인건비 216,000 216,000 0.0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 696,000 795,000 14.2 서울형어린이집 추가지원 228,000 228,000 0.0 영유아반 지원(민간2세반) 420,000 504,000 20.0 영유아 유기농 식재료 지원 192,000 246,000 28.1 보육교직원 지원 구립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07,776 336,000 9.2 구립어린이집 교사 시간 외 근무수당 지원 170,692 206,900 21.2 구립어린이집 초과 근무교사 (석식비) 지원 20,250 9.8 18,450 민간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120,000 132,000 10.0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47,600 677,280 (33.9)민간시설장, 교사 연수 5,000 53,000 보육교사 교사 자녀 보육료 지원 67,680 71,064 5.0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인프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153,118 2,383,141 1456.4 환경개선비 지원 30,000 59,000 96.7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운영 316,707 316,707 0.0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운영 458,355 509,284 (10.0)보육비용 지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9,837,936 11,626,235 (15.4)보육료 차액지원 676,800 798,336 18.0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평가인증 관련 교재교구비 지원 27,200 36,500 (25.5)취약보육 운영지원 민간어린이집 시간연장 운영비 지원 16,800 16,800 0.0 시간연장 및 취약어린이집 운영 432,000 14.3 378,000 365일 24시간 공공어린이집 운영 973,845 799,520 (17.9)기타 보육인의 날 행사 등 기타 47,000 27,000 출산・양육 지원 2,280,000 2,900,000 27.2

자료: 보건복지부(2011).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표 Ⅲ-3-2〉 강원도 고성군 특수보육시책: 2012년

단위: 천원, % 2011년 예산액 2012년 예산액 증감율 사업명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 간식비 추가지원 0 13,668 동절기 난방비 4,320 4,320 0.0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 2,560 1,540 (39.8)어린이집 차량운행비(유류비) 지원 13,050 0 저소득층아동 입소지원 21,088 (8.0)19,400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5,040 4,580 (9.1)보육교직원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264 24,764 28.6 어린이집 종사자 직무향상교육 4,000 4.000 0.0 어린이집종사자 연수회 참석여비 1,500 1,500 0.0 종사자 격무수당 6,520 6,800 4.3 보육비용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1,520 3.7 11,948 기타 어린이 한마음 큰잔치행사 개최 등 16,200 18,024

자료: 보건복지부(2011).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표 Ⅲ-3-3〉 전라북도 남원시 특수보육시책: 2012년

단위: 천원, % 2011년 예산액 2012년 예산액 사업명 증감율 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농어촌 차량 운영비 7,560 100.0 3,780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42,720 42,360 (0.8)어린이집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지원 5,390 5,400 0.2 야간보육 파트타임 도우미 서비스 0 14,400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84,000 60,000 (28.6)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11,200 0 (100.0)보육교직원 지원 24시간 어린이집 교사 특별근무수당 4,977 (100.0)보육교사 장려수당 60,000 83,050 38.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61,410 353,360 (2.2)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34,440 34,440 0.0 보육인 역량강화사업 10,000 (100.0)보육비용 지원 어린이집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137,018 10,080 (92.6)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474,954 383,200 (19.3)취약보육 운영지원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2,000 0.0 2,000 기타 보육시책 벤치마킹 20,000 0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1).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 4. 소결

지방정부 보육 특수시책사업 현황에서 나타난 점에 의거하여 몇 가지 정책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특수시책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인건비 추가 지원, 교사 수당, 보육료 추가 지원 및 차액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많다. 간식비, 냉난방비, 차량운행비 등의 운영비 지원이 많은데, 간식비와 같은 운영비 지원은 사실 중복되는 지원이다. 보육 담당 공무원들도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는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시책을 변화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낸다. 그 시책이어린이집 수입과 직결될 경우에 더욱 그러함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특수보육시책 예산의 시·도 및 시·군·구 지방정부 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교사 수당의 경우가 그러하여, 경우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인접한 곳에서는 교사 이동이라는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화 시대의 장점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나 부모에게 격차를 야기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 예산의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 Ⅳ. 주요 사업 심층 검토

제IV장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로 구성하였다. 선별한 주제는 양육수당,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평가, 평가인증 운영체계이다. 양육수당은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쏠림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요하며, 평가인증 운영체계는 2013년 제3차 평가주기의 시작을 앞두고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심층 검토 주제로 선정하였다.

# 1. 양육수당

양육수당에 대한 검토는 양육수당의 적정 금액을 추정하고 지원 대상이나 지원 수준 등 관련 제도 변화 시에 부모들의 선택 방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사용된 자료는 2012년에 영아 부모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선행연구 조사 자료이다

### 가. 영아 양육수당 수혜 이유와 만족도

2012년 현재 양육수당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0, 1세는 전체 아동의 8% 정도 2세아는 3%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양육수당 수혜 가구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수당을 받는 이유는 다수인 58.0%가 아이가 어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2.5%는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바람직해서이며, 12.5%는 어린이집에 믿고 맡기기 어려워서라고 하였고 3.0%는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IV-1-1 참조).54) 부모의 약 10% 정도가 어린이집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54)</sup> 아동연령이나 부모 취업 상태별 차이는 양육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상 차이의 한계 와 조사 규모의 제한으로 설명을 생략함.

〈표 IV-1-1〉 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양육수당 지원 가구

단위: %(명) 어린이 인근에 부모가 아이가 돌봐줄 사람이 -집에 믿고 아이가 키우는 어린이 아프거나 구분 아직 기타 계(수) 장애가 있어서 말기기 어려워 어려서 있어서 바람직 없어서 전체 58.0 22.5 12.5 3.0 1.0 1.0 2.0 100.0(200)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59.7 22.6 11.3 3.2 0.8 1.6 0.8 100.0(124) 만1세(2010년생) 58.2 19.4 14.9 3.0 4.5 100.0(67) \_ 만2세(2009년생) 33.3 44.4 11.1 11.1 100.0(9) 맞벌이여부 맞벌이 22.2 100.0(9) 55.6 11.1 11.1 홀벌이 57.5 24.6 12.3 2.8 1.1 1.7 100.0(179) 일 안함 66.7 8.3 8.3 16.7 100.0(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표 IV-1-2〉 조건별 양육수당 지원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의향

단위: %(명)

	수	당 금액 동	-일		수당 상승		
구분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모름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모름	계(수)
전체	41.5	56.5	2.0	66.0	31.0	3.0	100.0(200)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42.7	55.6	1.6	64.5	32.3	3.2	100.0(124)
만1세(2010년생)	35.8	61.2	3.0	65.7	31.3	3.0	100.0(67)
만2세(2009년생)	66.7	33.3	-	88.9	11.1	-	100.0(9)
맞벌이여부							
맞벌이	33.3	55.6	11.1	44.4	44.4	11.1	100.0(9)
홀벌이	41.3	58.1	0.6	67.6	29.6	2.8	100.0(179)
일 안함	50.0	33.3	16.7	58.3	41.7	-	100.0(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이들 가구들은 어린이집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수당 액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41.5%가 양육수당을 받고 56.5%가 보육료 지원을 받겠다고 응답한 반면에 수당이 상향 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66.0%가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하였고 31.0%는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즉, 조건에 따라서 양육수당 선택은 24.5%p의 차이를 보였다. 자녀 연령별 차이는 두 조건 모두 연령별로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1-2 참조).

이들 가구들의 양육수당 만족도는 15.5% 정도는 만족하는 반면에 30.5%는 만

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과반수 이상인 54.0%는 보통이라는 중간 입장을 보 였다. 아동 연령별로는 0세아의 만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1-3 참조).

〈표 IV-1-3〉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 안함	전혀 만족 안함	계(수)	5점 평균
전체	2.0	13.5	54.0	21.5	9.0	100.0(200)	3.22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1.6	16.9	55.6	20.2	5.6	100.0(124)	3.11
만1세(2010년생)	1.5	9.0	52.2	22.4	14.9	100.0(67)	3.40
만2세(2009년생)	11.1	-	44.4	33.3	11.1	100.0(9)	3.33
F							2.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 p < .1

# 나. 양육수당 정책 관련 의견

양육수당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정책 대안별 양육 수당 신청의사, 적정 금액, 기타 전 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과 일과의 관련성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개선 사항

현재 양육수당은 차상위 이하에게만 적용하며 월 지원금액은 0세아 20만원, 1 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 보기는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지원액 인상으로 제시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64.7%의 다수가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액 인상을 선택하였고, 지원대상 확대만을 선택한 비율이 15.7%이며 지원액 인상만 을 선택한 비율이 17.0%이다. 정부 정책 수혜별로 보면 양육수당 수혜자가 지원 대상을 인상하자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보육료 지원 수혜자가 지원 액을 인상하자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고 미혜택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응답 비율이 높다(표 IV-1-4 참조).

〈표 IV-1-4〉 양육수당 지원정책 우선 보완 사항

단위: %(명)

 구분	대상 확대+ 지원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지원액 인상	기타/모름	계(수)
전체	64.7	15.7	17.0	2.6	100.0(1,000)
양육수당 수혜	57.5	38.0	3.5	1.0	100.0(200)
보육료 지원	66.4	16.0	14.8	2.8	100.0(500)
미혜택	66.7	23.3	6.7	3.3	100.0(3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다음은 각 수혜유형을 특성별로 나누어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양육수당 수급 부모는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지원액의 인상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연령별 지원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금액 확대, 소득수준이 높으면 대상과 금액 동시확대 필요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표 IV-1-5 참조).

〈표 IV-1-5〉 양육수당 지원정책 우선 보완 사항: 양육수당 지원 가구

단위: %(명) 대상 확대+ 지워대상 구분 지원액 인상 기타 계(수) 지원액 인상 확대 전체 57.5 38.0 3.5 1.0 100.0(200)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60.5 36.3 3.2 100.0(124) 만1세(2010년생) 52.2 40.3 4.5 3.0 100.0(67) 만2세(2009년생) 55.6 44.4 100.0(9) 맞벌이여부 맞벌이 44.4 44.4 11.1 100.0(9) 홀벌이 58.1 37.4 3.4 1.1 100.0(179) 일 안함 58.3 41.7 100.0(1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5.4 41.0 2.9 0.7 100.0(139) 200-299만원 64.3 28.6 4.8 2.4 100.0(42) 300-499만원 87.5 12.5 100.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표 IV-1-6〉 양육수당 지원정책 우선 보완 사항: 보육료 지원 가구

단위: %(명) 대상 확대+ 지원대상 구분 지원액 인상 기타/모름 계(수) 지원액 인상 확대 전체 14.8 2.8 100.0(500) 66.4 16.0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2.2 100.0(93) 67.7 12.9 17.2 만1세(2010년생) 68.3 14.2 14.2 3.3 100.0(183) 만2세(2009년생) 64.3 18.8 14.3 2.7 100.0(224) 맞벌이여부 맞벌이 64.4 17.4 15.0 3.2 100.0(247) 홀벌이 68.5 14.9 14.1 2.4 100.0(24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0.5 12.6 12.6 4.2 100.0(95) 200-299만원 69.6 13.9 15.8 0.6 100.0(158) 300-399만원 68.4 12.0 17.1 2.6 100.0(117) 400-499만원 55.7 100.0(61) 26.2 16.4 1.6 500만원 이상 58.6 24.1 10.3 6.8 100.0(58)

주: 부모 미취업 5가구 제외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표 IV-1-7〉 양육수당 지원정책 우선 보완: 미혜택 가구

단위: %(명) 대상 확대+ 구분 대상 확대 지원액 인상 기타 계(수) 지원액 인상 전체 23.3 6.7 3.3 100.0(300) 66.7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70.0 23.6 4.5 1.8 100.0(110) 만1세(2010년생) 62.0 25.0 10.0 3.0 100.0(100) 만2세(2009년생) 67.8 21.1 5.6 100.0(90) 5.6 맞벌이여부 맞벌이 66.7 15.2 16.7 1.5 100.0(66) 홀벌이 25.8 3.9 3.9 66.5 100.0(23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1.3 4.3 4.3 100.0(23) 200-299만원 72.5 2.0 100.0(102) 19.6 5.9 300-399만원 65.3 24.0 6.7 4.0 100.0(75) 400-499만원 50.0 37.0 8.7 4.3 100.0(46) 500만원 이상 60.0 26.0 10.0 4.0 100.0(50)

주: 부모 미취업 1가구 제외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두번째로 보육료 지원 부모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금액과 대상 확대 모두 확대 필요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표 IV-1-6 참조).

세 번째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부모는 자녀연령 별로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는 금액과 대상 확대 모두 확대 필요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지원 대상 확대만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표 IV-1-7 참조).

### 2) 양육 수당 신청 의사

다음은 양육수당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수준 정책 대안별로 조합하여 지원 금액은 그대로 둔 채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 대하는 방안, 지원금액은 상향조정하고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는 방안, 지원 금액은 그대로 둔 채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 지원금액은 상향 조정하고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 양육수 당을 받을 것인지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표 IV-1-8>은 지원 금액을 그대로 둔 채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면 전체 양육수당 미수급자의 33.1%,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 전체 양육수당 미수급 자의 34.9%가 양육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상 확대에 따른 차이는 1.8%p에 불과하다. 한편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면 전체 양육수당 미수급자의 39.6%,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 전채 양육수당 미수급 자의 44.5%가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하여 4.9%p의 차이를 나타냈다.

양육수당을 받겠다는 비율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면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금액이 동일하면 약 18%,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대상 확대 정도에 따라 각각 24.8%, 29.4%가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자의 금액 상승 시 어린이집 이용 중단 비율 25~30% 수준은 2011년 조사(서문희·이윤진·유해미·송신영·김세현, 2011)에서 양육수당 금액을 보육료 지원단가와 같이 0세 월 39만원, 1세 35만원, 2세 28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할 경우에 약 30%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한 것과 유사하다.

미혜택자는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금액이 동일하면 확대 정도에 따라 58.0%,

62.3%,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대상 확대 정도에 따라 각각 64.3%, 69.7%가 양육 수당을 받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8〉 금액과 대상 변화에 따른 양육수당 신청의향: 양육수당 미수급자

단위: %(명)

	<u> </u>						
	7	0%로 확대	H	1	00%로 확	대	
구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모르겠음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모르겠음	계(수)
금액 동일							
전체	33.1	65.4	1.5	34.9	63.9	1.3	100.0(800)
보육료	18.0	79.8	2.2	18.4	79.8	1.8	100.0(500)
미혜택	58.3	41.3	41.3 0.6		37.3	0.3	100.0(300)
$X^2(df)$		na					
금액 상승							
전체	39.6	58.9	1.5	44.5	54.3	1.3	100.0(800)
보육료	24.8	73.2	2.0	29.4	68.8	1.8	100.0(500)
미혜택	64.3	35.0	0.7	69.7	30.0	0.3	100.0(300)
$X^2(df)$		122.65(2)**	*		123.58(2)**	*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 p < .001.

〈표 IV-1-9〉 금액과 대상 변화에 따른 양육수당 신청의향: 양육수당 미수급자

단위: %(명)

					리 기 · ( ( )
	70%	확대	100%	확대	训(人)
구분	금액동일	금액조정	금액동일	금액조정	계(수)
전체	33.1	39.6	34.9	44.5	100.0(800)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49.8	59.6	50.2	60.6	100.0(203)
만1세(2010년생)	33.9	39.2	35.7	44.2	100.0(283)
만2세(2009년생)	21.7	27.1	24.2	34.4	100.0(314)
맞벌이여부					
맞벌이	20.1	24.6	21.4	30.4	100.0(313)
홀벌이	41.8	49.5	43.9	53.8	100.0(48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9.7	33.9	26.3	34.7	100.0(118)
200-299만원	37.3	43.8	36.5	48.8	100.0(260)
300-399만원	34.4	42.2	38.5	49.5	100.0(192)
400-499만원'	31.8	38.3	37.4	42.1	100.0(107)
500만원 이상	26.9	33.3	30.6	38.9	100.0(108)

주: 부모 미취업 6가구 제외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 IV-1-9>는 양육수당 미수급 가구 전체의 아동과 부모 특성별 조건에 따른 양육수당 수혜 의사를 나타낸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수당 수혜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아서 0세아는 49.8%~60.6% 정도가 양육수당을 선호하고, 만 1세는 33.9~54%, 만 2세아는 21.7~34.4% 정도로 추정된다. 가구소득별로는 월소득수준이 200~500만원인 집단에서 양육수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1-10>은 보육료 지원 및 미혜택 가구 제 특성별로 조건변화에 따른 양육수당을 받겠다는 부모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보육료 지원 가구는 연령별로 보면 조건에 따라서 0세아는 26%~40%, 만 1세아는 20%~30%, 만 2세아는 12%~25%가 양육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수준별로는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표 IV-1-10〉 보육료 지원 및 미혜택 가구의 양육수당 지원 금액과 대상 변화에 따른 양육수당 신청 의향 비율

단위: %(명)

단위: %(명)										
		보육료 지원 가구				미혜택 가구				
	70%로 확대		1	000%로		70%로 확대		100%로		
구분	70701	- 99	확	대	계(수)	70/01		확		계(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711(1)	금액	금액	금액	금액	711(1)
	동일	상승	동일	상승		동일 <sup>1)</sup>	상승	동일	상승	
전체	18.0	24.8	18.4	29.4	100.0(500)	58.3	64.3	62.3	69.7	100.0(300)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25.8	38.7	28.0	39.8	100.0(93)	70.0	77.3	69.1	78.2	100.0(110)
만1세(2010년생)	21.3	26.8	20.2	29.5	100.0(183)	57.0	62.0	64.0	71.0	100.0(100)
만2세(2009년생)	12.1	17.4	12.9	25.0	100.0(224)	45.6	51.1	52.2	57.8	100.0(90)
맞벌이여부										
맞벌이	14.6	16.6	12.6	21.9	100.0(247)	40.9	54.5	54.5	62.1	100.0(66)
홀벌이	21.8	33.1	24.6	37.1	100.0(248)	63.1	67.0	64.4	71.7	100.0(233)
일 안함	-	20.0	-	20.0	100.0(5)	100.0	100.0	100.0	100.0	100.0(1)
가구소득										1
200만원 미만	20.0	26.3	16.8	26.3	100.0(95)	69.6	65.2	65.2	69.6	100.0(23)
200-299만원	20.9	29.7	20.3	32.3	100.0(158)	62.7	65.7	61.8	74.5	100.0(102)
300-399만원	17.9	24.8	19.7	35.9	100.0(117)	60.0	69.3	68.0	70.7	100.0(75)
400-499만원'	14.8	16.4	13.1	21.3	100.0(61)	54.3	67.4	69.6	69.6	100.0(46)
500만원 이상	12.1	19.0	19.0	24.1	100.0(58)	44.0	50.0	44.0	56.0	100.0(50)

주: 1)  $X^2$ =6.607(4)이며 이외는 모두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미혜택 가구의 부모들은 양육수당의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조건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보다는 양육수당 지원을 선호하며. 특히 자녀 연령이 만 0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홀벌이 가구에서 양육수당 선호가 뚜렷하다.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액이 인상될수록 보육료 지원보다 양육수당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증가한다. 미혜택 가구에서는 지원액 인상보다는 지원 대상 확대가 양육수당 이용 비율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3) 양육수당 적정 액수

다음은 양육수당 적정 액수를 알아보았다. 미혜택 가구의 양육수당 금액에 대한 의견으로 전체적으로 13% 정도만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31.3%는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55.6%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아동 연령별로는 만 1세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표 IV-1-11 참조).

〈표 IV-1-11〉 양육수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미혜택 가구

단위: %(명) 구분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보통 별로 아님 전혀 아님 계(수) 전체 0.3 12.7 31.3 37.3 18.3 100.0(300)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0.9 14.5 26.4 39.1 19.1 100.0(110) 만1세(2010년생) 9.0 29.0 41.0 21.0 100.0(100) 만2세(2009년생) 14.4 40.0 31.1 14.4 100.0(90) 맞벌이여부 맞벌이 30.3 100.0(66) 13.6 34.8 21.2 홀벌이 12.4 31.8 37.8 100.0(233) 0.4 17.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7 17.4 52.2 21.7 100.0(23) 200-299만원 1.0 12.7 30.4 37.3 18.6 100.0(102) 300-399만원 10.7 28.0 41.3 20.0 100.0(75) 400-499만원 43.5 8.7 32.6 15.2 100.0(46) 500만원 이상 20.0 34.0 30.0 100.0(50) 16.0

주: 부모 미취업 1가구 제외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영유아 부모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은 30만원이 가장 많다. 전체의 35% 정도가 30만원이 적정하다고 하였다. 수혜여부별로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미혜택 가구는 30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연령별로 최대 77만 5천원을 지원받고 있는 보육료 지원 가구의 기대 수준은 40만원대로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1-12 참조).

〈표 IV-1-12〉 지원 유형별 양육수당의 적정 액수

단위: %(명), 만원 구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미혜택 29만원 이하 35.3 15.2 23.4 25.6 30만원 35.6 46.7 27.6 41.4 31~49만원 181. 13.8 17.3 19.3 50만원 13.9 8.5 19.9 7.4 51만원 이상 1.0 1.9 9.7 17.7 계(수) 100.0(1,000) 100.0(200) 100.0(500) 100.0(300) 중위값 30.0 30.0 40.0 30.0 평균(표준편차) 36.9(18.6) 43.5(223) 29.8(11.1) 31.6(1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표 IV-1-13〉 지원 유형별 양육수당 선택을 위한 양육수당 금액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미혜택
전체	36.9(18.6)	31.6(10.2)	43.5(22.3)	29.8(11.1)
자녀연령				
만0세(2011년생)	35.4(16.3)	32.6(9.9)	44.4(23.0)	31.5(12.8)
만1세(2010년생)	36.9(19.5)	30.3(10.9)	44.1(23.2)	28.9(10.1)
만2세(2009년생)	38.3(19.7)	27.8(9.7)	42.6(21.3)	28.6(9.7)
F	1.88	1.80	0.31	2.07
맞벌이여부				
맞벌이	45.4(23.5)	34.4(9.8)	48.9(25.1)	34.4(12.4)
홀벌이	33.0(14.3)	31.5(10.3)	38.2(17.9)	28.5(10.4)
일 안함	34.2(12.2)	31.3(9.6)	44.0(13.4)	20.0
F	51.99****	0.30	14.51***	8.0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5.4(15.8)	31.8(10.8)	41.9(20.6)	30.0(8.9)
200-299만원	35.9(17.6)	31.8(9.4)	41.7(20.4)	28.7(11.8)
300-399만원	38.7(21.1)	27.5(7.6)	45.8(23.8)	28.8(10.5)
400-499만원	39.3(20.1)	30.0(7.1)	45.2(23.2)	32.0(12.0)
500만원 이상	39.0(21.8)	=	46.2(26.9)	31.6(10.8)
F	1.86	0.35	0.92	1.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sup>\*\*\*</sup> p < .001

< IV-1-13>은 영유아 부모 특성별로 부모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의 평균을 나타낸다. 전체 평균은 37만원인데, 수혜여부별로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미혜택 가구는 30만원 내외이고 보육료 지원 가구의 기대 수준은 43만 5천원이다. 제 특성별로는 양육수당의 적정 액수에 대한 응답은 맞벌이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 4) 관련 의견

#### 가) 고소득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다음은 전 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40.7% 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59.3%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수급형태별로는 양육수당 수급자는 30.1%, 보육료 지원자는 36.0%, 미혜택 부모는 44.8%가바람직하다고 하여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IV-1-14 참조).

〈표 IV-1-14〉 고소득층에게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비율

				(	<u> 근위: %(명)</u>
구분	비율	(수)	구분	바율	<u>(</u> 수)
전체	40.7	(1,001)			
수급형태			맞벌이여부		
양육수당	30.1	( 73)	맞벌이	47.7	(302)
보육료	36.0	(342)	홀벌이	38.0	(687)
미혜택	44.8	(585)	일 안함	18.2	(11)
$X^2(df)$	10.609(2)**		$X^2(df)$	10.50(2)**	
부인 학력			가구소득		
중졸이하	9.1	(11)	200만원 미만	24.7	(166)
고졸	36.3	(212)	200-299만원	32.5	(329)
전문대 재학 이상	42.2	(775)	300-399만원	40.9	(230)
$X^2(df)$	6.96(2)*		400-499만원	58.1	(124)
			500만원 이상	64.2	(134)
			$X^2$ (df)	72.83(4)***	

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함.

모의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고소득층에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차이는 유의한 차이이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부모들은 24.7%만이 동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sup>\*</sup> p < .05, \*\* p < .01, \*\*\* p < .001

의하지만 500만원 이상인 부모들은 64.2%가 동의한다. 즉 사회경제적 계층 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나) 일과의 관련성

본 조사 대상자는 30.2%만이 맞벌이이고 68.7%는 홀벌이이며 1.1%는 부부가모두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상태별로는 양육수당 수급자는 4.1%만이 맞벌이이며 보육료 지원은 49.6%가 맞벌이이고 미혜택자는 22.1%가맞벌이이다(표 IV-1-15 참조).

〈표 IV-1-15〉 수혜 형태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 여부

				단위: %(명)
 구분	홀벌이	맞벌이	둘다 근로하지 않음	계(수)
전체	68.7	30.2	1.1	100.0(1,001)
양육수당	89.0	4.1	6.8	100.0(73)
보육료	49.3	49.6	1.2	100.0(341)
미혜택	77.6	22.1	0.3	100.0(585)
7 17-17 11.19	1.1 12 -1			

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 IV-1-16>은 맞벌이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지원 금액이 오를 경우 부부 중 1인이 일을 그만둘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38.7%가 일을 그만둘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급 상태별로는 양육수당 수급자는 66.7%, 보육료 지원은 41.8%, 미혜택자는 34.1%가 일을 그만둘 의향을 나타냈고, 아동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0세아 부모는 40.5%, 만 1, 2세아 부모는 각각 35.7%, 40.7%로 응답에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소득수준별로는 400만원 미만이 일을 그만둔다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400만원대는 38.6%, 500만원 이상은 17.4%로 감소한다.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연구에서도 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오를 경우 35.8%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때 희망 금액은 47만원이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지원 금액이 오를 경우 경제활동을 지속할 지 여부는 수급형태와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열악한 환경일 수록 자녀를 집에서 보육하고자 하는 태도가 강하고, 이는 어머니의 취업이나 아 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16〉 양육수당 대상 확대 및 금액 증가시 부부 중 1인이 일을 그만둘 의향: 맞벌이 가구 대상

					단위: %(명)
구분	있음	(수)	구분	있음	(수)
전체	38.7	(302)	전체	38.7	(302)
수급형태			부인 학력		
양육수당	66.7	(3)	중졸 이하	50.0	(2)
보육료	41.8	(170)	고졸	56.8	(44)
미혜택	34.1	(129)	전문대 재학 이상	35.4	(254)
$X^2(df)$	na		$X^2(df)$	na	
자녀연령			가구소득		
만0세(2011년생)	40.5	(74)	200만원 미만	53.3	(15)
만1세(2010년생)	35.7	(115)	200-299만원	53.2	(62)
만2세(2009년생)	40.7	(113)	300-399만원	52.1	(73)
$X^2(df)$	0.75(2)		400-499만원	38.6	(57)
			500만원 이상	17.4	(86)
			$X^2(df)$	28.41(4)***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임. \*\*\* p < .001.

# 다. 양육수당 지원 시 시설 이용 의향

다음은 영아 비용 지원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어린이집 이용을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표 IV-1-17>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에게 현재와 같이 0세 월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지원할 경우에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데, 단지 4.5%만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곳에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고, 휴직 중 어머니가 그러한 응답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다음 <표 IV-1-18>은 앞에서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겠다는 응답자에게 만약에 양육수당 금액을 보육료 지원단가와 같이 0세 월 39만원, 만 1세 35만원, 만 2세 28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할 경우에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이를 보면, 23.9%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곳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표 IV-1-17〉 현재 수준의 양육수당 지원 시 어린이집 이용 의향

단위: %(명)

						<u> </u>
구분	계속 보냄	집에서 돌봄	다른 곳 보냄	모르겠음	계(수)	$x^2(df)$
전체	93.8	4.5	.2.0	1.6	100.0(964)	
지역						
대도시	96.4	2.4	0.3	0.9	100.0(338)	16 4(6)*
중소도시	90.3	6.8	0.2	2.7	100.0(412)	10.4(0)
읍·면	96.3	3.3	-	0.5	100.0(214)	
모 취업						
취업중	97.0	2.0	-	1.0	100.0(229)	11 0/6)
휴직중	87.0	13.0	-	-	100.0(23)	11.0(0)
미취업	92.5	5.3	0.3	1.9	100.0(636)	

자료: 서문희·이윤진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p < .05

〈표 IV-1-18〉 양육수당의 상향 조정 시 어린이집 이용 의향

단위: %(명)

					연기 ( ( ( )
구분	계속 보냄	집에서 돌봄	다른 곳 보냄	모르겠음	계(수)
전체	70.7	23.9	1.0	4.4	100.0(904)
지역					
대도시	<i>7</i> 7.0	19.9	0.9	2.1	100.0(326)
중소도시	65.3	27.2	1.3	6.2	100.0(372)
읍·면	70.4	24.3	0.5	4.9	100.0(206)
모 취업					
취업중	82.8	13.1	0.7	3.4	100.0(290)
휴직중	80.0	15.0	-	5.0	100.0(20)
미취업	64.3	29.6	1.2	4.9	100.0(588)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59.7	33.8	-	6.5	100.0(77)
150~199만원	73.2	23.6	0.8	2.4	100.0(127)
200~249만원	68.7	25.3	-	6.1	100.0(198)
250~299만원	66.7	24.4	3.8	5.1	100.0(156)
300~349만원	69.0	27.7	0.6	2.6	100.0(155)
350~399만원	75.4	21.3	-	3.3	100.0(61)
400~449만원	83.0	10.6	2.1	4.3	100.0(47)
450만원 이상	81.9	13.5	-	4.8	100.0(83)

자료: 서문희·이윤진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러한 응답은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 순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 수록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이 많아서, 소득 150만 원 미만은 1/3 이상이 이러한 응답을 하였고, 가구소득 150~399만원은 20%대이 며 400만원 이상이 10%대로 낮아졌다.

### 라. 소결

이상과 같은 결과와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 대체제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은 현재보다는 다소 증액되어야 한다. 현재 수혜자 중 만족한다는 비율은 15.5% 수준이다.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3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양육수당 미수혜자는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및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비용이 증가할 경우에 양육수당을 받을 생각에 대해서는 각각 33.1%, 34.9%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자도 지원을 보육료 수준으로 확대하면 23.9%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였다. 아이를 직접 돌보겠다는 비율은 소득수준별로 33.8%~13.5%로 나타나서 지원 수준을 크게 올릴 경우에 저소득층 아동의 기관 이용 기회 박탈 가능성이 우려된다.

소득 제한 없는 양육수당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약 59%가 부정적으로 응답 하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서, 특정 정책에 대한 계 층 간의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수당 정책은 주의가 필요한 정책으로 정책적 접근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본 조사결과는 일부 학자들의 취약계층 아동의 기관 이용 기회 축소 가능성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접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에도 부작용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의 확대나 지원 금액 확대 조정 시에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한다.

## 2.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제2절에서는 인천시 남동구에서 민간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 공무원 등 관계자 면담과 부모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범사업이 부모, 아동 및 어린이집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가. 사업 개요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이용시간 개념이 없이 12시간 운영시간을 이용시간과 동일시하고 있고, 8시간 근로를 전제로 산출한 보육료 단가를 12시간 종일제 보육단가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동의 불필요한 장시간 보육, 교사의 과중한 부담등의 부작용이 과제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 해결이 정책과제로 채택되었다(서문희·최윤경·최혜선·성혜영, 2010). 따라서 정부가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을모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기본 사항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서 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닫는 운영시간은 현행 12시간을 유지하되, 이와는 별개로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 도입하였다. 우선 보육과정은 크게 정규 보육과정과 연장 보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정규보육과정은 종일형과 단축형으로 나누었으며, 연장 보육과정은 단축형 연장과야간 연장형으로 구분하였다. 종일형은 12시간의 보육과정으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단축형은 8시간의 보육과정(07:30~15:30)으로 설정하였다. 단축형 연장은단축형 이용 부모가 일시적인 수요에 따라 추가 이용하고, 야간연장형은 종일형이용 부모의 추가 수요에 따라 저녁 7시 30분 이후에 운영하는 보육과정이다.

반 구성은 어린이집 규모, 편의 및 지역규모별 부모 수요에 맞추어 가능한 경우 연령별로 단축형 및 종일형 전용반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 형편 등에 따라 별도로 반을 재편하지 않고, 종전의 반 유지도 가능케 하였으며, 단축형 이후의 오후 시간대에는 혼합반 재편성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축형과 종일형 정규반에는 현행처럼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단축형 이후 시간대의 혼합반에는 시간제 보육교사 배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

다. 시간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 단위로 합산하여 근무경력으로 산입하 도록 하였다.

단축형과 종일형 보육료 격차를 80:100 비율로 적용하여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단축형 과정 이용 시 부모의 추가 부담분을 인하한다는 원칙이다. 인하되는 금액은 만 3세는 51,000원, 만 4, 5세는 49,000원으로 지방정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과 정부지원 단가 간의 차액은 면제해 주는 방법이다. 단축형 과정의 보육료의 급·간식비에는 급식비 1회와 간식비 1회가 포함되고, 개별 어린이집의 단축형 수납액은 기존 종일형 수납액의 80%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였다.

단축형 보육과정을 선택한 부모는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오후 3시 30분 이후에는 특별활동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수 없다.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단축형이 아닌 종일형 보육과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단축형 보육과정을 선택한 부모가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오후 3시 30분을 경과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는 있다. 하루 이용시간 제한은 없으며 19시 30분 이후에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하여 월 10시간 한도로 단축형 연장 보육료를 지원한다.

#### 2) 시범사업 지역 특성

시범사업 지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인천시는 두 가지 보육정책의 특성이 있다. 첫째는 특별활동의 제한과 낮은 상한액이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4개월 이상 영아는 최대 월 3만원, 민간시설과 가정시설의 영유아는 최대 월 4만원씩을 특별활동비로 수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은 금액이다. 둘째는 4세 무상보육이다. 인천시는 5세 누리과정 이외에 만 4세아동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 5세의 아동 총 17,531명에게 교육·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6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본 시범사업 이후의 정책이므로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

시범사업 참여 민간어린이집 10개소이며, 10개 어린이집 아동 총 921명 중 단축형 보육 이용 아동은 294명이었다(표 IV-2-1 참조).

시범사업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로 총 5개월간이었다. 시범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예산은 약 6,600만원 정도이었다.

〈표 IV-2-1〉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수

									단위	위: 명,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총계
현원(A)	141	46 57	72	45	47	153	110	56	194	921
단축형(B)	34	4 19	48	6	6	37	40	16	85	294
비율(B/A)	24.1	8.7 33.3	66.7	13.3	12.8	24.2	36.4	28.6	43.8	31.9

자료: 인천시 남동구청(2012). 내부자료.

### 나.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및 미이용 사유

단축형 보육 참여 아동이 단축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과반수 이상이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하였고, 30.4%는 자녀를 기관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이며 11.2%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4.0%는 자녀가 기관에 오래 있기 싫어해서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2〉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사유: 이용자

단위: %(명) 오래 두고 싶지 자녀가 다른 가격이 오래 있기 구분 기타 계(수) 교육 저렴해서 않아서 싫어해서 프로그램 전체 30.4 11.2 100.0(133) 52.8 4.0 1.6 연령 만 3세 50.0 50.0 100.0(2) 만 4세 57.0 27.9 5.8 7.0 2.3 100.0(86) 만 5세 48.9 28.9 2.2 17.8 2.2 100.0(45) 모취업 100.0(21) 종일제 출근 42.9 19.0 4.8 33.3 시간제 출근 22.2 100.0(9) 66.7 11.1 미취업 53.4 34.1 4.5 5.7 2.2 100.0(8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33.3 16.7 50.0 100.0(6) 150~200만원 미만 66.7 8.3 16.7 8.3 100.0(12) 200~300만원 미만 3.9 56.9 31.4 7.8 100.0(51) 300~500만원 미만 59.2 26.5 14.3 100.0(49) 500만원 이상 100.0(9) 44.4 5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취업모는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미취업모는 자녀를 기관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라는 비율이 높다. 취업모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단축형을 선택하였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자녀를 기관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 단축형을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표 IV-2-2 참조).

단축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귀가 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부모가 대다수이고 조부모가 12.0%, 형제자매 2.3%이다(표 IV-2-3 참조).

엄마가 일하지 않으면 부모가 돌보지만 취업모의 경우 종일제 출근하는 경우에도 52.4%가 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다.

〈표 IV-2-3〉 어린이집 하원 후 자녀 보육자: 이용자

단위: %(명)

				L71. 70(8)
구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계(수)
전체	85.7	12.0	2.3	100.0(133)
만 3세	100.0	-	-	100.0(2)
만 4세	83.7	15.1	1.2	100.0(86)
만 5세	88.9	6.7	4.4	100.0(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표 IV-2-4〉 단축형 보육서비스 미이용 사유: 미이용자

단위: %(명)

구분	부모가 다 취업중	모 미취업이나 어린이집이 아이에게 더 좋음	모 미취업이나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보육료 전액 지원이므로	계(수)
전체	67.0	17.0	12.5	3.4	100.0(88)
만 3세	42.9	28.6	28.6	-	100.0(7)
만 4세	68.2	18.2	9.1	4.5	100.0(44)
만 5세	70.3	13.5	13.5	2.7	100.0(37)

주: 시범사업 미이용자(125명) 중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부모(37명)를 제 외한 나머지 미이용자(88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단축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유는 미취업모를 중심으로 보면 38.0%는 모가 미취업이나 다른 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나 51.7%는 모 미취업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이고 10.3%는 보육료 전액 지원이므로 종일제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표 IV-2-4 참조).

전체적으로는 67.0%는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고, 12.5%는 모가 미취업이나 다른 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나 17.0%는 모 미취업이나 어린 이집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이고 3.4%는 보육료 전액 지원이므로 종일제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표 IV-2-4 참조).

#### 다. 이용시간

### 1) 등하원 시각

단축형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어린이집 등원시각은 차이가 있다. 시범사업의 마지막 달인 2012년 2월을 보면 단축형 이용 아동은 8시 30분 이후에 등원하고, 약 90%는 9시 이후에 등원하였다. 시범사업이 끝난 2012년 3월과 비교해 보면 단축형 이용자나 일반 아동이나 등원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다(표 IV-2-5 참조).

〈표 IV-2-5〉 어린이집 등원시각: 어린이집 도착 기준

단위: %(명)

구분	2012 կ	년 2월	2012년 3월 현재			
うぜ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8시 이전	-	5.6	-	5.6		
8시~8시30분 이전	-	6.4	1.5	5.6		
8시30분~9시 이전	10.5	23.2	9.8	24.8		
9시~9시30분 이전	33.8	25.6	34.6	25.6		
9시30분~10시 이전	42.9	28.0	44.4	28.0		
10시 이후	12.8	11.2	9.8	10.4		
계(수)	100.0(133)	100.0(125)	100.0(133)	100.0(1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귀가 시각은 시범사업의 마지막 달인 2012년 2월을 살펴보면 단축형 이용 아동은 27.8%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고 47.4%가 오후 3시~3시 반 사이, 14.3%가오후 3시 반~4시 사이에 귀가하여 모두 89.5%가 오후 4시 이전에 귀가하고 약10% 정도가 4시 이후에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6 참조).

시범사업이 끝난 2012년 3월과 비교해 보면 일반 아동 귀가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은 17.3% 오후 3시이전에 귀가하고 42.1%가 오후 3시~3시 반 사이, 15.0%가 오후 3시 반~4시 사

이에 귀가하여 74.4%가 오후 4시 이전에 귀가하고, 1/4 정도는 4시 이후에 귀가한다. 즉, 종일제까지는 아니어도 전반적으로 귀가시각이 다소 늦어졌음을 알수 있다.

〈표 IV-2-6〉 어린이집 하원시각: 어린이집 출발 기준

단위: %(명)

271.74(8)						
구분	2012 է	년 2월	2012년 3월 현재			
↑ <del></del> 世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15시 이전	27.8	5.6	17.3	1.6		
15시~15시30분 이전	47.4	9.6	42.1	13.6		
15시30분~16시 이전	14.3	4.0	15.0	4.0		
16시~16시30분 이전	6.0	7.2	9.0	8.8		
16시30분~17시 이전	-	10.4	5.3	9.6		
17시~17시30분 이전	3.0	26.4	6.0	27.2		
17시30분~18시 이전	0.8	11.2	3.0	13.6		
18시 이후	0.8	25.6	2.3	21.6		
계(수)	100.0(133)	100.0(125)	100.0(133)	100.0(125)		
$X^2(df)$	139.36(7)***		92.02	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 p < .001

그러나 시범사업 시 단축형 이용아동의 상당수는 3월에도 비교적 일찍 귀가하였다. 이는 시범사업 이전에도 비교적 일찍 귀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서문희·양미선, 2011) 결과,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26.7%가 3시 이전에 귀가한다는 조사결과와 같은 것으로 볼수 있다.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도착시간은 2012년 3월, 2월 모두 9시 30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 출발시간도 2012년 3월, 2월 모두 15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7 참조).

〈표 IV-2-7〉 어린이집 등·하원시각 최빈치

단위: (명)

		<u> </u>
구분	등원시간 최빈치(사례수)	하원시간 최빈치(사례수)
2012년 3월	9시 30분(52), 9시 00분(47)	15시 00분(58), 17시 00분(32)
2012년 2월	9시 30분(55), 9시 00분(46)	15시 00분(55), 17시 00분(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 2) 이용시간

어린이집 도착시간과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으로 산출한 이용시간은 단축 형과 종일제 아동이 차이를 보이지만 조사 시점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단축형 과 종일제 아동이 2월에는 각각 5시간 38분, 7시간 5분이고, 3월에는 각각 6시 간 16분, 7시간 57분이다(표 IV-2-8 참조).

〈표 IV-2-8〉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평균

				단위: (명)
	구분	2월 (표준편차)	3월 (표준편차)	 (수)
Ę	· - - - - - - - - - - - - - - - - - - -	5시간 38분(1시간 21분)	6시간 16분(1시간 44분)	(133)
3	증일제	7시간 5분(3시간)	7시간 57분(2시간 43분)	(125)
্	<u></u> 번체	6시간 48분(1시간 55분)	7시간 3분(2시간 43분)	(2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표 IV-2-9〉 어린이집 희망 운영시간

		단위: (명)
구분	희망 운영시간 (표준편차)	(수)
단축형	9시간 25분 (2시간 17분)	(133)
종일제	10시간 31분 (2시간 5분)	(125)
전체	9시간 56분 (2시간 5분)	(2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한편으로 부모들이 바라는 어린이집 이용 운영시간은 전체적으로 10시간 정도 이며, 단축형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약 1시간 정도의 차이를 보여서, 단축형 부모는 평균 9시간 25분, 종일제 부모는 10시간 31분으로 나타났다(표 IV-2-9 참조).

이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자신의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성을 향상 열어 두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 단축형 보육서비스 실시에 따른 변화

어린이집 이용시간 단축형 사범사업에 따른 변화를 이용 부모와 아동 측면, 종일제 이용 부모, 운영자와 교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용자 측면

### 가) 보육료 인하

부모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보육료 감면이다.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부모들의 보육료 감면 액수는 만 3세아 51,000원, 만 4~5세아 49,000원이었다(표 IV-2-10 참조).

〈표 IV-2-10〉 단축형과 종일제 보육료 차이

단위: 천원

 구분		만	3세	만 4~5세		비고
	ੀ ਦ	단축형	종일형	단축형	종일형	PIJ4
	보육료	206	257	194	243	상위 30%
	부모 부담분	9	60	17	66	하위 70%
	정부 지원단가	197	197	177	17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이는 종일제 대비 80% 수준이다. 부모들은 이러한 보육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비율이 52.6%이고 46.6%는 더 낮추어야 한다고 보육료 인하분의 적 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증가하고 더 인하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낮아졌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도 약 2/3는 적정하다고 하는 반면에 1/3은 더 낮아져야한다고 보았다(표 IV-2-11 참조).

2011년 조사(서문희·양미선, 2011)에서도 12시간 기준 종일제와 비교하여 오후 3시까지 이용하는 단축형은 이용시간이 1/3 정도 줄기 때문에 보육료도 그 만큼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체로 30% 정도 보육료가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부모들은 이러한 희망 보육료 인하분이나 이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어린이집 운영의 측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 보육료는 교사 근로 8시간 기준 보 육료로, 실제로 단축형 보육 비용이 12시간 보육비용 대비 20% 삭감 요인이 발 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채용하지 않는 한 오후 3시 귀 가시 아동과 종일제 보육아동과의 차이로 제외가 가능한 비용은 간식비 1회 비 용과 약간의 관리운영비 정도이다. 시범사업 개요에서 시간제 교사 채용을 허용 하였으나 반 아동을 모두 단축형 이용 아동으로 구성하지 않는 한 시간제 교사 를 사용하기 어렵다.

〈표 IV-2-11〉 보육료 인하분 적정 여부: 이용자

단위: %(명)

구분	적정	더 인하하여야	인하폭을 낮추어야	계(수)
전체	52.6	46.6	0.8	100.0(133)
연령				
만 3세	100.0	-	-	100.0(2)
만 4세	55.8	43.0	1.2	100.0(86)
만 5세	44.4	55.6	-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33.3	66.7	-	100.0(21)
시간제 출근	33.3	66.7	-	100.0(9)
미취업	58.0	40.9	1.1	100.0(8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33.3	66.7	-	100.0(6)
150~200만원 미만	50.0	50.0	-	100.0(12)
200~300만원 미만	58.8	39.2	2.0	100.0(51)
300~500만원 미만	51.0	49.0	-	100.0(49)
500만원 이상	66.7	33.3	-	100.0(9)

주: 모취업 휴직 중 및 자영업 6명 생략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단축형 이용으로 삭감된 보육료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던 바와 같이(서문희·최윤경 외, 2010)55), 다수인 45.1%가 자녀의 추가 특 별활동비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27.1%는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추가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27.1%가 가계에 보탬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표 Ⅳ -2-12 참조).

아동 연령별로는 4세아보다 5세아가 특별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 다.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가 자녀의 추가 특별활동비에 사용하였다는 비율이 다 소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일관성은 약하나 가구소득 수준이 150만원 미만과 300만 원 이상에서 특별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비율이 그 이외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sup>55)</sup> 이용시간 다양화 제도에 대하여 부모는 상당수가 보육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이를 이러 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음.

〈표 IV-2-12〉 삭감된 보육료의 사용처: 이용자

단위: %(명)

					단위: %(명)
<del></del> 구분	자녀의 추가 특별활동비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추가 구입	가계에 보탬	자녀 보험료에 이용	계(수)
전체	45.1	27.1	27.1	0.8	100.0(133)
연령					
만 3세	50.0	-	50.0	-	100.0(2)
만 4세	40.7	31.4	27.9	-	100.0(86)
만 5세	53.3	20.0	24.4	2.2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47.6	28.6	23.8	-	100.0(21)
시간제 출근	55.6	33.3	11.1	-	100.0(9)
미취업	42.0	26.1	30.7	1.1	100.0(8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66.7	16.7	16.7	-	100.0(6)
150~200만원 미만	8.3	16.7	66.7	8.3	100.0(12)
200~300만원 미만	31.4	37.3	31.4	-	100.0(51)
300~500만원 미만	63.3	22.4	14.3	-	100.0(49)
500만원 이상	55.6	11.1	33.3	-	100.0( 9)

주: 모취업 휴직 중 및 자영업 6명 생략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 나) 특별활동 시간

단축형 서비스 이용아동의 특별활동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12% 정도가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2.3%는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이나 부모 특성별 차이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표 IV-2-13 참조).

삭감된 비용을 특별활동에 사용하였다는 비율이 45%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특별활동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비율은 12%로 낮다. 이는 자녀에게 특별활동 개 수를 추가하였다기보다는 이른 귀가 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외부 특별활동 등 더 비싼 특별활동으로 특별활동을 교체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그 러나 그 정도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천시 특별활동 수를 규제하는 것이 나 비용 상한선이 3~4만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IV-2-13〉 특별활동 시간의 변화: 이용자

단위: %(명)

			전기: 제당)
증가	변화없음	감소	계(수)
12.0	85.7	2.3	100.0(133)
-	100.0	-	100.0(2)
12.8	86.0	1.2	100.0(86)
11.1	84.4	4.4	100.0(45)
14.3	85.7	-	100.0(21)
11.1	88.9	-	100.0(9)
12.5	84.1	3.4	100.0(88)
16.7	83.3	-	100.0(6)
-	91.7	8.3	100.0(12)
3.9	94.1	2.0	100.0(51)
24.5	75.5	-	100.0(49)
11.1	88.9	-	100.0( 9)
	12.8 11.1 14.3 11.1 12.5 16.7 - 3.9 24.5	12.0 85.7  - 100.0 12.8 86.0 11.1 84.4  14.3 85.7 11.1 88.9 12.5 84.1  16.7 83.3 - 91.7 3.9 94.1 24.5 75.5	12.0     85.7     2.3       -     100.0     -       12.8     86.0     1.2       11.1     84.4     4.4       14.3     85.7     -       11.1     88.9     -       12.5     84.1     3.4       16.7     83.3     -       -     91.7     8.3       3.9     94.1     2.0       24.5     75.5     -

주: 모취업 휴직 중 및 자영업 6명 생략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표 IV-2-14〉 어린이집 내 참여 특기교육 개수

단위: %(명)

	어린이집 내			어린이집 외				
구분	2012	년 2월	2012년	3월 현재	2012	년 2월	2012년	3월 현재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없음	74.4	86.4	76.7	77.6	50.4	71.2	40.6	64.8
1개	3.8	-	5.3	5.6	21.8	10.4	26.3	13.6
2개	15.8	9.6	15.0	12.8	14.3	11.2	19.5	13.6
3개	5.3	3.2	3.0	2.4	10.5	4.0	10.5	4.0
4개 이상	0.8	0.8	-	1.6	3.0	3.2	3.0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_(수)	(133)	(125)	(133)	(125)	(133)	(125)	(133)	(1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이외에서의 특별활동, 특기교육 참여 개수의 단축형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차이를 보면 <표 IV-2-14>와 같다. 2012년 2월에는 어린이집 내에서의 참여는 없다는 비율이 단축형 미이용 아동이 이용자에 비하여 높다. 이는 미이용자가 3세 비율이 높아서 아동이 연령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도볼 수 있으나, 인하된 보육료를 특별활동에 사용한다는 부모가 반 정도이었음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2012년 3월56)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외 특기활동은 단축형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 없다는 비율이 이용자 50.4%, 미이용자 71.2%이며, 활동 개수도 단축형 이용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더 여러 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3월도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IV-2-14 참조).

이는 특별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에도 반영되어,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비용은 두 집단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어린이집 이외 특기활동은 단축형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에 차이를 보인다.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 1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비율이 이용자 23.3%, 미이용자 13.6%이다 이러한 경향은 3월에 모두 약간 증가하여 27.8%, 18.4%로 조사되었다. 이는 3월이 새로운 학기의 시작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표 IV-2-15 참조).

〈표 IV-2-15〉 어린이집 내외 특기교육 월 비용

단위: %(명)

		어린이	]집 내		어린이집 외				
구분	20121	년 2월	2012년	3월 현재	2012	년 2월	2012년 3월 현재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없음	74.4	87.2	76.7	78.4	50.4	71.2	40.6	65.6	
5만원 미만	2.3	-	3.0	0.8	12.0	6.4	12.8	7.2	
5~10만원 미만	19.5	8.8	18.0	16.0	14.3	8.8	18.8	8.8	
10만원 이상	3.8	4.0	2.3	4.8	23.3	13.6	27.8	1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_(수)	(133)	(125)	(133)	(125)	(133)	(125)	(133)	(1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 다) 부모 및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

단축형 어린이집 이용으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에 변화가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30.8%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4.5%는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또래와 보내는 시간은 15.8%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10.5%는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IV

<sup>56) 2</sup>월과 3월을 비교하면, 3월은 새로운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특별활동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특별활동 이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됨.

### -2-16 참조).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가 4,5세에 비하여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비율이 더 높다. 모의 취업특성 차이를 보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증가는 일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응답 비율이 높았고 또래와 보내는 시간 증가는 종일 제 취업모에게서 응답 비율이 높다(표 IV-2-16 참조).

〈표 IV-2-16〉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변화: 이용자

단위: %(명)

		부모			또래		
구분	증가	변화	감소	증가	변화	감소	계(수)
	6/1	없음	石工	6/1	없음	石工	
전체	30.8	64.7	4.5	15.8	73.7	10.5	100.0(133)
연령							
만 3세	-	50.0	50.0	50.0	50.0	-	100.0(2)
만 4세	33.7	64.0	2.3	18.6	70.9	10.5	100.0(86)
만 5세	26.7	66.7	6.7	8.9	80.0	11.1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19.0	76.2	4.8	38.1	61.9	-	100.0(21)
시간제 출근	22.2	66.7	11.1	11.1	88.9	-	100.0(9)
미취업	34.1	62.5	3.4	13.6	73.9	12.5	100.0(8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_	100.0	-	-	100.0	-	100.0(6)
150~200만원 미만	25.0	75.0	-	8.3	75.0	16.7	100.0(12)
200~300만원 미만	35.3	58.8	5.9	11.8	70.6	17.6	100.0(51)
300~500만원 미만	38.8	55.1	6.1	20.4	73.5	6.1	100.0(49)
500만원 이상	11.1	88.9	-	33.3	66.7	-	100.0(9)

주: 모취업 휴직 중 및 자영업 6명 생략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 라) 아동의 정서적 안정

단축형 서비스 이용으로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27.8%의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5세이에 비하여 4세이가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이외 모의 취업 특성이나 가구소득별 차이는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다(표 IV-2-17 참조).

〈표 IV-2-17〉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의 변화와 부모 만족도: 이용자

단위: %(명)

								L /11 /0(0)
	아이	정서적	안정		부모 및	<u></u>		
구분	증가	변화 없음	감소	시범사업 당시가 더 높음	별 차이 없음	현재가 더 높음	잘 모르겠 음	계(수)
전체	27.8	70.7	1.5	61.7	31.6	5.3	1.5	100.0(133)
연령								
만 3세	-	100.0	-	50.0	-	50.0	-	100.0(2)
만 4세	30.2	68.6	1.2	67.4	27.9	3.5	1.2	100.0(86)
만 5세	24.4	73.3	2.2	51.1	40.0	6.7	2.2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23.8	76.2	-	61.9	28.6	9.5	-	100.0(21)
시간제 출근	11.1	88.9	-	55.6	33.3	11.1	-	100.0(9)
미취업	29.5	69.3	1.1	63.6	31.8	2.3	2.3	100.0(8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	100.0	-	66.7	16.7	16.7	-	100.0(6)
150~200만원 미만	41.7	58.3	-	33.3	50.0	8.3	8.3	100.0(12)
200~300만원 미만	19.6	80.4	-	66.7	29.4	3.9	-	100.0(51)
300~500만원 미만	38.8	57.1	4.1	59.2	36.7	4.1	-	100.0(49)
500만원 이상	33.3	66.7	-	88.9	-	11.1	-	100.0(9)

주: 모취업 휴직 중 및 자영업 6명 생략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 마) 부모 만족도

이용시간에 따른 차이 및 비용 인하 등 시범사업에 의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61.7%가 시범사업 당시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고 5.3%는 현재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연령별로는 만 4세아가 만 5세아 보다 시범사업 당시가 만족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고, 모의 취업 특성 차이는 의미를 찾기 어려우며, 가구소득별로도 일관성을 없으나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이 시범사업 당시가 더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표 IV-2-17 참조).

본 시범사업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아 보육비용을 삭감하고 일찍 귀가하는 보육 이용시간 체계의 다양화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방향임을 알 수 있다.

#### 2) 종일제 이용자 측면

단축형 이용시간 실시로 단축형을 선택하지 않은 종일제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다수인 71.6%의 부모는 별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였으나 13.6%는 남은 아동수가 적어 자녀가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에 12.5%는 남은 아동수가 적어 우리 아이가 교사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표 IV-2-18 참조).

단축형 제도가 어린이집 아동 수 등 환경에 따라 종일제 아동에게 궁·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단축형 중심으로 운영 할 경우에 소수의 남은 아동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제도 개편 이 실현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표 IV-2-18〉 타 아동의 이른 귀가가 보육에 미친 영향: 미이용자

					단위: %(명)
구분	남은 아동 소외감	교사 관심 더 받아	별 차이를 못 느낌	비해당	계(수)
전체	13.6	12.5	71.6	2.3	100.0(88)
만 3세	14.3	14.3	71.4	-	100.0(7)
만 4세	18.2	9.1	68.2	4.5	100.0(44)
만 5세	8.1	16.2	<i>7</i> 5. <i>7</i>	-	100.0(37)

주: 시범사업 미이용자(125명) 중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부모(37명)를 제외한 나머지 미이용자(88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 3) 어린이집 운영과 교사의 의견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심충면접 결과, 단축형 이용 시범사업 실시의 긍정적 면을 강조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였다. 교사나 원장은 대부분 단축형 이용 시범사업 실시가 보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된다고 인식하였다. 종일반 아동 수의 감소로 오후 3시 이후에는 소수의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였고, 교사는 추가 수업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날 수업준비가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한 사례를 보면 만 3세반 경우, 3시반 이후로 15명 중 12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단축형 시범사업 이후로는 3, 4명만 남는 변화가 있었고, 교사는 다음날수업준비 한다든가 일지 쓰는 시간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단축형 이용시간 실시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교사로 평가된다. 종일반 아동수의 감소로, 교사는 오후반 추가 보육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수업준비 외 업무처리, 휴식 등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종일반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근무 만족도도 향상되었다.

운영자도 운영 완화, 교서 수급에서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하였다. 종일 반 이용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다수의 아동을 보육하는데서 오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저하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교사채용 및 수급에 대한 원장의 부담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일반 교사들이 너무 힘들고, 원장들은 이 교사들이 혹시나그만 두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데, 시범사업 하면서는 이러한 고민은 좀 줄었다는 것이다.

또한 다소나마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변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까지 이므로 영유아의 보육시간도 12시간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시범사업을 통하여 부모들은 이러한 그릇된인식을 다소 변화시키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4) 추후 이용 의사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에게 추후에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사업 재개 시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단축형 이용자는 93.2%, 미이용자는 39.2%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축형 이용자는 만 4~5세 부모의 재이용 의사가 약 93~94%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모취업 여부에 따른 뚜렷한 차이 없이 대부분의 집 단에서 높은 재이용 의사를 보였다.

종일제 이용자는 연령별로 만 4세와 만 5세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나 만 3세 아는 62.5%로 추후 이용의사가 매우 높으며,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시간제 출근 및 미취업 모의 이용의사 비율이 각각 61.5%, 57.5%로 높다(표 IV-2-19 참조).

이러한 응답은 이용시간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1.7%이었던 점과도 같은 맥락이다.

〈표 IV-2-19〉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사업 재개 시 이용할 의향

단위: %(명)

								271.70(0)
구분			이용자			1	미이용자	
<b>十七</b>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전체	93.2	3.8	3.0	100.0(133)	39.2	50.4	10.4	100.0(125)
연령								
만 3세	50.0	50.0	-	100.0(2)	62.5	29.2	8.3	100.0(24)
만 4세	94.2	2.3	3.5	100.0(86)	36.4	52.7	10.9	100.0(55)
만 5세	93.3	4.4	2.2	100.0(45)	30.4	58.7	10.9	100.0(46)
모취업								
종일제 출근	95.2	4.8	-	100.0(21)	22.6	66.0	11.3	100.0(53)
시간제 출근	88.9	-	11.1	100.0(9)	61.5	38.5	-	100.0(13)
자영업(가족 고용)	100.0	-	-	100.0(4)	40.0	50.0	10.0	100.0(10)
미취업	93.2	4.5	2.3	100.0(88)	57.5	30.0	12.5	100.0(4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83.3	16.7	-	100.0(6)	41.7	41.7	16.7	100.0(12)
150~200만원 미만	91.7	-	8.3	100.0(12)	44.4	55.6	-	100.0(9)
200~300만원 미만	88.2	7.8	3.9	100.0(51)	50.0	40.6	9.4	100.0(32)
300~500만원 미만	100.0	-	-	100.0(49)	28.0	60.0	12.0	100.0(50)
500만원 이상	100.0	-	-	100.0(9)	46.7	46.7	6.7	100.0(15)

주: 모취업 휴직 중 생략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결과임.

# 마. 소결

정규 보육과정을 '종일형'과 '단축형'으로 구분하여 부모들이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한 시범사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성과로 평가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아동의 이용시간의 개념 구분이 없는 어린이집 12시간 종일제 이용이라는 획일화된 구조를 변화시켜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보고자 한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아동, 부모, 교사 및 운영자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은 단축형 이용 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40분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른 귀가로 부모와 보내는 시간 증가나 정서적 안정의 개선 비율은 30% 정도이었다. 이른 귀가와 더불어 줄어든 부모 부담액의 상당부분은 어린이집 외 아동의 특별활동 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육아동의 이른 귀가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늦게까지 남아 있는 종일제 아동에게도 미치는 영향은 보육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모는 보육료 부담이 완화되어 그 비용을 아동에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높다.

운영자는 늦게 남아 있는 아동 수 감소로 운영 부담이 낮아지고, 교사는 아동 의 이른 귀가로 교사의 보육 부담이 줄어서 수업 준비, 휴식 시간이 확보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교사 수급도 다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소규모로 실시한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설계 상 단축형과 종일제의 개념 정의에서 종일제 12시간을 그대로 둔 채 보육시간 8시간을 단축형으로 설정한 것이 교사의 인건비 반영 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다. 단축형과 종일제의 보육료 수준의 합리성도 부족하다. 사실상 오후 3시반 귀가 아동에게서 삭감해 줄 수 있는 비용은 오후 간식비와일부 관리 운영비이므로 20%에 미치지 못한다. 단축형 보육료 감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의 변동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시범사업 이외의 사업으로는 성립이 불가능함을 전제한다. 보육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단축형 보육은 보육료를 삭감해주고 8시간 이상 보육아동에게는 보육료를 더 받거나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어야 자생적 사업으로의 시행이 가능하다.

둘째, 시범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단축형과 종일제 아동의 이용시간의 차이가 미미하다. 2월에는 단축형 이용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5시간 38분으로 종일제 아동 7시간 5분에 비하여 1시간 30분 정도 짧다. 3월에는 각각 6시간 16분, 7시간 57분으로 역시 1시간 40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시범사업 전후 이용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이용시간 행태에 부모 부담 비용을 낮추어 준 측면이 있다. 오후에 보육대상 아동이 다소 감소한 교사나 비용부담이 줄어서 이를 아동에게 특별활동비 등으로 더 투자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으나 아동은 일부에서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획일화 제도 개선은 전반적 보육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지만(서문희·최윤경 외, 2010; 서문희·박수연, 2008), 본 시범사업은 단편적 사업으로, 실적 중심 사업으로 종료한 측면이 강하다. 현재 보육료는 8시간보육으로 기본 보육시간을 축소하고 그 이상의 보육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투자되는 방식의 설계가 필요한 보육체계 개편이 난제임을 반증하고 있다.

# 3.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3절에서는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적용되었으며 2013년부터 제3차 시기가 시작된다. 이에 제3차 시기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을 평가인증 절차, 점수 산정및 지표 규모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 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운영의 적절성

#### 1) 평가인증 절차 운용

#### 가) 운영체계 순서의 적절성

제2주기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에서 참여를 신청하고 신청기관 내에서 자체점 검기간을 거쳐 현장관찰자에 의한 파견조사, 심의과정으로 전체인증과정이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순서에 대하여 보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5% 미만이고 보통은 10% 내외이다. 응답자 집단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표 IV-3-1 참조).

〈표 IV-3-1〉 운영체계 순서의 적절성

단위: %(명), 점 매우 매우 5점 평균 구분 부적절 보통 적절 계(수) t 부적절 적절 (표준편차) 전체 3.3 10.9 100.0(92) 1.1 66.3 18.5 3.98(0.73) 심의위원 2.6 2.6 10.3 64.1 20.5 100.0(39) 3.97(0.81) 0.002 현장관찰자 3.8 11.3 67.9 17.0 100.0(53) 3.98(0.6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2) 평가인증 소요기간의 적절성

현재 평가인증 참여로부터 인증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규 참여는 참여신청기간 1개월, 자체점검기간 3개월, 현장관찰 1개월 및 인증심의 기간 1개월로 총 6개월이고, 재인증은 자체점검기간이 1개월로 총 4개월이다. 특히, 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기존에 3~4개월 소요되던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자체점검을 3개월로

일괄 적용하여 총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였고, 재인증은 자체점검을 1개월 로 축소하여 전체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4개월로 진행한다.

〈표 IV-3-2〉 평가인증 소요기간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근 게・ /	((3), 台
구분	매우 짧다	조금 짧다	적절 하다	조금 길다	매우 길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참여신청: 1개월								
전체	-	1.1	91.3	7.6	-	100.0(92)	3.07(0.29)	
심의위원	-	2.6	84.6	12.8	-	100.0(39)	3.10(0.38)	1.13
현장관찰자	-	-	96.2	3.8	-	100.0(53)	3.04(0.19)	
자체점검- 신규 3개월								
전체	-	8.7	68.5	21.7	1.1	100.0(92)	3.15(0.57)	
심의위원	-	7.7	61.5	28.2	2.6	100.0(39)	3.26(0.64)	2.27
현장관찰자	-	9.4	73.6	17.0	-	100.0(53)	3.08(0.51)	
자체점검: 재인증 1개월								
전체	4.3	31.5	62.0	2.2	-	100.0(92)	2.62(0.61)	
심의위원	2.6	23.1	69.2	5.1	-	100.0(39)	2.77(0.58)	$4.24^{*}$
현장관찰자	5.7	37.7	56.6	-	-	100.0(53)	2.51(0.61)	
현장관찰: 1개월								
전체	1.1	1.1	93.5	4.3	-	100.0(92)	3.01(0.31)	
심의위원	2.6	-	87.2	10.3	-	100.0(39)	3.05(0.46)	1.12
현장관찰자	-	1.9	98.1	-	-	100.0(53)	2.98(0.14)	
심의: 1개월								
전체	-	-	84.8	14.1	1.1	100.0(92)	3.16(0.40)	
심의위원	-	-	79.5	20.5	-	100.0(39)	3.21(0.41)	0.75
현장관찰자	-	-	88.7	9.4	1.9	100.0(53)	3.13(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보육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평가인증 소요기간에 대하여 참여신청 기간 1개월과 현장관찰 기간 1개월은 적절하다는 비율이 90%를 넘고 인증심의 기간 1개월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약 85% 수준이다. 이에 비하여 자체점검 기간의 적절성은 낮은 편이다. 신규 자체점검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은 약 68%이고 재인증 1개월은 적절하다는 비율이 62%이다. 신규 신청 기관의 자체점검 3개월에 대해서는 길다는 응답 비율이 약 23%인데 반하여 재인증 자체점검 1개월에 대해서는 짧다는 응답 비율이 약 36% 정도나 되는데, 특히 현장관찰자가 이러한 응답 비율이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표 IV-3-2 참조).

<sup>\*</sup> p < .05

이러한 재인증 자체점검 기간에 대한 평가는 어린이집이 인증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현장관찰의 적절성

#### 가) 현장관찰일 통보

현행 평가인증에서는 자체점검기간 완료 3주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어린이집 현장관찰 주간을 공지하고, 관찰일을 정하여 1주일 전에 업무연락으로 어린이집에 통보한 후 방문하여 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 현장관찰자와 심의위원에게 현행 방법의 적절성과 함께 개선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에, 현장관찰자는 24.5%가 현행 방법이 적절하다고 하였고, 60.4%는 현장관찰 주간은 공지하되 관찰일은 공지하지 않고 주간 중에 불시 방문한다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13.2%는 현장관찰 주간 및 관찰일을 공지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표 IV-3-3 참조).

〈표 IV-3-3〉 관찰일 통보에 대한 의견: 2012년

단위: %(명)

						건커· /((3)
구분	현행 방법이 적절	현장관찰일을 더 일찍 통보	현장관찰 주간 공지, 관찰일 불시방문	현장관찰 주간, 관찰일 공지 않고 불시 방문	기타	계(수)
전체 <sup>1)</sup>	29.3	6.5	52.2	10.9	1.1	100.0(92)
심의위원	35.9	15.4	41.0	7.7	-	100.0(39)
현장관찰자	24.5	-	60.4	13.2	1.9	100.0(53)
2009년 <sup>2)</sup>						
공무원	21.9	8.3	51.0	18.8	-	100.0(96)
현장관찰자	44.9	6.3	39.4	7.9	16	100.0(127)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한편 어린이집 원장이나 공무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은 현장관찰자보다 현행 방식 선호 및 관찰일을 더 미리 공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에 관찰일 불시방문을 선호하는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이들도약 49%가 불시방문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09년 조사(서문희·김온기 외, 2009)에서 불시방문관찰

<sup>2)</sup> 서문희·김온기 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보건복지 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선호 비율이 관찰자 47.3%, 공무원 69.8%이었던 점과 비교하여 관찰자 집단 내에서 관찰일을 공지하지 말자는 의견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 나) 현장관찰자 수

현재 어린이집 방문 관찰은 한국보육진홍원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현장관찰자가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 1조로 파견되어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인원 구성에 대하여 현장관찰자와 심의위원의 의견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심의위원은 56.4%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33.3%는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며, 현장관찰자는 77.4%가 부적절하다고 하였고, 18.9%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현장관찰자는 심의위원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두 집단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IV-3-4 참조).

〈표 IV-3-4〉 현장관찰자 규모의 적절성

단위: %(명), 점

							/	٠(٥/, ۵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1	57.6	6.5	32.6	2.2	100.0(92)	2.77(1.00)	
심의위원	-	33.3	10.3	53.8	2.6	100.0(39)	3.26(0.97)	19.26****
현장관찰자	1.9	75.5	3.8	17.0	1.9		2.42(0.86)	19.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p < .001

〈표 IV-3-5〉 현장관찰자 인원이 적절하지 않다면 필요한 조정

단위: %(명)

				L 71 70(O)
구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달라야	인원을 늘려야	인원을 줄여야	계(수)
전체	94.4	3.7	1.9	100.0(54)
심의위원	84.6	15.4	-	100.0(13)
현장관찰자	97.6	-	2.4	100.0(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적절하지 않다는 경우에 조정방안으로는 어린이집의 대상규모에 따라 현장관찰 인원이 달라야 한다는데 다수가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현장관찰자들의 대다수인 97.6%, 심의위원의 84.6%가 어린이집 대상규모에 따라 관찰자 인원이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IV-3-5 참조).

#### 4) 심의과정 운영의 적절성

현장관찰이 완료되면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및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인증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기본사항확인서는 2주기 평가인증에서 신설된 부분이다. 이러한 네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는 심의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심의위원은 84.6%, 현장관찰자는 64.2%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각각 2.6%, 11.3%이다. 즉, 현행 심의자료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심의위원은 현장관찰자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표 IV-3-6 참조).

2009년 조사(서문희·김온기 외, 2009) 결과에 비하여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줄고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2주기부터 새로 추가된 기본사항확인서가 운영체계 개선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적절하다는 경우, 대안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거나, 자체점검보고서는 객관성이 저하되므로 반영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표 IV-3-6〉 평가인증 심의자료 구성의 적절성

단위: %(명), 점 5점 평균 구분 부적절 보통 적절 계(수) t 부적절 적절 (표준편차) 전체<sup>1)</sup> 7.6 19.6 67.4 100.0(92) 5.4 3.71(0.69) 심의위원 100.0(39) 12.8 76.9 7.7 2.6 3.90(0.55) 5.47\* 현장관찰자 11.3 24.5 60.4 3.8 100.0(53) 3.57(0.75)2009년<sup>2)</sup> 12.0 19.0 67.0 2.0 100.0(100)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2) 서문희·김온기 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보건복지 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보육정보센터장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어린이집 1개소당 3인 1조로 구성된다. 심의위원 조 구성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 결과, 현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약 16%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심의위원은 79.5%가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현장관찰자는 37.7%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의견에 괴리가 큼을 나타냈다. 즉, 심의위원은 현장관찰자보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up>\*</sup> p < .05

#### (표 IV-3-7 참조).

부적절하다는 경우 대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개선을 위한 학부모 대표의 참여, 심의위원 필수자격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현장경험 포함, 비전문가인 보육담당 공무원의 참여 비율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3-7〉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단위: %(명), 점

								C / I:	,,, _
٠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1	15.2	28.3	52.2	3.3	100.0(92)	3.41(0.83)	
	심의위원	-	7.7	12.8	71.8	7.7	100.0(39)	3.79(0.70)	16.94***
	현장관찰자	1.9	20.8	39.6	37.7	-	100.0(53)	3.13(0.8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p < .001

### 5) 인증유효기간의 적절성

현재 인증 유효기간은 일률적으로 인증이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인 데57, 이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이 20.7%이고, 과반수는 점수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차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14% 정도가 인증 받은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심의위원보다 현장관찰자가 많으며, 점수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심의위원 56.4%로 현장관찰자 43.4%보다 더 많다. 2009년 전문가 대상 조사(서문희·김온기 외, 2009) 결과, 3년 인증기간의 적절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였던 것에 비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20.7%로 줄어들고, 조건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한다는 응답한 비율이 2009년 32.2%에서 63%로 대폭 증가하여 차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IV-3-8 참조).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집 상황에 다라 인증 유효기간의 다양화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것은 현장관찰자의 18.9%가 인증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재인증 기관의 자체점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사후관리 미비로 인증 기간 동안이사실상 보육의 질 관리 휴식기가 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sup>57)</sup>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평가이증 후 3년인데, 제1차 시행주기에서는 평가인증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4년으로 인식되었음.

〈표 IV-3-8〉 평가인증 유효기간의 적절성

단위: %(명)

							, , , , ,
구분	현행 적절	인증횟수에 따라 차등화	점수에 따라 차등화	유효기간 단축	유효기간 연장	기타	계(수)
전체 <sup>1)</sup>	20.7	14.1	48.9	10.9	2.2	3.3	100.0(92)
심의위원	17.9	15.4	56.4	-	5.1	5.1	100.0(39)
현장관찰자	22.6	13.2	43.4	18.9	-	1.9	100.0(53)
2009년 <sup>2)</sup>	44.5	-	32.2	7.7	14.9	0.7	100.0(417)

주. 2012년 조사에서 '인증횟수에 따라 차등화' 문항 추가

-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2) 서문희·김온기 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보건복지 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6) 결과 통보 방식의 적절성

현행 평가인증 결과통보서와 종합평가서에는 영역별 점수와 총점, 심의 총평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심의위원의 84.6%, 현장관찰자의 64.2%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두 집단에서 모두 10% 미만이다(표 IV-3-9 참조).

부적절하다는 경우 대안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IV-3-9〉 결과통보서와 종합평가서에 제시하는 항목의 적절성

단위: %(명), 점

							_ / / / · ·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표 <del>준</del> 편차)	t
전체	-	8.7	18.5	66.3	6.5	100.0(92)	3.71(0.72)	
심의위원	-	7.7	7.7	76.9	7.7	100.0(39)	3.85(0.67)	2.60
현장관찰자	-	9.4	26.4	58.5	5.7	100.0(53)	3.60(0.74)	2.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7) 사후관리 및 지도의 적절성

평가인증 이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확인점검, 인증어린이집 취소 관리, 보육정보센터 보육컨설팅 등 다섯가지 질적 수준 유지를 점검하다.

각 방법의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는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두 번째,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는 신임원장 교육과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정보 제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원장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는 확인점검으로,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지확인하는 제도를 시범실시 중이다. 네 번째, 인증 후 부적절한 운영·관리로 인해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최근에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보육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IV-3-10 참조).

우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가 사후관리 수단으로 효과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높지 않다. 심의위원은 30.7%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현장관찰자는 단7.6%만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비효과적이라는 비율은 각각 23.0%, 50.9%이다. 즉,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대해 현장관찰자는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심의위원은 보통 수준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는 효과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아서 약 60%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현장관찰자의 56.6%, 심의위원의 64.1%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확인점검은 전체의 8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5점 척도 평균 점수가 4.23으로 제시된 사후관리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반수 이상의 현장관찰자는 확임점검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어린이집 취소 관리도 5점 척도 평균 점수 4.05로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된다. 확인점검과 같이 현장관찰자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다.

보육컨설팅은 전체적으로는 65.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심의위원과 현 장관찰자간의 차이가 있어서 심의위원은 84.6%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현장관찰자는 단지 50.9%만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3-10〉 사후관리 점검 방법의 적절성

단위: %(명), 점 매우 매우 5점 평균 구분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계(수) 비효과적 효과적 (표 준편차)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전체 9.8 29.3 43.5 100.0(92) 2.72(0.94) 14.1 심의위원 5.1 17.9 46.2 25.6 100.0(39) 3.08(0.93) 10.95 현장관찰자 13.2 37.7 41.5 5.7 1.9 100.0(53) 2.45(0.87) 원장·교직원 변동 사후관리 6.5 전체 2.2 5.4 32.6 53.3 100.0(92) 3.57(0.79) 심의위원 25.6 100.0(39) 3.51(0.85) 5.1 5.1 61.5 2.6 0.30 현장관찰자 5.7 37.7 47.2 100.0(53) 3.60(0.74) 확인점검 전체 2.2 3.3 43.5 100.0(92) 4.23(0.89) 7.6 43.5 28.2 100.0(39) 3.97(0.99) 심의위원 5.1 2.6 10.3 53.8 5.79 5.7 현장관찰자 3.8 35.8 54.7 100.0(53) 4.42(0.77) 인증어린이집 취소관리 전체 1.1 16.3 58.7 23.9 100.0(92) 4.05(0.67) 심의위원 20.5 100.0(39) 4.00(0.69) 2.6 15.4 61.5 0.44 현장관찰자 17.0 56.6 26.4 100.0(53) 4.09(0.66) 보육컨설팅 전체 19.6 13.0 100.0(92) 3.62(0.92) 1.1 14.1 52.2 심의위원 12.8 100.0(39) 3.87(0.77) 5.28\* 10.3 5.1 7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17.0

1.9

현장관찰자

〈표 IV-3-11〉 사후관리 점검방법 우선순위 의견: 1순위

30.2

37.7

13.2 100.0(53) 3.43(0.99)

단위: %(명) 자체 교직원 인증 취소 구분 점검보고서 변동에 따른 확인점검 보육컨설팅 계(수) 관리 사후관리 제출 전체 6.5 8.7 66.3 9.8 8.7 100.0(92) 심의위원 15.4 5.1 51.3 15.4 12.8 100.0(39) 현장관찰자 100.0(53) 11.3 77.4 5.7 5.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이러한 사후관리 방법의 선호는 심의위원과 현장관찰자는 응답은 우선순위 결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각각 51.3%와 77.4%가 확인점검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심의위원은 확인점검을 선택한 비율이 51.3%이고, 약 15%씩이 연차별 보고서와 어린이집 취소관리를 선택하였으나, 현장관찰자는 77.4%가 확인점검을 선택하였고 11.3%가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를 선택하였으나 연차별 자체

<sup>\*</sup> p < .05, \*\* p < .01.

점검보고서를 선택한 사람은 없다(표 IV-3-11 참조).

현행 사후관리 방법 이외에 제안된 방안으로는 통과 점수가 낮은 인증 어린 이집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교육, 어린이집 간 자율점검 및 교차장학, 학부 모 설문조사 등이 있다.

# 8) 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의 적절성

현재 시·도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군·구와 시·도가 신청단계에서 11개 기본사항 확인, 취소시설 조치를 담당하고, 자체점검단계에서 보육정보센터가 평가인증 조력업무를 지원하며, 시·군·구와 시·도가 인증 이후 인증취소 및 인증시설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표 IV-3-12〉 평가인증 업무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적절성

단위: %(명)

				난위: %(명)
 구분	현재 역할은 과도함	현행 수준이 적절	현재보다 강화	계(수)
참여신청				
전체	3.3	73.9	22.8	100.0(92)
심의위원	2.6	89.7	7.7	100.0(39)
현장관찰자	3.8	62.3	34.0	100.0(53)
자체점검				
전체	7.6	48.9	43.5	100.0(92)
심의위원	12.8	56.4	30.8	100.0(39)
현장관찰자	3.8	43.4	52.8	100.0(53)
현장관찰				
전체	4.3	50.0	45.7	100.0(92)
심의위원	5.1	74.4	20.5	100.0(39)
현장관찰자	3.8	32.1	64.2	100.0(53)
인증심의				
전체	7.6	72.8	19.6	100.0(92)
심의위원	5.1	89.7	5.1	100.0(39)
현장관찰자	9.4	60.4	30.2	100.0(53)
사후관리				
전체	4.3	35.9	59.8	100.0(92)
심의위원	7.7	51.3	41.0	100.0(39)
현장관찰자	1.9	24.5	73.6	100.0(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이러한 시·군·구와 시·도의 업무는 현재 신청단계나 자체점검 단계에서의 관 여는 비교적 체계적이지만 인증 이후의 지도감독으로는 지도감독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도이다.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사후관리 단계별로 평가인증에 지방 정부 역할의 적절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적절하다는 비율은 참여신청 73.9%, 인증심의 72.8%로 비교적 높고 자체점검과 현장관찰은 약 49~50% 수준이며 사 후관리는 약 3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우의 대부분은 현재보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후관리는 현재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약 60%에 달한다(표 IV-3-12 참조).

여기에서도 심의위원과 현장관찰자 간의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 모든 항목에 걸쳐 원장, 보육담당 공무원, 교수로 구성된 심의위원은 현행 수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고, 현장관찰자는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다.

### 9) 인증 취소사항의 적절성

다음은 보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인증 사후관리를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증 참여취소 및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11개 항목의 적절성을 조사하였다.

〈표 IV-3-13〉 평가인증 취소사항의 적절성

단위: %(명) 심의 현장 구분 전체  $X^2(df)$ 위워 관찰자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 드러난 경우 90.2 94.9 86.8 제시한 서류나 진술에서 허위사실이 발견 98.9 97.4 100.0 대표자, 원장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확정 98.9 97.4 100.0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받은 경우 96.7 94.9 98.1 대표자, 원장,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100.0 100.0 100.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69.6 51.3 83.0 10.69(1)\*\* 어린이집 폐지 또는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98.9 100.0 98.1 소재지 변경 92.4 84.6 98.1 운영형태 변경 89.1 76.9 98.1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 81.5 71.8 88.7  $4.25(1)^{\circ}$ 원장 변경 후 원장교육을 3개월 내 미이수 87.0 84.6 88.7 0.33(1)(수) 0(92) 0(39)0(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sup>\*</sup> p < .05, \*\* p < .01

그런데 몇 가지 항목에서 심의위원과 현장관찰자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심의위원은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1.3%이고 운영형태 변경과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70%대이며 그 이외는 80% 이상이다. 한편 현장관찰자는 가장 적절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심의위원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을 꼽았지만 그 비율은 83%로 높고 이외도 모두 86% 이상으로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다.

### 10) 평가인증 점수 공개

2011년 8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평가인증 결과 공표에 대한 법률 제정이 완료된 상태이나, 현재로서는 평가인증 통과 여부만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인증 점수 공개에 대한 찬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비율은 심의위원 51.3%, 현장관찰자 75.5%이었다(표 IV-3-14 참조).

〈표 IV-3-14〉 평가인증 점수 공개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E/II /0(0)
 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음	계(수)
전체	65.2	31.5	3.3	100.0(92)
심의위원	51.3	41.0	7.7	100.0(39)
현장관찰자	75.5	24.5	-	100.0(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표 IV-3-15〉 평가인증 점수 공개 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L 71. 70(0)
구분	총점만 세부영 점수		총점 등급	총점 등급과 세부영역별 등급 모두	계(수)
전체	13.3	16.7	38.3	31.7	100.0(60)
심의위원	30.0	15.0	30.0	25.0	100.0(20)
현장관찰자	5.0	17.5	42.5	35.0	100.0(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평가인증 점수 공개의 적절한 방법으로 총점만 공개, 총점과 세부영벽별 점

수 모두 공개, 총점을 등급화하여 공개, 총점 등급과 세부영역별 등급 모두 공개를 보기로 주고 질문한 결과, 총점을 등급화하여 공개, 총점 등급과 세부영역별 등급 모두 공개가 각각 38.3%, 31.7%로 조사되었는데, 심의위원은 총점만 공개하자와 총점을 등급화하여 공개하자는 의견이 각각 30%씩으로 높았고 현장관찰자는 총점을 등급화하여 공개하자는 의견이 42.5%이며 다음은 총점 등급과세부영역별 등급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이 35%로 조사되었다(표 IV-3-15 참조).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연구(서문희·김온기 외, 2009)에서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인증 정보 공개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평가인증 정보 공개의 확대는 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권 보장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질 향상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 결과 활용

현재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 인센티브 지급 등의 결과활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교재교구비와 연계하고 인건비 지원시설에 취사부 1명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도이고, 지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평가인증시설에 대하여 교사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계는 규모가적고 일회성도 있어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나 질적 수준 제고 관점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에 대한 적절성 조사에서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심의위원 61.5%, 관찰평가자 56.6%이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각각 18.0%, 18.9%이다(표 IV-3-16 참조).

사실 현재 평가인증 유지율이 63% 수준이어서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연계 강화가 쉬운 과업은 아니다.

〈표 IV-3-16〉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 재정지원 연계방안의 적절성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6	10.9	22.8	32.6	26.1	100.0(92)	3.59(1.21)	
심의위원	10.3	7.7	20.5	41.0	20.5	100.0(39)	3.54(1.21)	0.11
현장관찰자	5.7	13.2	24.5	26.4	30.2	100.0(53)	3.62(1.21)	U.1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나. 평가인증 점수 운용

### 1) 평가인증 점수 산출방식의 적절성

#### 가) 점수 비중 배분

현장관찰이 완료되면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및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인증심의가 진행된다. 이러한 네 가지 자료의비중은 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결과보고서 55%,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의견서 25%로 구성된다. 이는 1주기 때와 비교하여, 자체점검보고서의 비율은 15% 감소, 현장관찰보고서의 비율은 5% 증가한 것이며, 기본사항확인서가 추가로 신설된 결과이다.

이러한 구성상 비중에 대하여 적절성을 알아본 결과, <표 IV-3-17>과 같이 적절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기본사항확인서 10%로 전체 응답자의 80.2%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체점검보고서 10%와 심의의원 의견서 25%는 응답자의 63~66%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고, 현장관찰보고서 반영률 55%에 대해서는 58.7%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다.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 자체점검보고서 10%와 심의의원 의견서 25%는 하향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에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장관찰자는 특히 현장관찰보고서를 상향조정하고 자체점검보고서 점수를 하향조정하자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3-17〉 평가인증 심의자료 반영비율의 적절성

단위: %(명) 하향 상향 하향 상향 적절 적절 구분 구분 계(수)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자체점검보고서(10%) 현장관찰보고서(55%) 전체 65.9 31.9 전체 58.7 8.7 100.0(92) 2.2 32.6 심의위원 심의위원  $56.4 \ \ 20.5 \ \ 23.1$ 69.2 25.6 100.0(39) 5.1 현장관찰자 64.2 35.8 현장관찰자 60.4 39.6 100.0(53) 심의위원회의견서(25%) 기본사항확인서(10%) 전체 80.2 8.8 11.0 100.0(92) 전체 63.0 29.3 7.6 심의위원 심의위원 69.2 17.9 12.8 100.0(39) 74.4 12.8 12.8 9.4 58.5 37.7 3.8 현장관찰자 84.9 5.7 현장관찰자 100.0(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이는 2009년 조사결과(서문희·김온기 외, 2009)와도 같은 방향이다. 2009년 시행 당시 자료별 적용비율58)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에서 현장관찰보고서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체점검보고서과 심의위원회의견서는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심의자료 반영비율 추가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나) 심의점수의 적절성

다음은 전체 심의자료 총점 중 25%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의견서 점수 비율에 대한 적절성이다. 현재 인증 심의위원 점수는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보고서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각 5%, 자체점검 결과 및 현장관찰 결과와의 대비오차10%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의 의견서 항목 각각에 대한 구성과 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심의위원 조사결과는, 5%씩 반영되는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노력, 보고서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에 대해서는 약 44~59%의 비율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체점검 결과 및 현장관찰 결과와의 대비오차 10%에 대해서는 74.4%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보고서 간 대비오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IV -3-18 참조).

그러나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46.2%가 하향조정을 희망하였으며 이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노력과 보고서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30.8%가 상향조정을 희망하였으며, 2주기부터 추가로 반영되었던 우수사례 및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38.5%가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앞서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보고서 간 대비오차에 대해서 하향조정을 희망하는 비율 또한 20.5%였으며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 수준이었다.

보고서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하향조정을 희망한 비율은 소수이지만, 이미 현장관찰자의 보고서 점수에 반영된 부분으로 이중으로 점수

<sup>58) 1</sup>차 시행시에는 기본사항확인서는 배점이 없었고,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보고서, 심의 위원회 세 가지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비중은 각각 25%, 50%, 25%이었음.

를 얻게 되는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의 투·장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관찰하지 않은 심의위원이 작성자의 글솜씨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투·장점의 확인방안 마련 혹은 폐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 외 어린이집 규모와 관계없이 부모 서포터즈 파견 및평가 반영에 대한 방안이 제기되었다. 현재 평가인증 부모 서포터즈 운용 시범사업이 2012년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중 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700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부모가 관찰에 참여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 IV-3-18〉 심의위원회 의견서 점수 비율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적절	하향조정 필요	상향조정 필요	계(수)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5%)	43.6	46.2	10.3	100.0(39)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5%)	48.7	20.5	30.8	100.0(39)
보고서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5%)	59.0	10.3	30.8	100.0(39)
우수사례 및 부적절 사례(5%)	53.8	7.7	38.5	100.0(39)
보고서 간 대비오차(5%)	74.4	20.5	5.1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한편 심의의견서 점수 배점을 0~5점 6단계로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보육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들은 약 57~67%의 분포로 현행 심의위원회 의견서 점수척도가 적절하다는 데 다수가 동의하였다(표 IV-3-19 참조). 부적절하다는 응답자는 대 안으로 7단계, 10단계 등 더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V-3-19〉 심의위원회 의견서 점수 부여 시 6점 척도의 적절성

						단위	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	12.8	30.8	53.8	2.6	100.0(39)	3.46(0.76)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	-	35.7	57.1	7.1	100.0(14)	3.71(0.61)
보육정보센터장	-	33.3	-	66.7	-	100.0(3)	3.33(1.1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18.2	18.2	63.6	-	100.0(11)	3.45(0.82)
보육 담당 공무원	-	18.2	45.5	36.4	-	100.0(11)	3.18(0.7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2) 인증 기준 점수의 적절성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점수는 3점 만점에 2.25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5점이다. 1주기 평가인증 시행 시, 평가인증 통과점수가 평균 87~90점에 달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3점 만점에 2.20점, 100점 만점에 73.33점에서 2주기 시행부터는 상향조정한 결과이다. 이러한 기준 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절하다는 비율은 22.8%이고 다수인 75.0%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현장관찰자보다 심의위원 집단에서 더 높다(표 IV-3-20 참조).

〈표 IV-3-20〉 현행 평가인증 기준 점수의 적절성

단위: %(명), 점

							L 71. 700	.07, 0
구분	큰 폭의 하향조절	약간의 하향조절	적절	약간의 상향조절	큰 폭의 상향조절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1	1.1	22.8	69.6	5.4	100.0(92)	3.77(0.61)	
심의위원	-	-	20.5	74.4	5.1	100.0(39)	3.85(0.49)	1.00
현장관찰자	1.9	1.9	24.5	66.0	5.7	100.0(53)	3.72(0.69)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3) 기본사항의 적절성

제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체점점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를 통해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사항(필수항목과 기본항목)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본사항 확인 중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은 참여가 취소된다.

이러한 기본사항 확인 과정과 관련하여 필수항목과 기본항목 구분, 지방정부 공무원에 의한 점검 두 가지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필수항목과 기본항목 구분에 대해서는 70.7%가 적절하다는 응답이었고 4.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심의위원이 부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으나 응답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기본사항이 지방정부 공무원에 의하여 점검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비율이 53.3%이고 13.0%는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이 역시 심의 위원이 부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17.9%로 현장관찰자 9.4%보다 높으나 응답자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표 IV-3-21 참조).

〈표 IV-3-21〉 평가인증 기본사항 관련 적절성

단위: %(명), 점

						건커. /0	(8), 6
구분	부적절	보통	적절	계(수)	X <sup>2</sup> (df)	3점 평균 (표준편차)	t
필수항목과 기본항목 구분							
전체	4.3	25.0	70.7	100.0(92)		2.66(0.56)	
심의위원	7.7	20.5	71.8	100.0(39)	-	2.64(0.63)	0.10
현장관찰자	1.9	28.3	69.8	100.0(53)		2.68(0.51)	
지방정부 공무원에 의한 점검							
전체	13.0	33.7	53.3	100.0(92)		2.31(0.77)	
심의위원	17.9	33.3	48.7	100.0(39)	1.514(2)	2.47(0.67)	1.20
현장관찰자	9.4	34.0	56.6	100.0(53)		2.40(0.7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평가인증에서 기본사항 필수항목인 총정원 준수,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행정처분 발생 유무에 대하여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총정원 준수 93.5%, 행정처분 발생 유무 92.4%,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는 약 89%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약 86% 수준이다. 총정원 준수와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은 현장관찰자들이 느끼는 비율이 다소 높고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행정처분 발생 유무는 심의위원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표 IV-3-22 참조). 심의위원이 공무원, 보육정보센터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등 현장과 밀착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나타나는 차이로 파악된다.

〈표 IV-3-22〉 평가인증 기본사항에서 필수항목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총 정원 준수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행정처분 사항 발생 유무	계(수)
전체	93.5	89.1	85.9	92.4	100.0(92)
심의위원	92.3	92.3	84.6	97.4	100.0(39)
현장관찰자	94.3	86.8	86.8	88.7	100.0(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표 IV-3-23>은 7개의 기본사항 기본항목 필요성 조사 결과이다. 이를 보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비상대피시설 설치로 90.2%이며 가장 낮은 것이 보육실 설치 기준으로 81.5%이다. 심의위원과 현장관찰자의 차이가 유의한 것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으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심의위원 약 80% 정도이고 현 장관찰자는 92.5%로 10%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3-23〉 평가인증 기본사항에서 기본항목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 설치기준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비상 대피 시설 설치	계(수)
전체	87.0	81.5	89.1	87.0	89.1	88.0	90.2	100.0(92)
심의위원	<i>7</i> 9.5	76.9	87.2	89.7	92.3	87.2	84.6	100.0(39)
현장관찰자	92.5	84.9	90.6	84.9	86.8	88.7	94.3	100.0(53)
$X^2(df)$	3.330(1)#	0.950(1)	-	0.464(1)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p < .1

추가 점검 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인가 공간 사용 준수 여부, 차량운행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식자재 유통기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다. 평가인증 지표의 적절성

### 1) 유형분류의 적절성

초기 평가인증 지표는 21인 이상, 20인 이하,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4종이 개발되었으나, 2005년 시범사업 시행을 거쳐 지표의 종류를 축소하여 2006년부터 2008년 3기까지는 21인 이상, 20인 이하,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 3종으로 운영되었다. 그 후 소규모 어린이집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이 2008년 4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평가인증지표 적용기준을 40인을 기준으로 하여달리 구분함으로써 현재는 40인 이상, 39인 이하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의 3종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구분 방식에 대하여 과반수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심의위원의 18.0%, 현장관찰자의 28.3%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표 IV-3-24 참조).

부적절하다는 경우 대안으로 20인 이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용 지표 개발 등다양한 어린이집 유형에 맞춘 세분화된 지표 개발을 제안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일 연령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연령별 지표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IV-3-24〉 평가인증지표의 유형분류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	1.1	22.8	25.0	47.8	3.3	100.0(92)	3.29(0.90)	
심으	<b>의위원</b>	2.6	15.4	28.2	53.8	-	100.0(39)	3.33(0.84)	0.13
현정	상관찰자	-	28.3	22.6	43.4	5.7	100.0(53)	3.26(0.94)	0.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2) 항목 수의 적절성

평가인증 지표의 문항 수는 4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6개 영역 70항목, 39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5개 영역 55항목,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서 6개 영역 7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40인 이상 어린이집용 지표 7개 영역 80항목, 39인 이하 어린이집용 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 7개 영역 85항목으로 구성된 지표를 사용하다 2010년 제2차 시행시기를 기점으로 영역과 지표수가 다소 수정된 것이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다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심의위원은 76.9%가 적절하고 20.5%는 많다고 하였고 2.6%만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현장관찰자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81.1%로 심의위원보다 많으나 심의위원과는 달리 현행 지표 문항 수가 적다는 의견이 13.2%로 많다는 의견보다 높다(표 IV-3-25 참조).

〈표 IV-3-25〉 평가인증지표의 항목 수의 적절성

단위: %(명), 점

								/ / _
구분	매우 적다	적다	적절하다	많다	매우 많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	8.7	79.3	10.9	1.1	100.0(92)	3.04(0.49)	
심의위원	-	2.6	76.9	17.9	2.6	100.0(39)	3.21(0.52)	7.99**
현장관찰자	-	13.2	81.1	5.7	-	100.0(53)	2.92(0.43)	7.9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3) 척도의 적절성

평가인증지표는 3점 기술 평정 척도로서 최소 1에서 최대 3점으로 점수를 매기

<sup>\*\*</sup> p < .01

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3점은 '우수한 수준'으로 바람직한 실제, 2점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은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적으로 우수한 실제를 의미하며, 1점 '미흡한 수준'은 바람직하지 못한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3점 척도에 대한 의견은 45.7%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나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27.2%에 달한다. 심의위원과 관찰평가자의 의견 차이는 거의 없다(표 IV-3-26 참조).

3점 척도가 부적하다는 경우에 척도를 세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다.

〈표 IV-3-26〉 평가인증지표 척도의 적절성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2	25.0	27.2	43.5	2.2	100.0(92)	3.18(0.91)	
심의위원	2.6	25.6	28.2	43.6	-	100.0(39)	3.13(0.89)	0.26
현장관찰자	1.9	24.5	26.4	43.4	3.8		3.23(0.93)	0.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라. 질 관리 수단으로의 평가

현행 평가인증 지표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에 적정한가를 조사한 결과는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심의위원 46.2%, 현장관찰자 54.7%로 조사되었고, 부적절 하다는 비율은 각각 2.6%, 13.2%이다. 즉, 현장관찰자는 보통이라는 응답보다는 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심의위원보다 높다(표 IV-3-27 참조).

〈표 IV-3-27〉 어린이집 질 관리 수단으로서의 평가인증지표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	8.7	40.2	43.5	7.6	100.0(92)	3.50(0.76)					
심의위원	-	2.6	51.3	43.6	2.6	100.0(39)	3.46(0.60)	0.17				
현장관찰자	-	13.2	32.1	43.4	11.3		3.53(0.87)	0.17				
1- 11 11-1	43 -3 E	-> > > > > > > > > > > > > > > > > > >	3 -3 3 -	- 1 .11	3 3	2 . 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중요한 질 관리 방안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본 조사 결과 심의위원 및 현장관찰자의 다수인 91.3%가 어린이집의 질 관리 방안으로 평가인증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매우 효과있

다는 응답이 62.0%이다. 이러한 평가는 현장관찰자가 심의위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V-3-28 참조).

〈표 IV-3-28〉 평가인증제도의 어린이집 질 관리 효과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효과없음	별로 효과없음	보통	조금 효과있음	매우 효과있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	4.3	4.3	29.3			4.49(0.78)	
심의위원	-	7.7	5.1	43.6	43.6	100.0(39)	4.23(0.87)	0 11**
현장관찰자	-	1.9	3.8	18.9	75.5	100.0(53)	4.68(0.64)	8.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p < .01

기준점수 미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관리 방법으로는 현행 유지하되 재참여시 평가인증 컨설팅과 의무적 연계가 47.8%로 가장 높고, 다음이 현행 방법인인증유보로 발표 후 재관찰이며, 인증에 통과할 때까지 미흡한 부분 개선 후 발표 10.9%, 인증유보로 발표 후 평가인증 전 과정 다시 참여 7.6%의 순이다(표IV-3-29 참조).

심의위원과 현장관찰자 의견 중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현행 유지하되 재참여 시 평가인증 컨설팅과 의무적 연계를 선택한 비율로, 현장관찰자가 54.7%로 심의위원 38.5%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표 IV-3-29〉 기준점수 미달 어린이집의 질 향상 방안

단위: %(명)

						L /11. /0(0)
구분	인증유보로 발표 후 평가인증 전 과정 재참여	인증유보로 발표 후 재관찰(현행)	인증 통과까지 미흡부분 개선 후 발표	재참여시 평가인증 컨설팅 의무연계	기타	계(수)
전체	7.6	29.3	10.9	47.8	4.3	100.0(92)
심의위원	10.3	33.3	17.9	38.5	-	100.0(39)
현장관찰자	5.7	26.4	5.7	54.7	7.5	100.0(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임.

#### 마. 시사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2년 6월말 기준 80% 이상의 어린이집이 인증에 통과하였다. 유지율이 63% 수준으로 다소 낮기

는 하지만 이제는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양적 확대보다는 평가 운영방식의 보다 세밀한 설계로 평가결과와 질적 수준 관리 및 보상과의 연계가 필요한 시 점이다. 제3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운영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실제 이번 조 사결과에서도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현장관찰 파견인원 조정, 인증 유효기간의 다양화, 점수결과와 재정연계 방안, 통과점수가 낮은 인증 어린이집 대상 집중 지원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주기 평가인증 제도 운영과 관련한 보육관계자 조사의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관찰 시 관찰일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운영방식으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조사 결과, 현장관찰일 공지에 대한 현방식에 대해 현장관찰자는 44.9%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의 21.9%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부적절하다는 경우의 대안으로 불시방문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방식에 대해 현장관찰자의 24.5%, 심의위원의 35.9%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전체의 63.1%가 불시방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재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확인점검 제도를 2012년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확인점검 제도의 강화 혹은 불시점검 제도의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 관리 도구로서의 평가인증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현장관찰 2인 일률적 파견에 대한 적절성은 낮아서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인증 유효기간 3년에 대한 적절성은 낮아서 인증기간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평가인증의 차수 진행과 더불어 인증기간의 차등화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확인 점검 선호도가 가장 높고,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현장관찰자의 신뢰 정도는 매우 낮 다. 통과 기준 점수가 낮은 인증 어린이집 대상 집중 지원교육 등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지방정부 역할로 강화되어야 할 사항은 사후관리를 지적한 비율이 높다.

넷째, 평가인증 점수 공개는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아서 공개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냈다. 이는 이미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어 있다. 평가인증 통과기준 점수 75점에 대해서는 70%가 상향조정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현재의 점수결과와 교재교구비 등과의 재정연계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이 보다 강력한 연계 수단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여섯째, 심의 점수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데, 어린이집 특·장점 점수는 하향 조정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항목에 걸쳐 현장관찰자의 의견은 심의위원보다 현행 평가인증 제도의 전반적 강화를 선호하고 있다. 현장관찰자는 현장과 제도의 최접점에서 활동하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실상을 잘 알고 있기에 현행 제도의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장관찰자의 응답은 일정한 방향을 나타내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이들이 동질적 전문가 집단으로의 성격을 강화해가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원장과 공무원이 상당수포함된 심의위원들의 응답은 현장의 이해를 상당부분 반영하면서 사안에 따라다양한 의견들은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볼 때,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장관찰자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심의위원의 선정 방식과 역할은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V.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아이사랑 플랜에 기초한 최근 4년간 보육정책은 크게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고, 또한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앞에서의 평가 결과, 지방정부 사업, 주제별 심층 검토 결과 등에 의거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59)

# 1. 향후 정책과제

#### 가. 비용 지원체계

## 1) 논의

지난 수년간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2010년 다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취업모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감면실시, 2011년 다문화가족 자녀 전액, 2009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도입, 2012년에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2012년 0~2세아 무상보육 등을 추진하였다. 2013년부터는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결정하였다.

이러한 지원의 확대에 힘입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대비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영아 54.1%, 유아 42.0%로 전체 평균 48.0%로 증가하였다. 보육예 산도 국고 약 3조, 지방비 포함 6조 1300여억원에 이른다. 어린이집 5세 누리과 정 예산은 4500여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별도로 지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양육수당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위주의 정책이었다. 보육예산의 98%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무 엇보다도 2012년에는 갑자기 전년도 말에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된 영아 무상보 육으로 보육수요가 폭발하여 15만명의 영아가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지방정부의 분담금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었다. 결국 국고 부족분 2478 억원 이외에도 지방정부 추가 분담금 6639억원 중 4351억원을 중앙 정부가 부

<sup>59)</sup> 아이사랑 플랜(2009-2012)에 이은 차기 중장기 발전방안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별도의 과 제로 추진하므로 본 장에서는 주제와 추진 방향성만 제시하였음.

담하게 되었다. 또한 정작 취업모 등 보육 실수요자는 마땅한 어린이집이 없어서 애를 먹었고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전업주부들은 불안정한 입장에서기도 하였다. 정부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보육 공급 확대를 추진하였고, 그결과로 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가 대두되기도하였다. 이는 모두 아동이 배제된 채 벌어졌던 일이다. 그러나 이를 기회로 인간 생애주기에 영아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가적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 2) 정책과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육 지원 재설계안을 내 놓았다. 이는 보육시간을 이원화하여 단축형과 종일제로 구분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비용 지원은 기본보조금을 폐기하고 대신에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주고 이를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다.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70%에만 지급하고 그 이외 계층은 양육수당만큼 자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무상보육 폐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비용을 이용시간과 연계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이 없이 운영시간을 이용시간으로 동일시하면서 보육료도 단일화하여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르게 귀가하는 아동도 상당수이다.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서비스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을 도입하고,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구분하는 정책과 함께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을 차등 적용한다 이용시간을 오후 2~3시 경에 귀가하는 유형과 종일제로 구분하고 비용도 이용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수납하는 보다 세밀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미취업모 자녀의 둥원시각은 비교적늦게 때문에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혼란이 우려된다.

인천 남동구에서 소규모나마 유사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표준보육비용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여 비용 지원 수준에 반영한다.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기적 산출이 가능한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의 확보를 통하여 주기적 산정 예산을 확보하는 일 도 필요하다.

표준보육비용은 포함하는 항목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표 준'이라는 관점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주기적 산출을 명시한다. 표준보육비용에 어떤 항목의 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제공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가장 많은 영향을 비치는 요인이 교사 인건비이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보조교사나 비담임교사 배치등과 같은 근본적이고 전반적 개선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용시간을 다양화하여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차등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이용시간별 보육서비스 비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은 비용 지원 수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셋째, 기본보육료를 부모보조금으로 개념을 정립한다.

기본보육료를 보육바우처에 담는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기본보육료를 시설 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나 영아 기본보육료는 부모보조금이므로 바우 처에 담거나 양육수당 형태로 부모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이는 9 월 25일자로 보건복지부60)가 발표한 '실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 편 추진' 내용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경우에 시설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고 지원을 받는 사업은 그 국고가 어떠한 형태로 지원되건 모두 정부의 지도·감독 대상이다.

넷째, 양육수당은 소득계층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다소 올린다.

양육수당 소득수준 기준을 조정하여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보육료 지원과 비교하여 일부 소득계층은 소득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조치이다.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 대체제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은 현재보다 는 다소 증액되어야 한다. 보육서비스 대체 양육수당과의 정책적 조화가 필요하

<sup>60) 2012. 9. 25.</sup>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다. 그러나 양육수당 정책은 주의가 필요한 정책으로 정책적 접근에 유의한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있으나 어머니 경제활동 참여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또한 보육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 수준 결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보육정책의 기본철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수준의 수위를 조절하여야 한다.

보육서비스 대체로서의 양육수당은 영아 대상 정책이어야 한다. 현재 저소득 층 영아에게서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한다고 하겠으므로, 국가유아 커리큘럼인 누리과정 대상인 유아로의 확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부모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에 따라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최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 1) 논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은 다문화가족, 장애아동, 취업모, 전업주부 등 부모의 요 구에 따른 지원 정책의 추진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성과를 이루었으나 부분적으 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시작 단계인 부분들도 있다.

2010년 다문화가족 영유아 무상보육 도입 및 프로그램 지원, 장애아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편의 제공 강화로 한다는 취지로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 2009년부터 개보수와 장비비를 지원하였다. 2011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장애아 진단·평가·배치 및 보육 지원 체계 마련, 장애아전문, 통합, 일반시설 분류체계의 전환등 보육 지원시스템 마련, 취업모 자녀 1순위 지정,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2012년 2월에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여 아이돌보미 파견보육의 법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2011년에 처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비용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보육비용 지원이 취업모 자녀 등 부모들의 보육 요구의 차이에 대한 차등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되어 모의 취업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형 지원 측면은 부족하고, 어린이집 중심의 12시간 보육으로 획일화된 정책이 필요 이상의 보육서비스 이용으로 아동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용시간과 유형의 다양화, 부모-자녀 이용시설 확대를 포함하여 수요자 맞춤 서비스의 제공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 2) 정책과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축형 보육, 단시간 정규, 일시보육 등 어린이집 서비스 시간 유형을 다양화한다.

정규 보육과정을 오후 2시경 귀가하는 단축형과 오후 6시 반경에 귀가하는 종일제로 구분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사 근로 강도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취업모 자녀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동의 등원시각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보다는 귀가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운영상 합리적이다. 오후 6시 반 이후 보육은 시간연장보육으로 개념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단축형인 반일제는 기본으로 모든 부모에게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종일제는 부모의 취업, 가족 간호, 임신·출산 등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자녀 보육 지원 기준을 달리하고, 이외의 가정 사정을 반영하여 지원 기준을 이원화한다.

아울러 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를 위하여 일시보육이나 단시간 정규보육을 개발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한다. 단시간 정규보육이나 일시보육은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하거나 별도 유형의 기관을 두어 운영한다.

둘째, 전국에 보육정보센터를 균형 배치하고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를 구축한다.

영유아를 기르는 부모가 자녀 양육 관련 정보나 상담을 지원받고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오프라인 기능 확대도 필요하다. 보육정보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가 설치되어야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는 인구규모에 따라 권역별로 복수 설치한다. 설치비 이외에 운영비도 지원하여야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다.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서비스 집행기관으로서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

파견보육 사업 등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을 브랜드화하여 기관 및 사업 인지도를 높여서 부모들의 활용 가치를 제고한다.

또한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보육정보센터 자녀양육 지원 전달체계도 구축하여 정보와 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하는 전국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배치는 물론 명칭까지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 민간 단체 위탁으로 운영되어, 각 지방이나 운영자역량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이 달라진다. 보다 효율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장기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명칭도 정보포털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정보'보다는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이돌봄 인력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돌봄인력을 가정에 파견하여 아이를 돌보게 하는 파견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공적 파견보육인 아이돌보미 사업의 비예산 부분을 확대하여 정부 지원 없이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부모의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아이돌보미뿐 아니라 영리회사에서 파견되는 베이비시터를 포함하는 모든 보육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자격 제도를 도입,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을 받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파견보육서비스의 질이 일정 수준 유지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돌봄인력 단기교육이 실 시되어야 하며, 이들 인력을 등록시켜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넷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 등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보편화 정책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보육료 지원의 보편화가 이루어져도 공평한 출발이라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은 필요하다. 공평은 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특별활동 비용을 지원하거나 농촌에 특별활동 강사를 파견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아동 인지발달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 구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원의 실효성을 확 보하고, 장애아 보육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역적 균형 배치와 더불어 '장애아 동복지지원법' 등 법적 기준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한다.

#### 다. 보육서비스의 질

### 1) 논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을 활성화하고 특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안전을 개선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평가인증은 2010년부터는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조정하였다. 무엇보다 필수항목을 두어서 법적 기준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평가인증 결과는 부분적으로 지원과 연계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2010년에는 표준보육과정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평가인증 지표 중 보육과정 관련 세부기준을상향조정하고, 표준보육과정 활용에 대한 상담, 교사 및 원장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5세 누리과정의 도입을 반영하여 0~4세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하고 고시하였으며 개정안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2011년 3월 14일자로 특별활동 프로그램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특별활동참여에 대한 선택권 보장, 오전 일과 시간 동안에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금지, 24개월 미만의 영아 특별활동 운영 금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관련 각종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열악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다.

보육환경이나 서비스의 질적 제고도 많은 노력을 하여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시설 설치나 안전 면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다. 어린이집 진입 기준을 높여서 건물을 자가 시설로 한정하고 보육시설=건물+대지로 개념을 전환한다는 계획과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식당교사실, 수유실, 세탁실, 상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을 필수 지원시설로의 규정은 추진하지 못하였다

평가인증제도로 어린이집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제도로 비교적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증유지율은 64% 정도에 머문다.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연계는 교 재교구비 등 미약한 수준이므로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증유지율은 크게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하다. 표준보육과정 등 보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사 교육 등 정부 지원은 유아교육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3~5세 유아 전체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누리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모니터링 및 평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주요 과제가 된다.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도 정부 특별활동 관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다.

#### 2) 정책과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향후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내용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과 교사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화하여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 운영에서 내용 상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자율 장학등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장려한다. 특히 3~5세 누리과정의 실시로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서 유치원과의 비교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전문인력의 균등 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시·도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시·군·구와 연계하면서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는 물론 안전 교육이나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안전 점검 지표를 마련하여 안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안전 관련 점검 실시를 권장하고, 어린이집 안전 설비 기준의 준수를 독려하며, 기능보강비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을 갖추어야 인가하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대상의 아동권리나 안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교사와 원장의 아동권리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한다.

셋째,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침을 지키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추가 부담을 없앤다.

우선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특별활동 관리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영아의 특별활동, 유아의 오전 특별활동은 금지하고 부모의 선택권도 보장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추가적 부담 없이 질 높은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표준보육과정 내실화를 통하여 일부 활동은 표준보육과정 운영에서 흡수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활동으로 실시하는 표준보육과정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에 관한 교사 교육을 충분하게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담임교사 등 추가인력 배치에 의한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보육교사 이외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예체능 등의 특별활동은 전문 강사를 파견하거나 보육비용에 이러한 특별활동 강사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농어촌 등 취약지역부터 우선 적용한다. 아동인지발달서비스 바우처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제도로 전환하고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제도로 개편하여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도록 한다.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고 공개하여 부모들이 보다 상세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운영체계도 평가체계에 적절하게 전면 개편한다. 우선 점수체계를 현장관찰결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본 조사 결과 현장관찰자는 동질적 전문가 집단으로의 성격을 강화해 가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의 평가결과 활용을 증가시킨다. 즉, 평가인증 점수 산정 시에 관찰평가 점수 배점을 높이고, 자체평가나 심의위원 점수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관찰 시 관찰일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운영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평가가 없는 기간에는 불시 점검 등의 방법으로 평가 당시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인 증의 차수 진행과 더불어 인증기간의 차등화를 시도할 필요도 있다. 또한 평가결과와 보육바우처를 통한 재정 지원을 강력하게 연계한다.

다섯째, 민간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자가 등으로 강화하고, 자가인 경우에 자기 자본 비율을 규정한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강화도 향후 주요 과제이다. 개인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자가 시설로 한정하고 보육시설을 건물과 대지가 합쳐진 개념으로 전환한다. 또 한 자가인 경우에도 자기자본 비율을 제시하여 보육비용의 효율적 사용 여건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는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 적 접근법이다. 건물 임차료나 융자금 이자 부담 없는 운영은 질 높은 운영에 필수 조건이다.

또한 어린이집 환경 강화 조치로 일정규모 이상 어린이집은 식당, 교사실, 수 유실, 세탁실, 상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을 필수 지원 시설로의 규정한다.

여섯째,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화와 정보 공개를 제도화한다.

개인이 투자,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부모 참여와 운영 투명성 제고, 정보의 공 개 강화 등 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주요 정책과제이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들어 일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보고를 추출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어린이집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운영위원회나 부모모니터링 활동에 부모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라. 어린이집 균형 배치

#### 1) 논의

어린이집 균형 배치 사업으로 국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 설치를 추진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09년에는 91개소, 2010년 117개소, 2011년 45 개소가 추가되었고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사업을 실시하여 2011년 말 기준,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24개소, 이동식 놀이버스 10개소, 부모협동놀이방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5년간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세율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설치비 융자 규모도 2010년에 7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시설전환비 지원금도 늘렸다. 2011년에는 산업단지에 해당 기관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고, 2011년 12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를 법제화하였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장소 제한을 삭제하고,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하였다. 2011년 한반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도입되어 2012년현재 총 664개61)가 운영되고 있다.

<sup>61) 1</sup>차는 2011년 6월~7월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을 받았고, 7월 선정기관 발표하였음. 2차는

어린이집의 확충으로 2011년 말 현재 39,000여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도 영아 54%, 유아 42%로 총 48%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는 미미하다. 확대 계획 자체를 축소 조정하여, 현재 연간 10개 미만 수준의 신규 확충 예산이 배정되었다. 보육재정의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어린이집의 공공성 제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공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질적 수준, 지원 수준,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신하기 어렵다.

#### 2) 정책과제

질 높은 어린이집을 전국에 균형 배치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아동 기준 50% 보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전국에 균형 배치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재정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현재 설치비 지원 제도 속에서의 개선으로는 지원 항목 대상을 건축비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비용 기준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지원 단가를 확대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기준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아동 규모당 일정 규모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배치되도록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시에 국고로 전액 지원하는 등 기존의 지원 틀을 벗어나는 강력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의 균형 배치 원칙이나 기준, 그리고 설치비 지원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특별한 법의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

최근에 민간 기업이나 기업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대규모 확충 목표를 채울 수 없다.

둘째,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제반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폐지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질 높은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

<sup>8</sup>월에 신청을 받아 8월에 발표하고 일부지자체는 10월에 발표함. 3차는 경기도와 인천지역만이 포함됨.

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선정 기준 항목, 배점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특히 90점 이상이 과반수를 넘는 상황이므로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 점수는 크게 상향조 정되어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도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 지원 방식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교사수를 반영하는 반당 지원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으로는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클린카드 사용, 취약보육 이외에 운영시설 제한, 특별활동 지침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체계로 정기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재무회계 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본보조금이 들어가며 부모 부담 감면이 없이 공공형 어린이집에 포함된 가정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사실 장기적으로 유아보육기관에도 누리과정 실시로 지원단가가 오르고 오후반 비용 지원금이 들어가면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마.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1) 논의

지난 수년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평가 관리체계 마련, 예비 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기준 마련,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 대학 보육교사 자격 이수 현 12과목 35학점을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육교사 실습교육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였다. 또한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필수 직무교육 80시간,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으로 상향조정,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을 위한 경력 2년으로 조정 등을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대체교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011년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5만원을 확보하였고, 2012년에 10만원으로 증가되었다. 이외 누리과정 담당 교사에게는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보편적 근무환경 개선비, 누리과정 교사 수당, 대

체교사 제도 등 부분적으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무라는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대체교사는 총 526명 규모로 17만명의 교사에 대처할 수 없다. 연가 이외에도 교육, 훈련,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보육인력 관리를 통합보육정보시스템과 연계시킨다는 목표도 향후 인력관리의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보육관계자 의견조사에서도 아이사랑 플랜 중 가장 성과가 낮은 과제 및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보육인력의 전문성 추진전략 및 그 세부과제를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 2) 정책과제

보육인력의 자격체계, 처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인력 자격체계를 개편하고, 급여 수준을 조정한다.

교사-주임교사-원장으로 이어지는 단일 자격체계를 구축하여 보육교직원의 전 문성을 강화한다.

학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격 기준은 개선한다. 보육교사의 학력 또한 장기적으로는 4년제 학사출신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육교사 3급을 폐지하거나 보조인력화하여 보육교사교육원을 보수교육기관으로 전환한다.

기준 학력 조정과 함께 보육교사의 기본급 및 수당은 상향조정하고 학력 차이를 호봉에 반영한다. 급여는 호봉제에 근거하여 구조와 명목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지원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져야 하며 인건비가 높은 경력자가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근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주임교사제도를 신설하여 전문학사와 학사취득자 간의 차별과교사 경력에 따른 장기근무자를 우대하는 차등화를 도입한다.

둘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교사를 위한 근무여건 기준을 마련한다.

교사들의 월차휴가, 경조사휴가, 병가휴가, 생리휴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산후휴가 등도 법에서 정한 바대로 시행되도록 대체교사를 확보한다. 특히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수체계 개선과 함께 비급여 복무실태 개선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보육교 사의 책상은 물론 가방이나 소지품을 넣는 수납공간이나 휴식공간이 별도로 있 어야 하고, 교사 개인을 위한 공간의 시설 기준이 법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하는 등 교사가 근무하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교직원의 보육직무의 안정성과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2개 반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확산시킨다.

셋째, 추가 인력 배치, 이용시간 체계 개편 등으로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도입된 대체교사 제도는 당분간은 교사 수를 증가시켜 연가 이외에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력의 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원 체체나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 체제와 더불어 보조교사 또는 종일제교사를 배치하는 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연령, 부모의 취업 유무에 따라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자녀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보육하고 종일제는 취업모 등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적용하여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아동 입장에서도 모두 바람직하다. 교사는 근무시간 동안 아동과 내내 함께할 경우 다음 날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질 높은 보육이 불가능하다. 뿐 만 아니라 격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윤선화, 2012) 보육교사직이 지속가능한 직종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넷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강화 및 교육명령제를 도입한다.

현재 보수교육 실시 시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급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으로 정해진 지원 예산 수준은 개선되어야 한다. 반당 50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 단가가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명령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보육인력을 모두 관리하면서 정해 진 일정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 육인력의 자격과 경력의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2. 맺는 말

본 보고서는 아이사랑 플랜의 실적을 검토하고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고, 개별 정책으로 양육수당,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및 평가인증운영체계를 검토하였다.

지난 수년간 보육정책은 크게 발전하였다. 무엇보다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 2008년에는 보육아동 중 약 68%의 아동이 보육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받았으나 2012년에는 3, 4세아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액 지원 대상이다. 영아 무상보육 폐기 논란이 있으나 사실상 명목상의 무상보육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나 지도·감독 강화, 자율적 노력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질 문제, 재정의 효율적 사용, 서비스의 획일화와 다양성 부족,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다.

질 높은 어린이집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국에 균형 배치하고, 이와 더불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자가 시설로의 제한 등 인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인증제도는 참여율은 높으나 인증유지율은 64% 정도에 머문다. 평가인증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고 엄격한 평가과정과 사후관리의 실시, 그리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육재정의 증가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가정의 여건과 무관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뿐 아니라 아동발달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있다. 종일제 12시간 보육으로 획일화된 정책은부모 선택권 보장에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필요 이상으로 길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아동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면에 단시간의 편법적 이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다.

또한 취업모, 전업주부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측면은 부족 하여 이용시간과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부모-자녀 이용시설 확대를 포함하여 수요자 맞춤 서비스의 제공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어린이집의 보 육서비스와 더불어 아이를 기르는 부모 지원 방식도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아이사랑 플랜에 대한 보육관계자 평가에서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보육인력인 보육교사의 급여나 근로기준법 준수와 같은 전반적인 근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의 정비 또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나 선택권 보장 이외에 어린이집 운영에의 부모 참여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제고 또한 보육정책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보육정책 과제는 차기 아이사랑 플랜 수립에 반영되어 적극 추진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공공성을 확보한 어린이집에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은 완화되고 나가서 출산 수준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치원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예산 집행 현황 및 2012년 예산. 내부자료.
- 권미경·김문정(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부산광역 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 박세경·강혜규·김은지·박소현·정세정(2010). 아이사랑 카드제도 효과성 평가 2차 연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8-2011).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8-201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8-2011).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2008-2012). 보육예산 설명자료.
- 보건복지부(2008-201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09). 아이사랑 플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9-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시설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보육시설). 보건복지가 족부.
- 보건복지부(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2006). 2006 한국의 아동지표. 보건복지부.
- 서문희·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 책개발센터.
- 서문희·김온기·김명순·서영숙·이완정·서소정 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최혜선·성혜영(2010).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계 개편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김진경·유해미·조혜주·김명순·서영숙 외(2011).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 방안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해설서 작성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 서문희·양미선·도미향·송신영(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 링 및 평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2011).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 육 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윤진·유해미·송신영·김세현(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도남희·송신영(2011).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1-05.
- 서문희·양미선(2012). 시간연장보육 이용 실태 및 수요 조사.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2005-200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여성가족부(2005-2007).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윤선화(2012). 보육교사의 안전 및 건강 실태. 생활안전연합.
- 이미화·서문희·최윤경·엄지원(2012).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

- 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장혜진·권미경·한영숙(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건강가정진홍원(2011). 2011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 홍원
-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France: OECD.
- Piketty, T.(1998). L'impact des incitations financières au travail sur les comportements individuels: une estimation pour le cas français. Economie et prévision, 132~133.

# Achievements of the Childcare Policy in 2012 and Future Tasks

### Moonhee Suh Hyejin Ki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childcare policy being promoted through the Ai Sarang Plan during the period of 2009~2012 and to make suggestions as to future medium/long-term childcare policy. Additionally, in the interests of conducting an in-depth review of the major projects of the government, 3 initiatives including child nurturing allowance, a pilot project of the dualization of using-time and fee of childcare centers, and the operation of an accreditation system for childcare centers during 2010~2012 were studied in detail.

Owing to the promotion of the Ai Sarang Plan over the past 4 years, childcare service has achieved a positive outcome,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the strengthened policy of moderating the burden of childcare on parents, the total childcare project budget was expanded to \(\pi\)7.1Trillion,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s total budget of \(\pi\)6.13Trillion, and the local government's budget for special projects, which accounts for 16.2% of the central government's budget. However, such issues as the installation of too few public childcare centers, a lack of quality control within private childcare centers, insufficient facilities for the use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the ne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for childcare teachers and the enhancement of their expertise were al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e undertaking of future tasks.

The study proposes that the first future task should be to address the present insufficiency of the child nurturing allowance as reported by the majority of parents of children aged 0~2 years old on the threshold of

poverty, who stated that \$\#300,0000\$ would be a more reasonable figure.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non-beneficiaries of the current nurturing allowance and users of childcare centers also replied that they would take care of their children at home without using childcare centers any longer if the child nurturing allowance were to be expanded. If childcare subsidies are increased,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may be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enroll in childcare centers, thus care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when adjusting the relevant policy.

As a second broad-gauge task, the outcome of a five-month pilot project involving the diversification of time-use at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Namdong-gu, Incheon was assessed. This task was a meaningful mission whose goal was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a system by changing the existing uniform structure in such a way that the regular childcare center's course was divided into two types: the 'whole-day type' and the 'shortened type', parents being allowed to choose whichever they preferred. As a result of the pilot project, the operational burden of the operator was reduced due to the reduced number of children being left at the center until midnight, and the satisfaction of teachers as regards their working environment was increased due to the reduced childcare burden. However,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pilot project's design, it is hard to validate its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feedback from the relevant childcare personnel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second year of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childcare centers, issues concerning the necessity of diversification of the accreditation period, intensified follow-up, disclosure of accreditation scores, and the instances of sudden conversion to a visit system at the time of site inspections were raised by participants. It was revealed that in relation to the majority of concerns, site observers tended to prefer a general strengthening of the existing accreditation system to an evaluation by committee members. On the other hand, the responses of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reflected diversified opinions case by case, as well as considerable understanding of the operations of their particular site.

# 부 록

# 부록 1. 조사표 4종

-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표
-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표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표
-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표

#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 일반연구과제인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Ⅲ)」의 일환으로 아이사랑 플랜(2009-2012)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연락처 서문희 선임연구위원 02-398-7711, suhmh@kicce.re.kr 김혜진 연구원 02-398-7729, hjkim@kicce.re.kr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성별	□남 □여	연령	만세
최종학력	□ 고졸이하	□ 전문대 죝	졸 □ (4년제)대 졸
अरुध्य	□ 대학원 이상	□ 기타	
	□ 보육관련 중앙정부	-공무원	□ 보육관련 지자체 공무원
직장유형	□ 보육관련 교수, 강	사, 연구원 등	□ 현장전문가(보육정보센터, 진흥원 됨)
	식장유형 □ 보육관련 교수, 장시 □ 기타		) 
거주지	A·	도	시·군·구

### I. 아이사랑 플랜 정책 비전과 3대전략

1	귀하는	정부의	중장기보육계획인	아이사랑	플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	----------	------	--------	----------

- ① 전혀 모름 ② 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임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임 ④ 매우 잘 알고있음
- 2. 정부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아이사랑 플랜의 비전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6대 목표를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의 보육정책 비전이 적절히 설정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함
- ② 대체로 적절함
-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음 ④ 매우 부적절함
- 3.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아이사랑 플랜 비전의 성과 정도와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정도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				
구분	1	2	3	4	1	2	3	4	
	전혀	별로	대체로	매우	매우	불필요	대체로	매우	
	안됨	안됨	잘됨	잘됨	불필요		필요	필요	
비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 4. 정부는 아이사랑 플랜 3대 추진전략으로 영유아 중심 정책, 국가책임제 보육 확대, 신뢰 회복으로 설 정하고 2009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의 보육정책 추진전략이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함
- ② 대체로 적절함
-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음 ④ 매우 부적절함
- 5. 제시된 아이사랑 플랜 비전의 3대 전략에 대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각 전략의 성과 정도와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정도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					
구분	① 전혀 안됨	② 별로 안됨	③ 대체로 잘됨	④ 매우 잘됨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1) 영유아 중심 정책										
2) 국가책임제 보육 확대										
3) 신뢰회복										

- 6. 위의 3가지 아이사랑 플랜의 전략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달성한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버
- 7. 위의 3가지 아이사랑 플랜의 전략 중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번

# II. 아이사랑 플랜 정책 6대 추진과제

8.	정부는 아이사랑 플랜 6대 추진과제로 양육비용 부담 완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질	제고
	및 균형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강화, 보육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2009
	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의 부육정책 추진과제가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함
 ② 대체로 적절함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음
 ④ 매우 부적절함

● 제시된 **아이사랑 플랜 정책의 6대 추진과제**에 대하여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각 과제의 성과 정도와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과제별 세부과제는 아래 Ⅲ번 질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	과 정	도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				
구분		2	3	4	5	6	7	(I)	2	3	4)	
				보통			퍼우 큼	매우 불필요	불필요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1)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완화되었는가												
2) 아동·부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												
3) 어린이집 서비스 질이 제고되었는가												
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높아졌는가												
5)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가												
6) 보육정책에 대한 지원체계의 마련으로 보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가										-		

9.	위의	6가지	아이사랑	플랜의	추진과제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달성한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
	호를	써 주	십시오.								(			) է	Ħ

10.	위의	6가지	아이사랑	플랜의	추진과제	중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ē	하나민	골라/	너 번호를	써 주십.	시오.				(				) 번

#### Ⅲ.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과제의 양육비용부담 경감의 효과성과 모의 사회활동 진출에의 도움정도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의 효과성 모의 사회활동 진출에의										도움	정도		
구분		2	3	4	5	6	7	1	2	3	4	5	6	7
				보통			매우 큼	전혀 없음			보통			매우 큼
1) 만0~2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2) 만3~5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3)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4) 농업인 보육료 지원 확대														
5)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확대														
6)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확대														

- 11. 위의 6가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세부과제 중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가장 큰 효과를 달성한 과 제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번
- 12. 위의 6가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세부과제 중 모의 사회활동 진출에의 도움정도에 가장 큰 성과를 달성한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번
-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과제의 성과 정도와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과 정	]도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			
구분	1	2	3	4	5	6	7	1)	(2)	(3)	<b>4</b> )
1.5	전혀 없음			보통			매우 큼	매우 불필요	불필요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1) 보육료 단가가 현실화되었는가											
2)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가											

13.	이 외에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b>완화</b> 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디	ł.											

●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과제**의 성과 정도와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과 정	도			향후	지속적약	인 추진	필요성
구분	1	2	3	4	5	6	7	1) 0	2 H 71 A	3	4
	전혀 없음			보통			매우 큼	배구 불필요		대체로 필요	매구 필요
1) 다문화가족 아동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 다문화가족의 양육부담이 경감되었는가											
2)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되어 다문화가족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3) 다문화 프로그램 이수 보육교사 양성체계가 마련되어 다문화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는가											
4) 장애아어린이집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5)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강화 및 처우가 개선되었는가											
6) 장애아 보육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장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줄어들었는가											
7) 소득인정액 및 산정방식 차별화 등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강화되었는가											
8)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이 경감되었는가											
9)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양육부담이 경감되었는가											
10) 영아보육 지원의 확대로 (영아전담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 등) 영아 가정의 양육부담이 경감되었는가											
11) 가정 내 자녀양육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 (육아종합지원 센터 등) 양육부담이 경감되었는가											
12) 실수요자(다자녀, 장애아 부모 등)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											

12) 실수요자(다자녀, 장애아 부모 등)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  14. 위의 11가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세부과제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달성한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번  15. 위의 11가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세부과제 중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번  16. 이 외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무담이 경감되었는가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번 15. 위의 11가지 <b>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b> 세부과제 중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번 16. 이 외에 <b>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b> 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적어주시기	12)		<sup>벅</sup> 절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번 16. 이 외에 <b>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b> 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적어주시기			세부과제	중 가장	け 많은	·성과를 [	달성한 괴 (	세는 무	<sup>!</sup> 엇인지	
				중 앞	으로 지	속해서 =	추진해야혈 (	할 필요기	가 있는	
			현하여 기	내선이 필	요한 브	부분에 대	한 의견을	유로 자유로	<u>!</u> 이 적0	<del> </del> 주시기

●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어린이집 질 제고 및 균형배치** 과제의 성과 정도와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정도 향후 지속적인 추건 1 2 3 4 5 6 7 ① ② ③ 저희 미우 매우 불필요 대체5					인 추진:	필요성				
구분	1	2	3	4	5	6	7				4
	전혀 없음			보통			매우 큼	매우 불필요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1) 어린이집 환경기준 재정비로 어린이집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2)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관리가 강화되었는가											
3)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이 강화되었는가											
4)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5) 아동의 특성 및 발달정도를 세심히 고려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개발로 보육서비스 질 이 향상되었는가											
6) 비용부담 적은 프로그램 보급방안을 마런하여 프로그램 활용도가 제고되었는가											
7)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평가방안 마런으로 보육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는가											
8) 시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특별활동 내용 및 빈도에 대한 표준기준 마련으로 적절한 특별활동이 이루어졌는가											
9)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부담을 완화하여 평가인증이 활성화되었는가											
10) 인증참여 유지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평가인증이 활성화되었는가											
11) 평가인증 지표 개편 및 운영체계가 개선되었는가											
12) 보육수요 추계를 통해 적재적소에 어린이집이 확충되었는가											
13)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었는가											
14)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확충되었는가											
15)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되었는가											
16)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확산되었는가											
17) 어런이집 서비스 계약제 도입 (공공형, 서울형, 부산형 등)을 통해 부모 비 용부담을 줄고 민간어린이집 서비스질은 항 상되었는가											

17.	위의 17가지 <b>어린이집 질 제고 및 균형배치</b> 세부과제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달성한 3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번
18.	위의 17가지 <b>어린이집 질 제고 및 균형배치</b> 세부과제 중 9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과
	제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번

19. 이 외에 어린이집 질 제고 및 균형배치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적어주시기

19. 이 외에 **어딘이입 걸 제고 및 판양매시** 산단 개선이 필요한 구문에 대한 의견을 자규모이 식어구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과제의 성과 정도와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정도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           1 2 3 4 5 6 7 ①         ②										필요성
구분	1	2	3	4	5	6	7	1	2	3	4
	전혀 없음			보통			매우 큼	매우 불필요	. – –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가 이루어졌는가											
2)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평가체계 마련으로 보육인력 전문성이 제고되었는가											
3) 보육실습 기준이 마련으로 예비교사의 실무경험, 현장전문성이 제고되었는가											
4) 보육인력의 자격변동 정보를 연계하여 보육교직원 자격관리가 강화되었는가											
5) 보육인력 전문성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자격체계 정비 방안 연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6) 보육교사의 임금현실화를 통해 보수수준이 개선되었는가											
7) 보육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등 불가피한 공백해소를 위한 대체교사 인력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졌는가											
8) 근무환경이 열악한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 처우가 개선되었는가											
9) 초과근무수당 지원비 지급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었는가											

	9) 초과근무수당 지원비 지급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었는가											
•	20. 위의 <b>9</b> 가지 <b>보육인력 전문성 제고</b> 세부과제 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중 7	' 장	많은	성과	.를 달	달성현	· 한 과 (	제는 5	무엇인지	하나[	만 골라 ) 번
2	21. 위의 9가지 <b>보육인력 전문성 제고</b> 세부과제 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중 (	<u> </u>	로 지	속해	서 추	트진히	배야힐 (	발 필요	가 있는	: 과제:	는 무엇 ) 번
2	22. 이 외에 <b>보육인력 전문성 제고</b> 관련 개선이 원	필요	한 부	분에	대한	<u></u> 의	견을	자유	·로이 <sup>3</sup>	적어주시	시기 바	랍니다.

●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과제의 성과 정도와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과 정	도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성				
구분	1	2	3	4	5	6	7	1	2	3	4	
, -	전혀 없음				보통		매우 큼	매우 불필요	불필요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1) 보육료 비용지원 선정기준이 간소화되었는가												
2) 아이사랑 카드를 도입하여 어린이집 이용이 편리해졌는가												

23.	위의 2가지	보 <del>육</del>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세부과제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달성한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
	만 골라서 병	번호를 써 주	십시오.						(				) 번

- 24. 위의 2가지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세부과제 중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과제 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번
- 25. 이 외에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보육정책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성과 정도와 향후 지속적인 추진필요 성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정도 향후 지속적인 <sup>2</sup>						<u>민</u> 추진된	필요성			
구분	1	2	3	4	5	6	7	1	2	3	4
1 2	전혀 없음				보통		매우		불필요		매우
	없음				٠.		큼	불필요		필요	필요
1) 보육정책 연구기능이 강화되었는가											
2) 보육사업 지원기구가											
(자격관리, 평가인증 시무국, 중앙보육정보센터 등)											
효율적으로 개편되었는가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통합, 어린이집											
검색 서비스 제공 등)											
부모, 어린이집에게 필요한 보육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는가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으로											
어린이집 사고예방과 보상기능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5)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											
6)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결과,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이 감소하였는가											
7) 부모단체·모니터링단이 활성화되었는가											

26.	위의 <b>7</b> 가지	보육정책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세부과제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달성한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리	l서 번호를 씨	서 주십시	오.					(				) 번

27.	위의 <b>7</b> 가지	보육정책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세부과제	중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무엇	선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	시오.			(		)	버

28. 이 외에 <b>보육</b> 시기 바랍니다	—	지원체계 구축	<b>축</b> 관련 가	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 의견을	자유로이	적어주
29. 귀하는 아이사	랑 플랜 정책0	저출산 해소 <sup>0</sup>	네 기여했다	가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기여함	② 어느정	도 기여함	3 4	별로 기여한 I	바 없음	④ 잘	모름	
30. 귀하는 아이사	랑 플랜 정책0	국가의 보육/	서비스 수	준 향상에 기(	여했다고 생	각하십니?	가?	
① 매우 향상됨	② 어느정	도 향상됨	3	별로 달라진	것 없음	④ 잘	모름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입니다.

저희 한국리서치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양육부담 경감 정책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 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시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연구책임자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책임자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유은정 차장(02-3014-0084)

## I. 응답자 선정 질문

1. 성일 (사중합역	1.	성별	(자동입력)
-------------	----	----	--------

① 남자(부)

② 여자(모)

2.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인가요?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f) 경남 (f) 제주

3. \_\_댁에 2009년, 2010년, 2011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신가요? 자녀가 여러 명이 라면 2009~2011년에 태어난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는 몇 년생인가요?

① 2011년 (만 0세)

② 2010년 (만1세)

③ 2009년 (만2세)

4. \_\_\_ 댁은 2012년 3월 현재,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중 다음 중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2009~2011년에 태어난 자녀 중 가장 나이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양육수당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 만 0세 월 20만원, 만1세 월 15만원, 만2세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양육수당 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여서(3인 기준 147만원, 4인 기준 180만원, 5인기준 213만원, 6인 기준 246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서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가구에 만 0세 39만4천원, 만 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보육료 지원 예)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①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다

☞ 문1로

②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 문7로

③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모두 받고 있지 않다

☞ 문15로

2.

☞ 24번으로

집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II. 양육수당 지원 가구

	※ 2009~2011년에 해 주세요.	태어난 자녀 중 가장 나이	이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
1.	① 아이가 아직 어려 ③ 가까운 곳에 보낼	서 ② 부모가 직접 키 ! 어린이집이 없어서 ④	키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어린이집에 믿고 맡기기 어려워서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2.	대해 만 0세 월 20만 고 있습니다. 내년 2 수당을 확대 지급할 보완되어야 할 사항0 ① 지원대상을 확대함	·원, 만1세 월 15만원, 만2세 013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예정입니다. 2013년 이후 8 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해	② 지원액을 인상한다
3	① 매우 만족한다	받고 있는 양육수당 금액에 ② 대체로 만족한 남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4.	께서는 자녀에게 생각하시나요? 월		수당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5.	린이집을 이용할 의형	향이 있으신가요?	, 앞으로 양육수당을 포기하고 어 지원을 받겠다 ③ 모르겠다
6.	께서는 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오른다면, 앞.	으로 양육수당을 포기하고 어린이

① 계속 양육수당 지원을 받겠다 ② 보육료 지원을 받겠다 ③ 모르겠다

## Ⅲ. 보육료 지원 가구

- ※ 2009~2011년에 태어난 자녀 중 가장 나이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7. 께서는 보육료 지원을 언제부터 받으셨나요?
  - ① 2012년 3월 이전부터 ② 2012년 3월 부터
- 8. 께서 자녀를 집에서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 ②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자녀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 ③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④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⑤ 기타
- 9. 2번 질문과 동일
- 10. 현재 양육수당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 만 0세 월 20만원, 만1세 월 15 만원. 만2세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가구에 만 0세 39만4천원, 만 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향후 양육수당 지원 금액에 변화 없이,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양육수당 지원을 받겠다 ② 계속 보육료 지원을 받겠다 ③ 모르겠다
- 11. 향후 양육수당 지원 금액에 변화 없이, 지원 대상이 전 가구로 확대된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양육수당 지원을 받겠다 ② 계속 보육료 지원을 받겠다 ③ 모르겠다
- 12. 향후 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오르고,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양육수당 지원을 받겠다 ② 계속 보육료 지원을 받겠다 ③ 모르겠다
- 13. 향후 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오르고, 지원 대상이 전 가구로 확대된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양육수당 지원을 받겠다 ② 계속 보육료 지원을 받겠다 ③ 모르겠다

- 14. 양육수당이 최소한 얼마는 되어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양육수당을 이용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다고 가정하고 응답해 주 세요.

월\_\_\_\_\_만원

#### ☞ 24번으로

## Ⅳ. 미혜택 가구

※ 2009~2011년에 태어난 자녀 중 가장 나이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15. 1번 질문과 동일
- 16. \_\_\_께서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모두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
  - ①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싶으나 대상이 안 되서 (기준보다 소득이 높아서)
  - ② 보육료 지원을 지원받고 싶으나 대상이 안 되서 (어린이집 등록 못해서)
  - ③ 정부 제도를 몰라서
  - ④ 지원 받을 필요가 없어서
  - ⑤ 소득과 재산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싫어서
  - ⑥ 기타
- 17. 2번 질문과 동일
- 18. 께서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 나요?

  - ① 매우 적정하다 ② 대체로 적정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적정하지 않다 ⑤ 전혀 적정하지 않다

19~23.. 10~14번 질문과 동일

# V. 공통 질문

								<u> </u>
24.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도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바람	직하지 않다.	고 보세요?				
	① 바람	직하다	-			② 바람적	니하지	않다
OE.	ᇉ	rl 0	즈 시디세 <del>-</del>	HEFELVILOS				

- 25. \_\_댁은 다음 숭 어디에 해낭 되시나요?
  - ① 본인과 배우자 둘 다 현재 일을 하고 있다
     ☞ 문26으로

     ② 본인과 배우자 중 한사람만 일을 하고 있다
     ☞ 배문1로
  - ③ 본인과 배우자 둘 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 배문1로
- 26.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지원 금액이 오른다면, \_\_님 또는 \_\_ 배우 자분 두 분 중 한 분은 일을 그만 두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일을 그만 둘 의향이 있다 ② 일을 그만 둘 의향이 없다

#### VI. 통계 분류를 위한 질문

- 1. 님의 학력과 배우자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재학 이상
- 2. 님의 직업과 배우자분의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농/임/어업
- ② 자영업
-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 ④ 생산/기능/노무직
-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 ① 학생
- ⑧ 무직/퇴직/기타
- 3. 님 댁의 한 달 가구소득은 얼마인가요? 보너스, 은행이자 등을 모두 포함 하여 세전 소득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① 99만원 이하
- ② 100~199만원
- ③ 200~299만원

- ④ 300~399만원
- ⑤ 400~499만원
- ⑥ 500~599만원

⑦ 600만원 이상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부모 조사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컴퍼니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의뢰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본 조사는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3월

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영

지역번호	조사유	원번호		조사표	번호	

주소	인천광역시	(	)구	(	)동
가구주명				전화번호	
아동명					
아동 코드					

#### 조사지침

- 첨부한 명단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입니다.
- 아동코드는 조사 대상 명단에 있는 4자리 코드(예: A001)를 그대로 이기합니다.
- 연령 등을 파악해서 조사 대상 명단에 있는 아동을 확인하고 그 아동을 중심으로 질문하여야 합니다.
- 한 가구에서는 한 아동만 대상으로 질문하세요.

SQ	Q1. 귀댁에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면접중단)							
*	※ 지금부터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명의 자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면, 둘 중 한 자녀 만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출생 연월일은 언제이며, 2012년 1월 기준으로 만 몇 세입니까? 또한 아동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 성별 ( )년 ( )월 ( )일 출생으로 2011년 1월 현재 만 ( )세 성별: ① 남 ② 여							
2.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출신 ① 첫째아 ② 둘째		합니까 <b>?</b> ③ 셋째아	4	넷째아 이상			
3.	가족 유형은 어떠합니까? ① 핵가족(부부+자녀) ② 3세대	이상 확대가족	· · ③ 한부모	. 가족 ④	기타			
4.	귀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집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 시간과 어린이집을 나							
		등원	시간	하운	! 시간	]		
	2012년 3월 현재	( )시	( )분	( )시	( )분	4-1 시작 4-2 종료		
	2112년 2월 (이용시간 다양화 사업사업 기간)	( )시	( )분	( )시	( )분	4-3 시작 4-4 종료		
5.	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외부 와 비용은 어떠한가요?	학원에서 하는	등 특기교육에	참여하나요? 침	함여한다면 개수	5-1 개수		
		어린이집 내	참여 특기교육	어린이집 이외	외부 특기교육	1		
		개수	월 비용	개수	월 비용	5-3 개수		
	2012년 3월 현재	( )개	( 천원)	( )개	( 천원)	5-4 비용 천원 5-5 갯수 5-6 비용 천원		
	2112년 2월 (이용시간 다양화 사업사업 기간)	( )개	( 천원)	( )개	( 천원)	5-7 갯수 5-8 비용 천원		
	6. 현재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실시에 대하여 알고 단축형을 이용해보셨습니까?  ① 알고 이용하였음(☞ 7번 질문) ②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음(☞ 8번 질문) ③ 모름(☞ 9번질문, 읽지 말것)							

	7 6번 질문에서 ①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힙	남니다.		
	7-1. 단축형을 이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	니까?		
	① 가격이 저렴해서		h녀를 기관에서 오래 두고 싶지 않아.	서
	③ 자녀가 기관에 오래 있기를 싫어해서 ⑤ 잘 모르겠음(☞ 읽지 말것)	(4) E	ト른 교육프로그램을 시키려고	
	. 7-2 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돌아 온 후에 주	로 돌봐	주는 사람은 누구이었습니까?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b>호</b>	제자매 ④ 기타 친인척	
	⑤ 보육모 등 비혈연 ⑥ 기타 성인	⑦ <b>2</b>	l음(☞ 읽지 말것)	
	7-3. 단축형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 니다.	까? 증가,	변화없음, 감소로 응답해주시기 바랍	
	1) 특기교육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① 증가 ② 변화 없음 ③ 감소	
	2)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	습니까?	① 증가 ② 변화 없음 ③ 감소	
	3) 또래와 지내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	가?	① 증가 ② 변화 없음 ③ 감소	
	4)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	- 까?	① 증가 ② 변화 없음 ③ 감소	
	7-4. 시범사업에서 단축형을 이용했을 경우, 보육 (만3/4~5세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분 51,000/인하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만 3세 보육료: 257,000원, 만4,5세 보 ① 적정 ② 더 인하하여야	49,000원 육료:243,	인하) 000원	
	7-5. 단축형으로 삭감된 보육료는 어떻게 사용하/	셨습니까?		
	① 자녀의 특별활동비 추가에 사용			
	②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추가 구입에 시	용		
	③ 가계에 보탬 ④ 기타(	)		
		,		i I
	7-6. 현재와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참여 당/	시와 비교하여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별 차이		
	③ 현재가 더 높음 ④	) 잘 모르	!겠음(☞ 읽지 말것)	
8	.6번 질문에서 ②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면	만 응답합	니다	
	8-1. 단축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가 다 취업 중이므로			
	② 모가 미취업으로 집에 있으나 어린이집	에 있는 경	것이 아이에게 더 <del>좋을</del> 것 같아서	
	③ 모가 미취업 상태이지만 다른 일로 아이	를 돌볼	수 없어서	
	④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므로	(5)	잘 모르겠음(☞ 읽지 말것)	

8-2. 일부 다른 아동의 귀가가 빨라졌는데, 이것이 귀 자녀 보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은 아동수가 적어서 소외감을 느낌 ② 남은 아동수가 적어서 우리 아이가 교사 관심을 더 받아서 좋음 ③ 별 차이를 못느낌 ④ 비해당(우리 아이 반은 일찍 가는 아동이 별로 없었음)											
9.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사업은 2012년 2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추후 서비스가 재개된다면 이용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잘 모르겠음(☞ 읽지 말것)											
10.귀하께서는 귀 자녀의 연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응	하기를 바리	시는 지, 어	린이집	집이 문을						시 분	
희망하는 시	작 시간			희망현	하는 끝나	는 시	간				
( )시	( )분			(	)시	(	)분				
11.자녀 부모의 취업상태, 출퇴근시간, 가구소득을 질문합니다.											
	구						부	모		부 모	2
1) 부모의 취업상태를 ① 종일제 출근			3 7	후직 중							
④ 자영업(가족 고용 ⑦ 미취업, 구직 중 ☞ 부모의 취업상태 으로, 그 외 응답	<ul><li>8 미취</li><li>를 각각 질</li></ul>	업 문하고 ①, (	9 H	해당							
2) 집에서 출근하는 시	간	오전 오후	시 시	분 분							
3) 퇴근하여 집에 도착	하는 시간	오전 오후	시	분							
보호     보호       4) 월평균 기구소득은 얼마입니까?     말원											
12. 끝으로, 해당 자녀는 보육 2012년 2월 이전과 2012											_
	2012. 2월	월 이전	Ū	) 받음		2	안받음				
1. 보육료 지원 수혜 여부	2012. 3월	일 이후	(1	) 받음		2	안받음		Ī		
								,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조사표 구분	일 련 번 호

조사표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 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평가인증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미래의 인적지원인 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전문가 여러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제 3차 시행시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하신 개별적 내용은 개인정보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육관련 기초 통계 생산을 위한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 I. 응답자의 일반사항

1.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시를 하거나 내용을 써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② 보육관련	전문가(연구원 등)
1) 직업	□③ 보육정보센터장		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및 교사)
	□⑤ 보육 담당 공무원	ļ		
2) 역할	□① 심의위원	□② 현장관찰자	_3	기타

II. 평가인증 운영체계							
2. 현행 평가인증 운영은 참여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심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영체계의 순서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부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c 2-1번 문항으로)							
2-1. 운영체계의 순서가 부	적절하다고 생각	되어지는 경우	개선방안을 적여	어주십시오.			
개선방안:	개선방안:						
3. 아래 평가인증 각 과정의 기	- 3. 아래 평가인증 각 과정의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짧다	② 조금 짧다	③ 적절하다	④ 조금 길다	⑤ 매우 길다		
1) 참여신청 :1개월							
2) 자체점검							
- 신규 3개월							
- 재인증 1개월							
3) 현장관찰: 1개월							
4) 심의: 1개월	4) 심의: 1개월						
4. 현행 평가인증 기준점수는 75점(100점만점)/2.25점(3.0만점)입니다. 기준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큰 폭의 하향조절이 필요하다 ② 약간의 하향조절이 필요하다 ③ 적절하다(현행)							
④ 약간의 상향조절이 필요하	다 ⑤ 큰	폭의 상향조절0	필요하다				
5. 현행 평가인증에서는 지자체.	가 법적 기본사형	항을 확인하고 🤉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적절합니	l <i>까</i> }?		

6. 기본사항의 각 항목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항목을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 부적절
 ② 보통
 ③ 적절

 ① 부적절
 ② 보통
 ③ 적절

필수 항목	□① 총 정원 준수 □③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②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④ 행정처분 사항 발생 유무
기본 항목	□① 어린이집 설치기준 □③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⑤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① 비상대피시설 설치	□② 보육실 설치기준 □④ 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⑥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7. 6번의 기본사항 외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추가 점검 사항:

필수항목과 기본항목 구분

지방정부 공무원에 의한 점검

O 원해 편기이즈에서는 원자기차 시 등	-1 1141 EL 00-		디크 이스니티 핑	거 이익이 되저하다그
8. 현행 평가인증에서는 현장관찰 시 현 생각하십니까?	면 시설 당 2명	의 관실사가 파선	되고 있습니다. 파	선 인원이 직절하다고
(1) 매우 부적절하다 (2) 부적절하다	나 ③ 보토(	기다 ④ 저저하	다 (5) 매우 적?	<b>서우</b> [し]
	1 9 7 6	기디 ૭ ㄱ글이	-1	크이디
(☞ 8-1번 문항으로)				
8-1. 적절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정(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인원	이 달라야 한데	다 ② 인원을 늘	려야 한다 ③ 인	원을 줄여야 한다
9. 현행 평가인증에서는 업무연락으로	르 현장관찰 1	주일 전에 관찰일	l을 통보한 후 곤	· 산찰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안내방법에 대해 어덕	렇게 생각하십	니까?		
① 현행 방법이 적절하다		② 현장관찰일	l을 더 일찍 통보d	한다
③ 현장관찰 주간은 공지, 관찰일은 공	공지하지 않는	다 ④ 현장관찰	주간 및 관찰일을	공지하지 않는다
⑥ 기타 (				
10. 인증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의 반영	비율은 다음피	과 같습니다. 이러한 	· 비율에 대해 어두	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항목별 비율	① 적절함	② 하향조절 필요	③ 상향조절 필요
1) 자체점검보고서	10%			
2) 기본사항확인서	10%			
3) 현장관찰보고서	55%			
4)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11. 현행 인증심의 시 심의자료의 구성 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부적절하 (☞ 11-1번 문항으로)	어떻게 생각	,	,	
11-1. 심의자료의 구성이 부적절하	다고 생각되어	지는 경우 개선방	안을 적어주십시오	
삭제필요자료:				
추가필요자료:				
12. (심의위원에게만 질문) 현행 평가인	증 결정을 위한	한 심의위원회 의견	서 25%의 점수비	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수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항목	항목별 비율	① 적절함	② 하향조절 필요함	③ 상향조절 필요함
1)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5%			
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5%			
3) 보고서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5%			
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5%			
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 총점과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 점수)	5%			

(☞ 13-1번 문항으로) 13-1. 심의위원회 의견서 점수 구성내용	응 항목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	되는 경우 개선방안을	적어주십시오.
삭제필요 항목:				
추가필요 항목:				
기타 개선방안:				
14. (심의위원에게만 질문) 심의위원회 의견 하십니까?	면서 점수 부여	시 6점 척도(0, 1	, 2, 3, 4, 5점)에 대하	l 어떻게 생각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부적절하다 [	③ 보통이다	4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14-1.6점 척도가 적절하지 않다면, 척도의	의 가장 적정한	최저점과 최고점	은 몇 점이라고 생각히	십니까?
① 최저점:	점	② 최고점:		점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부적절하다 (☞ 15-1번 문항으로)	③ 보통이다	사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i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⑤ 매우 적절하다	
(☞ 15-1번 문항으로)  15-1. 적절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정이 ① 어린이집의 대상규모에 따라 인물	필요하다고 생 원이 달라야 한 학과 교수, 기티 으로 구성되어	각하십니까? 난다 나 보육관련 전문2 있습니다. 이 구?	ł), 보육정보센터장 및 성에 대해 어떻게 생2	
(☞ 15-1번 문항으로)  15-1. 적절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정이 ① 어린이집의 대상규모에 따라 인원을 늘려야 한다 ③ 인원을 줄여야 한다  16. 심의위원회 구성은 학계 전문가(관련학육교직원(원장, 교사), 보육담당 공무원 ① 매우 부적절하다	필요하다고 생 원이 달라야 힌 학과 교수, 기타 으로 구성되어 ③ 보통이다	각하십니까? 난다 나 보육관련 전문 <i>7</i> 있습니다. 이 구? 나 ④ 적절하다	ł), 보육정보센터장 및 성에 대해 어떻게 생 <sup>2</sup> ⑤ 매우 적절하다	

17-1. 부적절하다는 경우 개선방안을 적어주십시오.					
개선방안:					
18. 현행 평가인증에서 인증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어떻게 생각 ① 적절하다(현행) ② 인증 횟수여 ③ 점수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 ④ 유효기간을 ⑤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늘려야 한다 ⑥ 기타 (	비 따라 차				
19.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는 다음의 항목들로 이루어져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 있습니다	H. 각 사혹	환관리가 ?	평가인증	받은 시점
항목	① 매우 비효과적	② 비효과적	③ 보통	④ 효과적	⑤ 매우 효과적
1)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2)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3) 확인점검					
4) 인증어린이집 취소관리 5) 각 지자체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컨설팅 서비스 제공					
골라 순서대로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	순위:		
21. 19번에 나열된 항목 외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추가 필요항목:	위해 추기	로 필요한	· 항목은	무엇입니	까?
22. 평가인증에서 영역별 점수 및 총점에서 기준점수에 미달된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증유보로 발표 후 평가인증 전 과정에 다시 참여 ② ③ 인증에 통과할 때까지 미흡한 부분을 개선 ④ ⑤ 기타 ( )	인증유보	로 발표 즉	후 재관찰(	(현행)	
23. 현행 평가인증 업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성	생각하십니	까?			
항목	0	과도함	② 적절	③ 김	화 필요
1) 참여신청(자체점검 단계, 참여설명회 개최, 참여취소관리)					
2) 자체점검(조력 등 시설지원)					
3) 현장관찰(현장관찰 시 발생 위법사항 확인 등)					
4) 인증심의(발표전 취소사항 확인, 심의참여)					
5) 사후과리(확인적건 및 원장교육 등 현조 인증취소과리)					

24. 다음은 현행 평가인증에서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취소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THE 20 07/2011/1 2011/21 MONE THE 17. 112/1011 HM NOW 0 1911 17.				
	① 적절함	② 부적절함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경영 모든 구성인 정립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 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 확정된 경우	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형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⑤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⑥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⑦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소재지 변경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운영형태 변경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바. 확인방문의 실시"절차에 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 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원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원장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3개월)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			

25	현행	평가인증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의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1	찬성	(☞ 25-1번	문항으로)
0	0	( 20 12	L 0 — L/

② 반대

③ 모르겠음

25-1. 찬성한다면, 점수공개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총점만 공개

② 총점과 세부영역별 점수 모두 공개

③ 총점을 등급화하여 공개

④ 총점 등급과 세부영역별 등급 모두 공개

26. 현행 평가인증 제도에서는 평가인증 여부와 정부의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일부 지자체에 서만 추가지원 등에 평가인증 결과를 연계해 왔습니다.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의 재정지원 연계방안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적절하다

② 부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Ⅲ. 평가인증지표

27. 현행 평가인증지표는 총 3가지 유형(40인이상, 39인이하, 장애아전담)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유형분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부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c= 27-1번 문항으로)

27-1. 부적절하다는 경우 개선방안을 적어주십시오.

개선방안:

26. 전쟁 청가인등자료의 항목구에 대해 어떻게 정적하십니까? (※ 39인이하 어린이집 5개 영역 55항목, 40인이상 어린이집 6개 영역 70항목, 장애아전담어린이집 6개 영역 항목)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적절하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29. 현행 평가인증지표의 척도는 3점 기술평정척도(1,2,3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표의 척도에 대해 어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부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29-1번 문항으로)
29-1. 3점 척도가 적절하지 않다면, 척도의 가장 적정한 최저점과 최고점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저점: 점 ② 최고점: 점
30. 현 평가인증 지표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부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30-1번 문항으로) 30-1. 부적절하다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1. 어린이집의 질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효과없음 ② 별로 효과없음 ③ 보통 ④ 조금 효과있음 ⑤ 매우 효과있음
32.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에 반영되기 바라는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 연구보고 2012-24

##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17-6 93330